

제 3 편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수집 · 분석

우리나라 관세법 별표 1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 협약)’을 수용하고 있으며, HS 협약은 4~6년을 주기로 하여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회원국은 2012년에 개정된 제5차 HS 품목분류 체계를 국내법으로 수용, 통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HS 협약의 통일적 운용은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수출입통관애로 가능성을 배제하여 신속한 수출입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국은 물품 관점 및 해석방법의 차이, 기존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 품목분류에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는 물품을 선정하고, 상이한 품목분류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품목분류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제2편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수집 · 분석에 제시된 총 50개의 상이사례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첫 번째,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간 품목분류가 상이한 물품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며,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간의 품목분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약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 이유로 수출신고필증과 다른 품목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있다⁶⁶⁾. 동 사안에 착안하여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간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는 수출건을 선정, 품목분류 상이사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의 사전심사사례를 비교 · 분석하여 상이사례를 도출하였다. 원산지 사전심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물품이 국가별로 상이한 사전심사 결과를 도출한다면, 상이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및 사전심사사례를 기준으로 체약상대국 사전심사사례와 비교를 통하여 품목분류 상이사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66) 품목분류상이시 처리지침(관세청, '14. 3. 31):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

제1차 최종보고 품목분류 상이사례(50건)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50건의 추가적인 상이사례는 제2차 최종보고서에 포함될 것이다.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리스트 (총 50건)

연번	물품명	품목번호	연번	물품명	품목번호
1	어유	2106.90	26	가습기	8479.90
2	조미김	2106.90	27	공기압 전송용 밸브	8481.20
3	파라핀오일	2710.19	28	손 건조기	8516.33
4	토노포스판	2931.90	29	호출시스템	8517.62
5	스킨케어 화장품	3304.99	30	광신호전송기기	8517.70
6	물티슈	3307.90	31	울트라 슬림 월마운트	8529.90
7	어린이 놀이용 도구	3407.00	32	TV용 스마트 무선키보드	8529.90
8	어린이용 놀이매트	3918.10	33	클리닝 천	8529.90
9	샤워헤드	3924.90	34	웰컴보드	8529.90
10	반짇이	3926.90	35	소프트웨어 USB	8529.90
11	열가소성 고정 마스크	3926.90	36	스마트 TV 전용리모컨	8529.90
12	합성고무	4002.99	37	터치 오버레이	8537.10
13	휴대폰 케이스	4202.32	38	이온정수기	8543.70
14	태블릿 PC용 커버	4202.92	39	발열조끼	8545.90
15	알루미늄 접착마개	4811.59	40	폰톤	8907.90
16	칩 부품 접착제	8415.90	41	LED 패널	9013.80
17	탄화로 내화벽돌	8417.80	42	개인용 마사지기	9018.90
18	냉장고용 정수필터	8418.99	43	혈당측정기	9027.80
19	온도조절기	8418.99	44	기체 분석기기	9027.80
20	항공기용 액추에이터	8421.21	45	XY수동 스테이지	9033.00
21	환기장치	8421.39	46	빈백커버	6304.93
22	비데	8424.89	47	미니선풍기	9503.00
23	에어리스 펌프	8424.89	48	페이퍼타겟	9506.91
24	영상판독장치	8471.90	49	아기용 기저귀	9619.00
25	3D프린터	8477.59	50	여성용 위생용품	9619.00

제 1 장
조제식료품

1. 품명

- 상 품 명: 어유
- 모 델 명: 오메가 3 오일 (Megapex-E10D70EE)
- 물품설명: 오메가 3오일은 고순도 오메가 3지방산의 건강기능보조 식품으로서 EPA 및 DHA를 다량 함유한 제품. 회사에서는 Dietary nutritional supplements로 소개함. 상세성분은 10%의 EPA와 70%의 DHA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DHA란 주로 등푸른생선에 많이 함유된 탄소 수 22개, 이중결합 6개의 ω (오메가)-3계열의 고도불포화 지방산임.⁶⁷⁾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EPA 또는 DHA)는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하여 혈액의 흐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물품사진 및 성분표



67) 네이버 지식백과.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2106.90	1504.20
기본세율	8~30%	10% or 0.30baht/kilogram
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동 물품은 EPA와 DHA를 혼합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주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제조한 물품임
- 동 물품은 어유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되는 품목번호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100% 순수한 어유를 사용한 경우 제1504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으나, 여기에 비타민과 각종 다른 성분을 첨가한 경우 제2106호의 기타 조제식료품으로 분류한 바가 있음
- 동 물품은 DHA를 70% 함유하여 어유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EPA 및 기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순수한 어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분류 적용 기준’에 따라 제1517호[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

외한다)]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의 적용기준(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제외한다)

가.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

나.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한다.

비고

- 1) 가목 및 나목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 -토코페롤, β -토코페롤, γ -토코페롤 및 δ -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 2)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의 중량을 제외한 순중량을 말한다.

○ 태국(원산지증명서)

- 태국의 경우 동 물품을 순수한 어유가 분류되는 제1504호에 분류하고자 하였음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순수한 어유에 비타민 등 각종 첨가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순수한 어유가 분류되는 제1504호에 분류되지 않고 비타민 E의 구성성분에 따라 제1517호나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제2106.90호)

-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소량의 비타민, DHA, 지방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제품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2106.90
물품설명	각종 비타민(C,B1,PP,M)5%, DHA, 지방 등을 레시틴과 지방으로 도포하고 젤라틴 등으로 과립상(지름1.5mm) Capsule로 만든 것으로 식료품제조용 첨가제임
이미지	

○ 우리나라(제1504.20호)

- 본품은 어유 100%를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 1504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이 호에는 각종 어류와 해서포유동물(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등)에서 얻은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1504.20-0000호에 분류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1504.20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 액상의 어유 100%를 젤라틴캡슐에 충전한 것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1,000mg*200capsule/bottle)
이미지	없음

2

조미김

1. 품명

- 상 품 명: 조미김
- 모 델 명: 조미김
- 물품설명: 식용으로 사용되는 조미김. 원재료 및 성분 함량: 돌김 61% (국산100%), 옥배유34% (수입산), 참기름, 식염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EU	인도네시아
HS	2106.90	2008.99	1212.29
기본세율	8~30%	0~1.300 % + 0.633 EUR / 100 kg	5%
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우리나라(참조번호 6172)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으면서, 조제식료품으로서 제2106호에 분류함

○ 영국(참조번호 GB501200041)

- 관세율표 제2008호 해설서에 따르면, 제2008호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라고 규정

○ 인도네시아

- 제1212호에는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며
- 제1212.21호에는 식용의 것을, 제1212.29호에는 기타의 것을 분류함

○ 검토의견: 제2008.99호

- 제1212호는 김을 단순 건조한 것으로서 식용의 것은 제1212.21호, 기타의 것은 제1212.29호에 분류함. 그러나 동 물품은 건조한 김을 구워, 그 위에 참기름을 발라 조미한 것으로서 제1212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제2008호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여, 조미김과 같이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008호는 제2106호에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함. 이에 따라 조미김은 제2008호에 분류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제1212.20호)⁶⁸⁾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1212.20
물품설명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갈색계 거칠은 분말상으로 가축사료의 첨가제로 사용
이미지	없음

○ 리투아니아(제2106.90호)

국가	리투아니아
결정세번	2106.90
물품설명	Dietary supplement "Haicao gai" Ingredients: marine algae (seaweeds), vegetable oil, gelatin from seaweed; Each capsule contains 160 mg of calcium from seaweed; Containing no milk fats, sucrose, isoglucose, glucose and starch. Packs of 100 capsules of 800 mg.
이미지	

68) HS 2012에서 제1212.20호는 삭제되었으며, 제1212.29호로 분류되어야 함.

제 2 장

석유화학제품

1. 품명

- 상 품 명: 파라핀 오일(농약원제)
- 모 델 명: 파라핀 오일
- 물품설명: 파라핀오일이란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많이 함유하는 원유. 일반식이 C_nH_{2n+2} 인 포화탄화수소로서 알칸이라고도 함. 탄소(C)수가 5개 미만은 기체, 5~15개는 액체, 15개 이상은 고체로 존재하는데, 파라핀오일은 상온에서 액상을 이루는 것을 말함. 중유를 정제해서 만듦.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
HS	2710.19	3808.99
기본세율	3~8%	-
호의 용어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 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우리나라에서는 파라핀 오일을 제2710호의 석유로 분류하였으나, 필리핀에서는 주 용도인 살충제로 분류(벌레 표면에 기름피막을 형성하여 질식사킴으로서 약효를 나타냄. 감귤, 사과, 바나나 재배에 사용)
 - 파라핀오일 제품의 특성 자체가 농약이외에 화장품 등 여러 가지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동 물품을 주 용도에 따른 품목분류의 차이로 판단함
- 동 물품은 원가절감을 위해 소포장 완제품 형태가 아닌 벌크로 공급하며, 현지에서 직접 유화제를 사용하여 물과 섞어 바나나 농장에 살포
 - 제3808호: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 검토의견: 제2710.19호

- 제3808호의 살충제 등에는 소매용 포장한 것에 한정하여 분류되므로 동 물품을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27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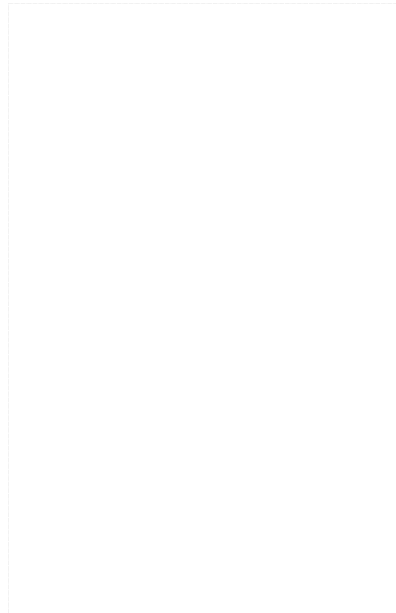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를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성분이 석유 또는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오일”이 분류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윤활유 기유’ 및 ‘유동파라핀’의 한국산업표준 규격(K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무색투명한 액상의 기타 오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2710.19
물품설명	원유 정제 후 증류탑 바닥에 남은 잔사유를 원료로 하여 감압증류, 수소첨가, 촉매탈랍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무색투명한 파라핀계 미네랄 오일 ○ 용도 : 농업용 스프레이 오일(살충용) ○ 규격 : 비중 0.8340, 동점도(40℃) 12.53, 동점도(100℃) 3.08, 점도지수 104, 인화점 194, 유동점 -36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토노포스판(Tonophosphan, Toldimfos Sodium)
- 모 델 명: 토노포스판(Tonophosphan, Toldimfos Sodium)
- 물품설명: 체내 필수 미네랄이 균형있게 구성되어 있어 전신 대사 장애 치료 및 골결합증, 경직 및 마비증세 개선을 돕는 속효성 자양강장 대사촉진제 (분자식: C₉H₁₂NNaO₂P⁺)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2931.90	2942.00
기본세율	2~8%	10%
호의 용어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그 밖의 유기화합물
소호의 용어	기타	-

3. 품목분류 검토(수출입기업지원센터)

- 토노포스판은 방향족 탄화수소에 무기질(하이포인산나트륨)이 결합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2931호의 유기-무기 화합물에 분류
 - 우리나라 업체가 인도에서 수입한 토노포스판을 원재료로서 사용하여 완제품 제조 및 수출. 환급특례법에 따라 토노포스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였으나,
 - 인도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상 제2942.00호로 표기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인도의 품목번호 상이로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지 못함.
 -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입자가 인도에 제2931.90호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 검토의견: 제2931호
 - 동 물품은 유기물(탄화수소)과 무기물(하이포인산나트륨)이 결합된 것으로서 제2931호의 유기-무기 화합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없음

1. 품명

- 상품명: 스킨케어 화장품
- 모델명: Pink Grape Fruit Foaming Scrub
- 물품설명: 살리실산과 자몽향이 함유되어 있는 젤 타입의 각질 제거 클렌저. 황산화 효능이 있는 리코펜 성분(피부노화 방지)과 아로마 테라피로도 활용되는 제품으로서 적당량을 덜어내어 눈 주위를 피해 젖은 얼굴에 마사지한 후 물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사용.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3304.99	3401.3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 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 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소호의 용어	기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 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얼굴 각질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세안제품으로서 제3401호의 비누에 분류될지, 제3304호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될지가 쟁점
- 태국(원산지증명서)
 - 태국에서는 동 물품을 제3401호의 비누로 결정함. 제3401호의 해설에 따르면 제3401호에는 총 4가지 그룹의 비누가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 제품과 그 제품으로서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 비누 함유 불문”에 따라 제3401호에 분류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제3304호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하였는데, 제3304호 해설에 따르면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서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렌징크림·스킨푸드 등을 분류한다고 설명

○ 검토의견: 제3304.99호


- 동 물품의 경우 각질제거의 기능이 단순한 비누와 같은 피부세척 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미용으로서 단순 피부세척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함
- 일반적으로 각질제거의 품 클렌징을 비누대용으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 물품이 단순 피부세척 이상의 미용제 품으로서 주로 각질과 노폐물의 제거기능을 하는 기초화장품으로서 사용된다는 점,
- 비누보다 다양한 미용성 기능(비타민 공급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
- 일반적인 비누보다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개당 약 9 달러 수준)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3401호의 비누보다는 제3304호의 미용의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3304.99
물품설명	Sodium chloride, PEG-7 Glyceryl cocoate, Pumicee, Limonene, Aqua, Parfum, Citrus medica limonum peel powder, Hexyl cinnamal, Glycerin, BHT, Niacinamide, Panthenol, Tocopheryl acetate, Rosa moschata seed oil, Ascorbic acid, CI 19140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백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기초화장품(각질제거용)
이미지	없음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 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Sodium chloride, PEG-7 Glyceryl cocoate, Pumicee, Limonene, Aqua, Parfum, Citrus medica limonum peel powder, Hexyl cinnamal, Glycerin 등으로 조제되어 각질제거 및

피부 보습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국가	네델란드	
결정세번	3401.30	
물 품 설명	<p>A skin cleanser with -according opgave- among other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nd ingredien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transparent gel-like substance with scrub particles with citrus odor; - surface-active agents, - Purified water, - niacinamide, - decyl glucoside, - cocamidopropyl betaine - acrylates copolymeer.Het product is put up for retail sale, in a plastic tube with a volume of 150 ml. <p>The product contains various surfactants, it is therefore regarded as a surface-active preparation as subheading 3401.3000 of the Combined Nomenclature.</p>	

1. 품명

- 상 품 명: 물티슈
- 모 델 명: Kleenex Natural Hand & Face Moist Wipes
- 물품설명: 물티슈는 기본적으로 부직포와 정수된 물, 보습제, 세정제, 보존제 등이 함유. 원단인 부직포는 천연섬유인 레이온과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터(PET)를 혼방해 제조. 원단은 레이온 함량이 60% 이상이면 ‘레이온계’, 그보다 낮은 함량은 ‘레이온 + PET계’, ‘PET계’등으로 표시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3307.90	3401.11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소호의 용어	기타	비누 ·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티슈로서 부직포를 기포로 하여 물과 다양한 성분이 포함. 세균을 제거하는 소독물질이 일반적으로 도포되어 있으며, 기타 세안을 위한 비누 또는 계면활성제나 식물성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
- 태국(원산지증명서)
 - 태국에서는 물티슈에 세정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제3401호에 분류하였다. 제3401호의 용어에 따르면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 · 펠트 · 부직포’를 포함한다고 규

정. 이에 따라 부직포에 얼굴 세안용 비누를 칩투시킨 것을 근거로 제3401호에 분류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그러나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을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해설서에서는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칩투 또는 도포한 워딩 · 펠트 · 부직포’를 분류한다고 설명.

- 또한 제34류 주 1호에 따르면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 · 치약 · 면도용 크림과 폼(foam) · 목용용 조제품(제3305호 · 제3306호 · 제3307호)을 제외한다’고 규정

○ 검토의견: 제3307호

- 동 물품은 부직포에 비누와 화장용품을 칩투 도포한 물품으로서 제34류 주규정 및 호의 용어에 따라 제330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3307.90
물품설명	직사각형의 백색 부직포에 소듐벤조에이트, 프로필렌글리콜, 세틸 피리디늄클로라이드,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구연산, 알로에베라잎 추출물, 꿀 추출물, 쉐어버터, 향, 정제수 등을 함침시켜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70매/bag) * 용도 : 물티슈
이미지	없음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품을 말한다”라고 설명
 - 또한, 동 표 해설서 제3307호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예시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용수를 함침한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1. 품명

- 상품명: 어린이 놀이용 도우
- 모델명: 어린이 놀이용 도우
- 물품설명: 11가지 색상의 도우와 특정 형상으로 찍어 낼 수 있는 플라스틱 도구 등이 소매포장 되어 제시. 3세 이상의 아이들이 도우를 플라스틱 도구로 찍고 누르고 굴리는 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물품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영국
HS	3407.00	9503.0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소호의 용어	-	-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은 ① 다양한 종류의 도우와 ② 이를 다루기에 적합한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틱 도구 등이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물품임
- 우리나라(참조번호 601)
 - 통칙 제3(나)를 적용하여 본질적 특성이 도우에 있다고 판단함. 또한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 또는 판상·말굽상·봉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플라스터(소석고 또는 황산칼슘제의 것에 한한다)를 기제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조형용 페이스트를 “이것은 보통 예술가나 세공업자가 모형을 제작하는데 또는 아동의 유희용으로 사용되는 가소성조제품이다. ...(중략)... 각종의 것을 구비한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동일한 표현을 영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 제3407호의 해설 >

국 문	영 문
<p><u>각종의 것을 구비한</u> 조형용 페이스트(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p>	<p>Assorted modelling pastes, including those put up in sets for the amusement of children, are also covered by this heading.</p>

- 동 문장에서 ‘Assorted’는 국문으로 ‘각종의 것을 구비한’으로 번역되어 있음. 그러나 ‘Assorted’는 ‘여러 가지의’의 의미로서 동일한 종류의 페이스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페이스트 이외의 플라스틱 도구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제3407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동일한 종류의 플라스틱 도구만으로 구성된 세트에 된 물품이어야 하며, 그 외 플라스틱 도구가 포함된 것은 제3407호에서 제외되어야 함

○ 영국(참조번호 GB501421020)


-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에 따라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한다고 설명
- 특히 제95류 주4에 따라 소매용으로 포장된 세트물품으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제9503호에 분류된다고 결정
- 이러한 어린이용 도구는 제3407호에 분류되는 도구 뿐만 아니라 기타의 다른 어린이용 놀잇감(제9503호)이 소매용으로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검토의견: 제9503.00호

- 동 물품은 놀이용 도구와 플라스틱 도구가 함께 소매용으로 된 세트물품으로서, 놀이용 도구만으로 구성되는 제340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도우와 함께 플라스틱 도구로 구성되는 제950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영국
결정세번	9503.00
물품설명	<p>PLAY-DOH POWER CRANE. BRING CONSTRUCTION TO LIFE WITH BUSTER THE POWER CRANE! HE'S THE CENTRE PIECE OF THE WORK ZONE CREW AND HAS ALL THE TOOLS FOR THE JOB!</p> <p>THE BUTTON ACTIVATED VOICE ENCOURAGES INTERACTION AND PLAY, AND WHEN KIDS EXTRUDE PLAY-DOH THROUGH THE CRANE, BOOM LIGHTS AND SOUNDS ARE ACTIVATED! CUT, STAMP AND MOULD WORK SITE THEMED MATERIALS, THEN BUILD THEM UP AND KNOCK THEM DOWN! INCLUDES 2 HAND TOOLS, 2 BOOM ATTACHMENTS, AND 2 SEPARATE BUILDING BOOK MOLDS ALLOWING KIDS TO CUT, STAMP OR MOLD THE PLAY-DOH INTO OTHER WORK ZONE THEMED COMPONENTS. LOTS OF OPEN ENDED VEHICLE PLAY WITH BUSTER WILL GIVE YOUR CHILD A WHOLE NEW AND EXCITING WAY TO PLAY WITH PLAY-DOH!</p>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어린이용 놀이매트
- 모델명: PVC MAT(로보카 폴리)
- 물품설명: 플라스틱제의 어린이용 매트로서 쿠션감이 있고 말랑말랑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가정용 매트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S	3918.10	9404.9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PVC제의 어린이용 매트로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로 분류되며 제9404호에는 매트리스 서포트와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
- 또한 제39류 주2에 따라서 제94류의 물품은 제외규정으로 제외되므로 동 물품이 제94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 인도(원산지증명서)
 - 인도 관세당국은 우리나라 수출자에 동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상품번호를 제9404호로 요청, 수출자는 동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제출함
 - 제9404호 해설서에 따르면 매트리스 서포트는 “침대의 탄성을 갖는 부분으로서 보통 스프링 또는 강선(鋼線)제의 망을 부착한 목재 또는 금속제의 틀로 구성되거나(스프링 또는 와이어서포트), 내장된 스프링과 충전물을 직물로 씌운 목제의 틀(매트리스 베이스)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

- 또한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양털·말털·우모·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음
-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와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특히 내부에 충전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9404호에 분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제3918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 이와 유사한 호로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됨. 특히 동 호 해설서에서는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 고 규정
- 따라서 동 물품의 가장자리가 봉합 또는 접착에 의하여 가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제3918호 또는 제3926호에 분류가 결정될 수 있음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어린이 놀이용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부에 충전물 여부에 따라 제39류 또는 제9404호에 분류할 수 있으므로, 충전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임
- 충전물이 없는 경우에도 가장자리를 가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918호에, 가공한 경우에는 제3926호에 분류되므로 가장자리 가공 여부도 주요 검토 대상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영국
결정세번	3926.90
물품설명	<p>EVA PLAYMAT SECTIONS. DIFFERENT COLOURED SECTIONS MEASURING 60 X 60 X 20 CM DESIGNED TO FIT TOGETHER TO FORM A SAFETY MAT.</p> <p>TO PROVIDE PROTECTION TO THE HEAD AND BODY WHEN PLAYING ON THE FLOOR. TO BE USED IN PLAYPENS, EXERCISE AREAS, DAY CARE CENTRES AND ON WALLS. WITH 4 SECTIONS PER PACK PRESENTED IN A CLEAR PLASTIC ZIPPED PACKAGING BAG AND A PRINTED PAPER INSERT</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샤워헤드
- 모 델 명: Shower Head SH-50
- 물품설명: 플라스틱으로 성형 후 구리, 니켈 등으로 도금한 샤워헤드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영국
HS	3924.90	3922.9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기 · 비 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 (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샤워헤드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헤드임. 이러한 물품은 제3922호와 제3924호에 분류가능
- 우리나라
 - 동 물품은 호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제의 샤워헤드로서 목욕탕 벽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물품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헤드임
 - 이에 따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3924.9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
- 영국
 - 제3922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 · 샤워통 · 설거지통 · 세면기 · 비데 · 화장실용 팬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 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을 분류
 - 제3922호 해설서에 따르면 ‘보통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함으로써 적절한 위치 · 주택 안에 영구히 부착되도록 설계된 용구류를 분류한다. ..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베드팬 및 실내용 변기와 같은 소형 포터블 위생용품(제3924호)’라고 규정하여 제3922호와 제3924호는 영구히 부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휴대할 수 있는지(포터블)가 중요한 구분기준이 될 수 있음

○ 검토의견: 보류

- 샤워헤드의 품목분류 쟁점은 ‘탈부착 여부’에 따라, 탈부착 가능한 경우에는 제3924호, 탈부착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3922호에 분류
- 동 물품은 기능상으로는 탈부착이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탈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별해야 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영국
결정세번	3922.90
물품설명	SHOWER KIT. THE SHOWER KIT IS PACKED FOR RETAIL SALE AND DESIGNED TO BE FITTED TO THE BATHROOM WALL CONNECTED TO MAINS WATER. IT INCLUDES A BRASS RISER RAIL WHICH IS CHROME PLATED , A PLASTIC HOSE WHICH IS COVERED IN A STAINLESS STEEL TUBE , A PLASTIC SOAP DISH AND A PLASTIC SHOWER HEAD COVERED WITH A THIN COATING OF CHROME. THE RISER MEASURES 600MM IN LENGTH .THE HOSE RETAINER CAN MOVE UP AND DOWN THE POLE IN ORDER TO POSITION THE SHOWER HEAD IN THE CORRECT POSITION.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반짝이
- 모 델 명: 플라스틱제 반짝이(glitter)
- 물품설명: 알루미늄을 증착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안료를 도포한 후 육각형 모양으로 미세하게 절단한 적색계 분말상임. 반짝이 효과용 용도로 사용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3926.90	3907.6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은 반짝이 효과를 주기 위하여 플라스틱제 물질에 안료 등을 도포한 후 일정 형상으로 절단하여 미세한 가루로 만든 물품
- 우리나라(품목번호 결정통보 품목분류2과-1364)
 - 제39류의 총설에서 ‘일차제품’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제39류 주 10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설명
 - 동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필름을 규칙적인 육각형 모양으로 절단한 물품으로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 및 그 이상의 가공을 거친 물품으로서 제39류 주10호에 따라 제3920호에서 제외되어 제3926호로 결정
- 독일(상대국 수입자 통보내용)
 - 제3907호의 용어에 따라 동 물품은 일차제품의 형상(불규칙한 모양의 가루나 플레이크)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3907호에 분류

제39류 주 6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다음 각 목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 검토의견: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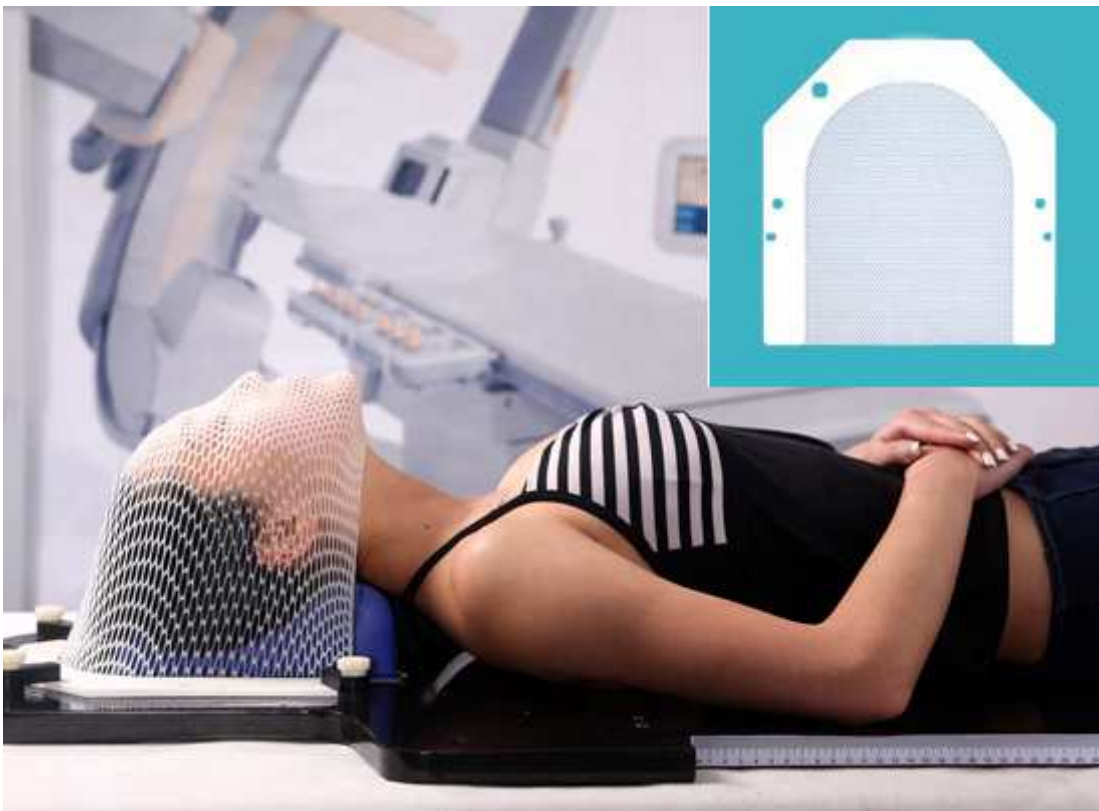
- 동 물품은 ‘육각형 모양’으로 미세하게 절단한 것으로서 일차제품의 형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불규칙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이라면 일차제품의 것으로서 제3907호에 분류하며, 육각형 모양으로 정밀하게 절단한 것이라면 제392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3907.60
물품설명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Glitter powder for decorating fingernails. The particles are composed of 99%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and about 1% of various coloring pigments. The Glitter powder is in a plastic packaging (box) for the retail aufgemacht. Untersuchungsergebnisse on a commercial samples: black, very fine, flat, mostly hexagonal particles filled into a round, transparent plastic box with Schraubdeckel. Befund: It is polyethylene terephthalate in primary form within the meaning the position before 3907.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열가소성 고정 마스크
- 모델명: R033B-T
- 물품설명: 엑스선 조사시 사용되며 정확한 위치에 조사될 수 있도록 환부를 고정시켜 주는 고정장치로 엑스선 장치 전용 baseplate에 장착됨. U자형의 플라스틱 프레임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질의 망이 결합된 물품으로, 65~75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용해되며 부드러워짐에 따라 이때 헤드부분에 씌워줌, 열이 식으며 그대로 굳어짐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국
HS	3926.90	9021.10
기본세율	8%	17%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합·볼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소호의 용어	기타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인 따뜻한 물에는 용해되고 식으면 다시 굳어지는 성질을 이용하여 방사선 치료의 보조도구로 활용되는 물품임
- 우리나라(결정 14-10-001)
 - 제3926호의 용어를 참조‘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질의 망이 결합된 플라스틱제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3926호에 분류함

○ 중국(현지 수출업체 이메일 문의)

- 제9021호의 용어에 따라 동 물품을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의 기기’로 보았으며, 특히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한 주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판단됨

6. 제9021호에서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 각 목의 기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쥘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가. 신체상의 불구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나.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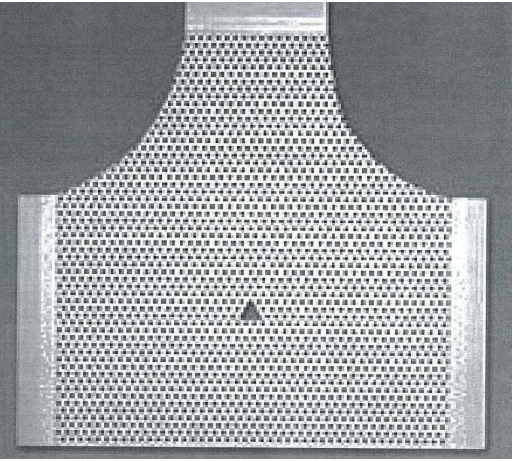
- 즉, 수술시 얼굴이나 팔, 허리, 다리 등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신체의 일부’를 지주하는 기기로서 제9021호에 분류한다고 판단

○ 검토의견: 제9022.90호

- 제392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며, 제9021호는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의 기기이므로 수술시 사용하는 동 물품의 분류에 적절하지 않음
- 제9022호의 용어에 따르면 동 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류

- 또한 제9022.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엑스선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
- 동 물품은 엑스선 조사용 환부고정장치로서 엑스선장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902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슬로바키아
결정세번	9022.90
물품설명	<p>Fixation thermoplastic mask designed for radiotherapy. It serves to fix any part of the body of cancer patient during irradiation, the irradiated part of the body was firmly fixed. Fixation mask is made of hardened polyester resin (polycaprolactone).</p> <p>Thanks to the formability of the material (melt in hot water) is created exactly according to the patient. Thermoplastic mask fixation system is part of the radiotherapy equipment and accessories to the apparatus of heading the 9022nd Products are packaged individually in plastic container, then put up at 6 per box.</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합성고무
- 모 델 명: HNBR (THERBAN)
- 물품설명: 수소첨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HNBR :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는 NBR에 선택적이고 조절된 수소 첨가 반응을 시켜 제조. NBR 폴리머 분자구조에서 이중 결합부분을 수소화시켜 물리적 특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 내유성 고무제품의 원료로 사용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4002.99	4002.59
기본세율	8%	Free
호의 용어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 기타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참조번호 2440)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a)불포화합성물질 중 주 제4호 가목에 규정한 가황 · 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불포화 합성물질에는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XNBR) 및 아크릴로니트릴-이소프렌고무(NIR)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의 연한 갈색 계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상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2.99-9000호에 분류함

○ 미국(참조번호 N253917)

-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이 분류근거로 활용한 제40류

주 제4호 가목을 동일한 분류근거로 활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함

- 우리나라에서는 가황·연신 및 복원성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제40류 주 제4호 가목을 충족한다는 점과 동 호 해설서에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XNBR) 등이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4002.99호에 분류하였으나 미국에서는 동 물품을 제4002.59호에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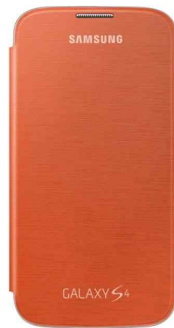
- 이는 우리나라 관세율표상에서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를 NBR이 분류되는 제4002.5호에서 제외, 별도로 제4002.99-1000호에 분류하고 있어 HNBR 또한 XNBR이 분류되는 제4002.99호에 분류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XNBR 등 NBR계열의 합성고무제품은 예외 없이 모두 제4002.5호에 분류하고 있어 동 물품의 경우에도 제4002.59호에 분류한 것으로 분석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EU
결정세번	4002.19
물품설명	<p>HYDROGENATED STYRENE BUTADIENE COPOLYMER. (STYRENE 42%, BUTADIENE 58%)</p> <p>CLASSIFICA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GENERAL INTERPRETATIVE RULES (GIR)S:-GIR 1 HAS BEEN USED TO CLASSIFY THIS PRODUCT BY THE TERMS OF HEADING 4002 SYNTHETIC RUBBER AND FACTICE DERIVED FROM OILS, IN PRIMARY FORMS OR IN PLATES, SHEETS OR STRIPSGIR 6 HAS BEEN USED TO CLASSIFY THE GOODS TO SUBHEADING LEVEL 400219 OTHER THAN LATEXCN CODE 40021990 OTHER THAN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ALSO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HSEN CHAPTER 40 NOTE 1 AND 4A APPLY.</p>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휴대폰 케이스
- 모델명: EF-FI950BOEGWW
- 물품설명: 휴대폰의 스크래치를 방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뒷면(케이스)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앞면(플립)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 휴대폰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4202.32	3926.9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제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약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 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소호의 용어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동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휴대폰 케이스로서 휴대폰을 감싸는 용기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4202호의 용어상 “플라스틱 재료의 용기”로 보아 제4202.32호에 분류한 바가 있음.

○ 태국(원산지증명서)

-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를 플라스틱 재료의 용기로 보지 않고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분류상 차이가 발생
- 제39류 주2 에서는 “이 류에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목에서 “제4202호의 트렁크·슈트 케이스·핸드백이나 그 밖의 용기”를 규정하여 제42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플라스틱제의 휴대폰 케이스는 제4202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을 ‘케이스(case)’로 간주한다면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4202호의 케이스란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휴대폰 케이스는 케이스라고 불리워지나 외관이나 색깔, 재질, 사용 목적 등으로 볼 때 용기의 성격과 동시에 악세사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의 품목분류에 앞서 휴대폰 케이스가 관세율표상 ‘케이스’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제4202.32호)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 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 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 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 기”가 분류되며
 - HS해설서 제4202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202.31호·제4202.32 호 및 제4202.39호에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 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lds)·지갑· 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쥘련케이스 및 담배주 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인 휴대폰 케이스로서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2-1020호에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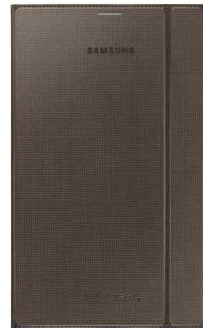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4202.32
물품설명	외부표면이 폴리우레탄인 직사각형 지갑 형태의 휴대폰 보관 (보호)용 케이스로서 내부에는 성형된 플라스틱제의 휴대폰 결 합용 하우징이 부착되어 있고 휴대폰(갤럭시 S4) 사양에 맞게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뚜껑 부분은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 납공간이 있는 케이스를 플라스틱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75 mm X 140 mm X 17 mm)
이미지	없음

○ 폴란드(제4202.92호)

국가	폴란드
결정세번	4202.92
물품설명	Case for mobile phone, with the outer layer of plastic film (polyurethane, polyvinyl chloride), fastened with a magnet. Inside the case there is a frame with a molded plastic material, used to attach the phone. Dimensions approx 120 x 60 x 15 mm.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태블릿 PC용 커버
- 모 델 명: EF-BT700BSEGIN
- 물품설명: 국내 태블릿 PC의 특정모델에 적용되는 북 커버(Book Cover). 재질은 인조가죽과 폴리우레탄·기타 플라스틱이 사용됨. 주로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거나 이동시 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HS	4202.92	3926.90
기본세율	8%	10%, 15%, -
호의 용어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제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소호의 용어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태블릿 PC용으로 제작된 커버로서 주로 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서 보기 편한 각도로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재질은 인조가죽(폴리우레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는 일부 플라스틱이 사용
 - 우리나라는 제4202호의 각종 재질로 만든 용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 중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모두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검토의견: 보류
 - 휴대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용 커버(cover)를 ‘케이스(case)’로 간주한다면 제42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4202호의 케이스란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태블릿 PC용 커버는 외관이나 색깔, 재질, 사용 목적 등으로 불

때 용기의 성격과 동시에 악세사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의 품목분류에 앞서 ‘커버’가 관세율표상 ‘케이스’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4202.92
물품설명	<p>Two-piece assembly, consisting of a etuiähnlichen container and a pen, so-called Case without closure for storage of a tablet PC, photo see attachment – put up for retail sale (the ballpoint pen is plugged into the receptac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goods are neither meet a particular need nor the exercise of a particular activity and do not represent the set in the sense of AV 3 b) is, thus, the goods are to be classified separately – etuiähnliches container for a tablet PC - with an outer surface of plastic films - hinged, without closure - Inside with side-sewn blanks for receiving a specially shaped so-called tablet PCs and prepared, - fitted on the opposite inner side with four pockets in credit card format - centrally provided with an elastic band as a holder for the pen, - with special cutouts for camera lens and speakers, - in dimensions: approx 20.5 x 24.5 x 2 cm, - serves for the transport and storage of a tablet PC <p>“Etuiähnliches container, other than 4202 1110-4202 3900 referred to in subheadings,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ther than in subheadings 4202 9211 and 4202 9215 called ”</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알루미늄 접착마개
- 모 델 명: 알루미늄 접착마개(Cap Inner Seal Liner)
- 물품설명: 펄프보드, 폴리에스테르 필름, 폴리올레핀, 분리층, 인쇄층, 알루미늄 박, 폴리에틸렌 등의 순으로 적층한 원형의 시트상의 물품. 분말커피나 분말주스 등 유리병 용기의 밀봉용으로 사용됨. 병 입구에 동 물품을 부착하고 열을 가하면 알루미늄층은 병에 붙어 밀봉되고 펄프보드 층은 뚜껑의 상단에 붙어 내용물을 보존함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4811.59	7616.99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2-01-004)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음료 및 기타 식료품의 포장용기 제조용의 지와 판지로서 포장될 물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양면 모두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로 피복한 것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 포장용기 안쪽이 될 면에 금속박을 입혔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제7607호 제외규정에서 알루미늄 박으로 안을 댄 식료품의 용기 제조용 지와 판지로서 지와 판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4811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물품은 판지의 비율이 1/2이상인 물품으로 주요 특성이 판지에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811.59호에 분류

○ 독일(DEK/293/08-1)

- 동 물품은 열을 가함으로서 알루미늄이 용기의 입구에 결합하고 왁스층이 녹아 알루미늄과 다른 층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알루미늄이 물품의 특성을 결정하므로 제7616.99호에 분류한다고 설명
- 제7607호에는 제외규정으로서 제4811호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의 것을 분류하는 제7616호의 경우 이러한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동 물품은 제7616호에 분류할 수 있음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의 품목분류는 접착마개를 구성함에 있어 본질적인 특성을 종이로 보는지(제48류) 알루미늄으로 보는지(제76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본질적 특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용도, 가격, 기능 등)를 검토한 후 품목분류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없음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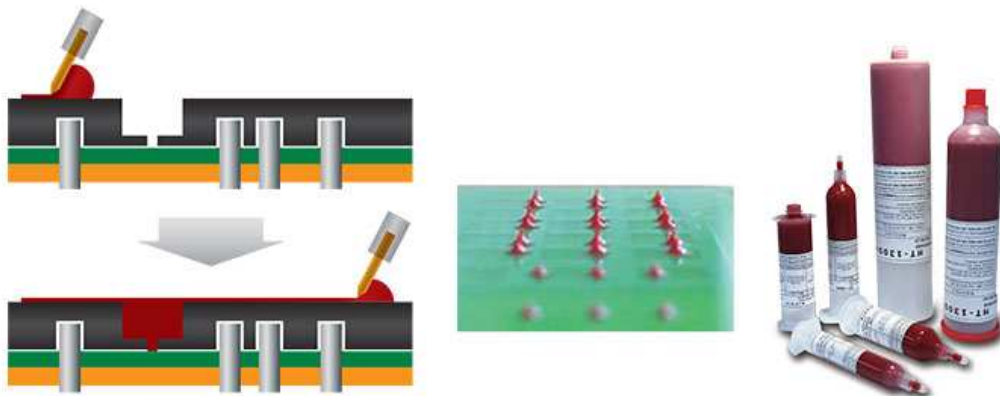
기계 및 전기기기

1. 품명

- 상 품 명: 칩 부품 접착제(SMD 칩본드)
- 모 델 명: HT-130DL RED 550~650 SMD
- 물품설명: 고속 디스펜서, 프린트 스크린용 SMT(표면실장기술, Surface Mount Technology) 공정에서 칩·부품 접착제로 사용되는 제품. 중·고온(100~150도) 영역에서 경화되는 제품이며, Wave-Soldering 공정에서 사용.

성분명칭	성분내용	구성비 (wt%)
수 지	Bisphenol F	60.0 ~ 80.0
경 화 제	Amine Adduct	10.0 ~ 30.0
안 료	Organic Pigment	1.0 ~ 5.0
	Fluorescent Pigment	
충 전 제	Silica	5.0 ~ 10.0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415.90	3506.99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부분품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중온 속경화 타입 SMD접착제로서 Pb-Free Wave Soldering(280도 이상) 공정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일액형 에폭시 임. 주 성분은 에폭시 수지와 잠재성 경화제 충전제 안료로서 경화시 형태의 변화가 없고 내열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
 - 주요 구성성분은 플라스틱 수지로서 전체의 80% 이하의 구성비를 가지며 경화제나 안료 및 충전제가 혼합됨
- 검토의견: 제3506.99호
 - 동 물품의 용도나 주요 성분으로 보아 제3506호의 조제글루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절.
 - 비록 일정온도에서 경화된 후 특정 전자기기의 형상을 가지고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요 목적상 접착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또한 제3506호에 '조제글루'의 호의 용어가 있으므로 제3506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탄화로 내화벽돌
- 모 델 명: Fire Brick SK36
- 물품설명: 공업용 로에 사용되는 내화벽돌. SK36이란 내화도 (Refractoriness)를 의미하는 것으로 KS에 의해 내화도를 측정했을 때 SK36(1,770℃)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재료를 말함

quality index	standard
AL2O3 (%)	50
Refractoriness (SK)	36
0.2MpaSoftening temperature (°C)	1450
Apparent porosity (%)	20-24
Bulk density (g/cm ³)	2.30-2.40
Cold crushing strength Mpa (MPa)	45
Thermal expansion at 1000°C (%)	0.3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17.80	6810.11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 다)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소호의 용어	기타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 건축용 블록과 벽돌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일정 규격의 내화도(SK36)를 지닌 내화성 벽돌로서 주로 공업용 로의 내부에 내화용 벽을 설치하거나, 내화성의 시설을 제조하는데 사용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우리나라에서는 제8417.80호로 분류하여 공업용 로의 부분품으로, 태국에서는 제6810.11호 분류하여 시멘트 제품으로 결정
 - 일반적으로 공업용로와 같은 거대 설비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보세건설장'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완료보고를 한 이후에 품목분류를 하게 됨
 - 즉,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신고 → 건설공사 완료보고 → 수입신고 수리 → 시설의 가동 순으로 진행. 이 경우 수입신고 수리시점의 적용법령을 적용하므로, 각 개별 부분품의 품목분류를 하지 않고 최종 완성품인 공업용 로만을 품목분류 하면 됨
 -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내화벽돌이 제6902호의 용어에 나타나 있을 지라도, 전체를 공업용 로로 보아 제8417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AS용품이나 부분 수리 용품 등으로서 내화벽돌이 별도로 수입된다면 개별 물품별로 품목분류를 진행하는 것

이 적절함

○ 태국(원산지증명서)

- 제69류의 총설에 따르면 '이 류의 물품은 성형후 소성하기 때문에 소성하지 아니한 물품으로 제68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 또는 석제품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며, 유리화 될 수 있는 혼합물이 완전히 용융되어 있는 제70류의 유리제품과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화벽돌은 제69류에 분류됨

○ 검토의견: 제8417.80호 또는 제6902호

- 동 물품의 경우 태국에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과 같은 제도가 존재한다면 일괄 제8417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거나 내화 벽돌을 개별 수입한다면 제690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제8417.10호)

- 결정세번 :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은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속 열처리용의 노(furnace)로 HSK8417.10-209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물품은 그 기능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가 분류되는 호로, 동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노실 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 각종 물품의 열처리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비록 노실 Case·노실용 내화벽돌·Base Frame을 제외하고 미완성 상태로 수입 제시되었으나,

- 동 소둔로의 특성은 Burner의 불꽃이 동합금 스트립을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노내의 분위기 가스를 가열하고 이 가열된 가스

열풍을 동합금 스트립에 골고루 송풍 가열하는 것으로

- 제시된 물품 중 전실, 예열실, 가열실을 구성하는 부분인 버너+열풍순환장치(송풍Fan, Duct, Damper)는 고열을 발생시켜 재료에 열풍을 가하도록 설계된 물품인 바, 완전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완성품의 금속 열처리용의 노(furnace)로 HSK8417.10-2090호에 분류하고,
- 다만, 제8417호의 명백히 한정된 '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냉각실 및 냉각수조는 제8419호, 원치는 제8425호, Control Panel은 제8537호에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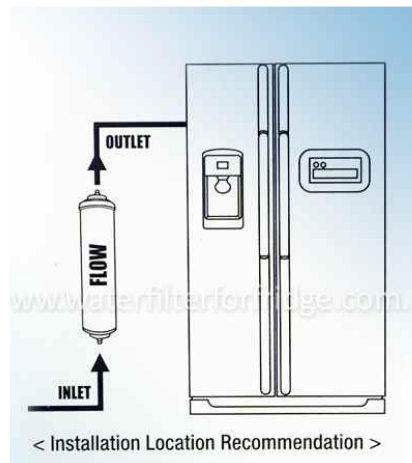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8417.10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제시상태 - 완성품 소둔로는 노실 Case+노실용 내화벽돌+Base Frame +Burner+열풍순환장치(송풍Fan, Duct, Damper)+Cooling System+Control Panel등으로 구성되는데 수입제시된 물품은 Burner+열풍순환장치(송풍Fan, Duct, Damper)+Cooling System+Control Panel등이 미조립상태로 수입제시 되었고 노실 Case(전실~냉각실)+노실용 내화벽돌(전실~가열실II)+Base Frame은 국내조달함 - 화주제시 가격 : 완성품 대비 수입물품 가격구성비 90%이상 ○ 기능 및 용도 - 노실에서 가스버너(LNG를 연료로 사용함)에 의해 노(爐) 내부에 채워진 분위기가스(질소)를 가열하고 송풍 팬(fan)으로 Duct(소재 이동로의 상하부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상하 노즐을 통해 코일상의 동합금스트립(strip)에 열풍을 가하고 냉각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연속 소둔로 코일상의 스트립은 노 입구, 노 출구의 Coiler와 Uncoiler에 의해 이동하며 이동중 노내에서는 위 아래에서 열풍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고 Foilting 상태를 유지
이미지	없음

○ 폴란드(제6902.20호)

국가	폴란드
결정세번	6902.20
물품설명	Refractory brick, containing more than 45% of alumina (Al ₂ O ₃), designed for lining the bottom and walls in steelmaking ladles, also used as a refractory lining of thermal units in the steel industry. Goods packed in boxes taped metal (on pallets).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냉장고용 정수필터
- 모 델 명: HAFEX/EXP
- 물품설명: 국내 대기업 냉장고의 외장형 필터로 많이 쓰이는 제품. 냉장고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설치하여 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필터로서 보통 6개월에 한번씩 사용함. 동 물품은 특정 대기업의 다양한 모델에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18.99	8421.21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소호의 용어	기타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보통 정수필터는 정수기에 부착되는 물품이나, 최근 냉장고 내부에 정수기 기능이 결합되어 출시되면서 냉장고에도 정수기 필터가 필요하게 됨.
 - 동 물품은 냉장고에 사용되는 정수필터로서 냉장고와 결합되지는 않으며, 외부에 연결선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을 정수하여 냉장고로 보내줌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우리나라는 동 물품을 제8418호의 냉장고 부분품으로 분류. 그러나 제16부 주2 부분품에 관한 규정 가목에 따르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8421호가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태국(원산지증명서)
 -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해설서에 따르면 가정용수필터에 대하여 “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 또는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 중력식의 것도 유사한 구조

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보다 대형이다. 다만 이 호에서 도자재 또는 유리를 주재료로 한 필터는 제외된다(각각 제69류 또는 제70류에 분류된다)."고 설명

- 동 호 해설서에 따라 동 물품은 '가정용수 필터'로서 보통 금속 용기에 들어있고, 원통상의 것으로서 해설서의 설명과 일치함. 이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기에 앞서 제8421호의 용어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임

-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냉장고용 정수기 필터를 제8421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동 물품이 제8418호의 냉장고의 부분품이 아닌, 제8421호의 액체 여과기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검토의견: 제8421.21호

-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냉장고에 전용되는 정수필터는 제8421.21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8421.21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개요 플라스틱 제의 원통형의 하우징 내부에 철강제의 여과망이 있고, 하우징의 한쪽 끝은 manifold에 체결할 수 있는 결합부가 형성되어 있는 교체용의 카트리지가 형태의 물품 카트리지의 결합부는 물을 흡입하여 여과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물품 (manifold를 통하여 물이 이동하는 통로와 연결됨) ○ 용도 및 기능 정수 기능이 있는 냉장고의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내장되어 있는 여과망(membrances sheet)을 통해 정수된 물을 사용자가 마실수 있게 해줌 필터 사용후 내부의 여과망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우징을 포함한 전체 카트리지가 단위로 교체하도록 된 구조임
이미지	없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원통형의 카트리지에 철강재질의 여과망이 내장된 물품으로 정수 기능이 있는 냉장고에 결합되어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수돗물을 흡입하여 내부의 여과망에 의하여 여과시켜 배출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 (중략)...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의 규정에 의거 제8421호 물품의 부분품 또한 이 호에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여과를 위한 필터 element와 여과할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구조와 외부 하우징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부분품이 아닌 완전한 여과기로 분류되어야 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형의 물 여과 또는 청정기로서 제8421.21-1000호로 분류함

1. 품명

- 상 품 명: 온도조절기(Defrost Sensor)
- 모 델 명: 서미스터(thermistor)⁶⁹⁾ (DA3210109R)
- 물품설명: 동 물품은 냉장고 압축기가 작동하지 못할 때 이를 제어 해 주는 온도조절장치임. 냉장고 벽에 굽은 선 모양의 센서를 부착 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이러한 온도에 따라 압축기가 작동하거나 동 작을 멈추게 하도록 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69)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치가 달라지는 반도체 회로 소자(therm + transistor)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418.99	9031.80
기본세율	8%	7.5%
호의 용어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소호의 용어	부분품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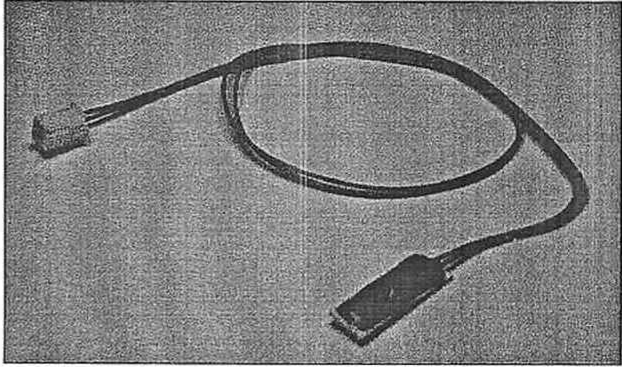
- 동 물품은 온도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 저항이 발생하여 이를 제어부에 전기적 신호로 전달하는 장치임.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냉장고 이외에도 온도조절이 필요한 다양한 장치(예: 자동차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동 물품은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16부 주2에 따라 제16부의 각 호의 용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제84류 및 제85류의 해당하는 호가 없으므로 제16부 주2 나호에 따라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여 해당 기계인 제8418호의 부분품으로 분류
- 인도
 -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분류
- 검토의견: 보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제9025.19호)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으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일지라도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온도계 및 고온계의 그룹에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고온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TC 서미스터의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온도를 감지한 후 ECU로 전송하는 백금과 세라믹재질로 된 저항온도계(센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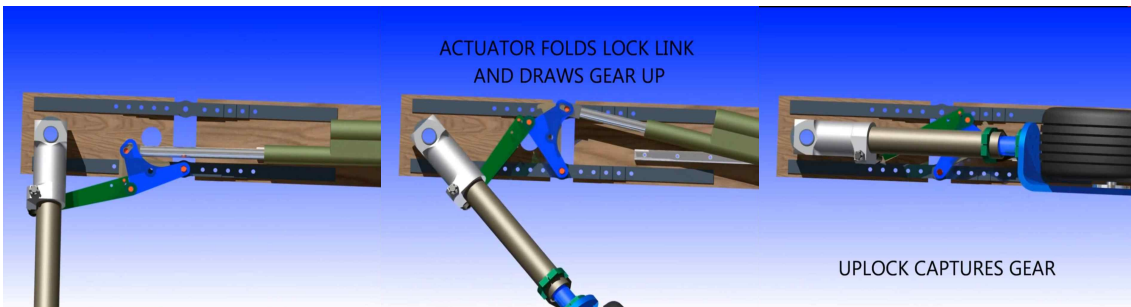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9025.19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개요 -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산화촉매장치 및 터보차저에 장착되어 배기가스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는 백금과 세라믹재질로 된 PTC서미스터(thermistor)* 타입의 온도센서 * PTC: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감 * 서미스터(thermistor):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치가 달라지는 반도체 회로 소자로 온도계 외에 여러 가지 제어기에 사용
이미지	

○ 독일(제8533.21호)

국가	독일
결정세번	8533.21
물품설명	<p>Thermistor (temperature sensor PT BGR KPL 30702760/00 strands), - of a nonlinear temperature dependent resistor with a positive Temperaturkoeffizienten (so-called PTC or PTC.) In a housing with a silicone cover with connection cable and jack, - for a performance of less than 20 watts - to protect an induction module (coil) for induction hobs "Permanent electrical resistance, no Kohlemasse- or carbon film fixed resistor for a power of 20 W or less; thermistor".</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항공기용 액추에이터
- 모 델 명: 항공기용 액추에이터
- 물품설명: 항공기의 이·착륙시 착륙장치(랜딩기어)를 동체 안으로 접어넣을 때 사용되는 부분품. 피스톤의 작용에 의하여 피스톤이 밀리면 착륙장치가 나오고 다시 피스톤이 들어오면 착륙장치가 접히는 방식. 유압식으로 작동함.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영국
HS	8412.21	8803.3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그 밖의 엔진과 모터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4-04-001)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84류 해당여부 검토가 필요
-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B) 수력엔진과 모터’의 물품 중 ‘(3) 하이드로울릭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유압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액체의 에너지를 선운동으로 변환하는 ‘하이드로울릭 실린더’에 해당하므로, 제8412.21호에 분류함

○ 영국(참조번호 GB123788945)

- 제8803호의 용어에는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호 제8803.30호에서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함
- 동 호 해설서 중 ‘(II) 글라이더와 연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분품,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를 설명하면서 ‘(2) 날개와 이들의 부분품(spars·ribs·cross-members)’이 포함된다고 설명.
- 이에 따라 동 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3.30호에 분류됨

○ 검토의견: 보류

- 우리나라의 경우 동 물품이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제8412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영국은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803호에 분류함. 따라서 동 물품을 ‘엔진’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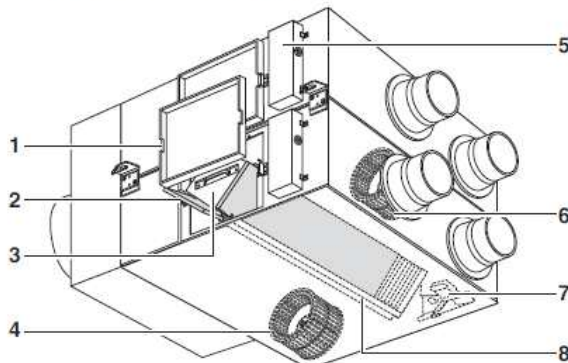
국가	미국
결정세번	8803.20
물품설명	<p>The items in question, parts numbers 1159LM41017 and 1159LM41013, are metal oil-film sleeve bushings (plain shaft bearings) used in the rod end portion of a hydraulic side brace actuator. The side brace actuator is a component part of the landing gear system on a jet aircraft.</p> <p>While plain shaft bearings are normally classifiable under a tariff provision covering transmission components, housed bearings and plain shaft bearings (subheading 8483), those that are principally or solely used on aircraft are considered aircraft parts for tariff purposes.</p> <p>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actuator bushings will be 8803.20.001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which provides for parts of goods of heading 8801 or 8802; undercarriages and parts thereof, for use in civil aircraft. The merchandise is subject to a free rate of duty.</p>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환기장치
- 모 델 명: VENTILATION (LZ-H200GBA2.ENWALEU)
- 물품설명: 동 물품은 실내 환기장치로서 내부에 탑재된 열교환기 (heat exchanger)를 사용하여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물질 제거하고, 외부로 배출함
- 물품사진



Models: LZ-H150GBA2 / LZ-H200GBA2



- | | |
|--|---|
| <p>1. Maintenance Cover
It prevents dust from clogging in Total Heat Exchanger.</p> <p>2. Air Filter
It prevents dust from clogging in Total Heat Exchanger.</p> <p>3. Total Heat Exchanger
It changes temperature and humidity between Supplying Air and exhausted air.</p> <p>4. Blower for Exhaust Air
It is a fan for discharging the contaminated air to outdoor.</p> | <p>5. Control box</p> <p>6. Blower for Supply Air
It is a fan for inhaling exterior air into an indoor space.</p> <p>7. Damper plate(board)
It converts exchanging mode between total heat ventilation and general ventilation.</p> <p>8. Total Heat Exchanger holder
It is used in guiding for the installation of Total Heat Exchanger.</p> |
|--|---|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	
HS	8421.39	8414.59	8415.90
기본세율	8%	-	-
호의 용어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 - 기타	팬 - 기타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환기역할을 하는 환기장치로서 내부에 열교환기가 장착됨. 열교환기는 내부의 공기를 내보낼 때 이물질(예: 먼지)을 제거하여 공기를 환기하는 역할을 함. 이로 인해 온도가 조절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동 기능상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우리나라는 동 물품을 제8421호의 기체용 여과기 또는 청정기로 분류.
 - 제8421호 해설에 따르면 기체용의 여과기, 청정기란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기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

거).”라고 규정

- 이에 따라, 동 물품은 제8421호의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동 물품에 포함된 열교환기(heat exchanger)는 공기의 환기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로 인해 외부공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그러나 이것은 공기청정을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로 분류할 수 없음

○ 필리핀(원산지증명서)

- 반면 필리핀에서는 제8414호 및 제8415호에 분류하는데, 제8414호에는 “주로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송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되며”라고 설명
- 제8415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고 설명

○ 검토의견: 제8421.39호

- 동 물품은 공기의 유출입 기능과 동시에 온도와 습도 조절, 그리고 이물질 제거 기능을 동시에 갖춘 복합기계임. 따라서 주된 기능에 따라 여과기 또는 청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체코
결정세번	8421.39
물품설명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applicant is a vacuum insulated tent with inflatable structures designed to isolate and treat more people with highly virulent infection. The purpose is to create a quarantine area on the vacuum principle.

Product Features: The filter-ventilation unit provides a complete air exchange. Microorganisms captured HEPA filter is disposed built-in source of UV radiation filtration efficiency of 99.9995%.

Main parts: - a tent with external dimensions (LxWxH) 10240 x 6000 x 3030 mm and weight of 195 kg, which consists of inflatable structures, inlet / outlet valve, the anchor point of the tent, anchor rope, anchor slings and lifting strap lighting, floor, rolled up the tent entrance, střechovíce, a sleeve for the hose heating sleeve for wiring, anchor pin; - NBC filter-ventilation unit MG250S - II - Dimensions 570 x 550 x 750 mm, weight 53 kg; airflow from 300 to 250 m³ / h, power 674 W, 1-phase supply voltage 230 V, or through the drive voltage of 12 V / 24 V; pre-class. G3, G4 filter, NBC carbon filter, HEPA filter class. G13; - decontamination module with external dimensions (LxWxH) 1900 x 1900 x 2450 mm and weight of 34 kg, which forms the entrance of the tent vacuum (separate volume).

Used primarily for decontamination of medical personnel when leaving the tent area. Deposition solution is implemented system of five nozzles with a flow rate of about 0.8 l / min per nozzle. One hand nozzle is used to decontaminate less accessible places. Decontamination module consists of an inflatable tubular structures with a suspended cabin, the walls of which are high-frequency welded to floor pan.

This creates an impermeable bath, in which the catches from which the waste water drains. For this purpose pump Dekontbox by using specially designed strainer maintains the wastewater at 2 mm. The floor of the module is covered with rubber grates and prevents re-contamination of people.

Contaminated water is collected in 120 l PE barrels. On the front wall of the decontamination module are always in the right corner above the floor placed inlets for decontamination agent for removal of the contaminated water. Accessories decontamination module: connecting collar decontamination module and Biobox, hose nozzles, hand shower, connecting hoses to pumps, suction strainer. - Dekontbox, which provides the water for the decontamination module EDB and decontamination showers EDK. Dekontbox (Portable) contains a diaphragm pump for decontamination solution into the spray pressurized water distribution box (5 jets and hand shower 1) diaphragm pump for pumping contaminated water out of the box, the expansion pressure tank, 2 plastic hose assemblies for maintenance and 2 waste, 2 drums with lid (120 l), which collect water and decontamination solution and waste water, switching power supply AC / DC - SYS 1181-3A24; - compressor - can play tent air and air or vacuum; voltage 220-240 V and power 0.95 kW. The scope of delivery includes corresponding hose with Y distribution, which is connected to the inflatable tent / drain valves. The total length of the hose is 2 m There is also an electric supply. cable length of about 10 m Product packaging: vacuum tent in a shipping

	container, decontamination module in a shipping container, filter ventilation unit in a cardboard box, 2 barrels in foil dekontbox in a cardboard box, a compressor in a cardboard box.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비데
- 모 델 명: American Standard 자동식(automatic) 및 수동식(non-automatic) 비데
- 물품설명: 화장실에 설치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식 비데 및 수동식 비데. 두 가지 물품은 기능상 동일하지만, 기계식은 수압이나 온도 등을 직접 조정하여 사용해야 함. 주요 구성요소로서 밸브와 노즐 및 플라스틱제의 좌변기로 되어 있으며 자동식의 것은 전동기를 장착
- 물품사진

EB-NB1160N (자동식)	EB-NB100C (수동식)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24.89	3922.20
기본세율	8%	30%
호의 용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 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 분사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번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 기타	번기용 시트(seat)와 커버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동 물품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데로서 주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으며, 물을 분사하는 분사구가 장착됨
-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부(제16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제16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 나무, 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설명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제8424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위생용품인 변기 시트와 커버(제3922호), 분사장치(제8424호),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제8516호)(자동식의 것에 한함)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분사장치’에 있음

○ 태국(원산지증명서)

- 반면 태국의 경우 제3922호에 분류하는데, 제3922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으로 규정한 것을 들어, 통칙 제1호 호의 용어에 따라 ‘비데’를 제3922호에 특게하여 분류함

- 다만, 제3922.20호의 용어는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이며, 제3922.90호의 용어는 ‘기타’로서 ‘비데’가 특게되어 있지 않음. 이에 HSK 제3922.90-1000호의 용어는 ‘비데’로 우리나라에서 비데는 제3922.90호에 분류되나, 태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비데가 특게되어 있지 않으며, 제3922.20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제8424호에는 액체의 분사용 기기, 제3922호에는 비데로 모두 분류가 가능한 물품임
- 또한 영국과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물품인 비데를 제3922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어 동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분쟁이 예상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슬로베니아(제3922.9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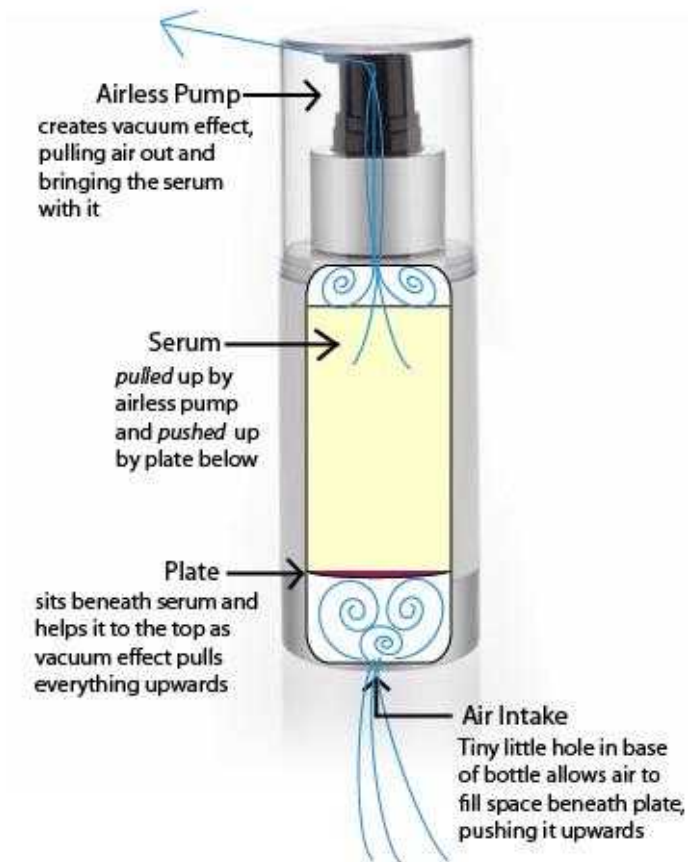
국가	슬로베니아
결정세번	3922.90
물품설명	Bidet, made of artificial marble composed of 20% of the plastic material (styrenated polyester resin) and 80% filler (silicates and carbonates), and coated with a protective layer of plastic (styrenated polyester resin), a thickness of approximately 0.1 mm.
이미지	없음

○ 우리나라(제8424.89호)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8424.89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제 변기 시트와 커버, 분사기,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 조작부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서, 가정·사무실 등의 화장실 양변기에 설치, 배변 후 물을 이용하여 배설 부위 등을 세척하는 전자비데(중량 4.4kg) - 주요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레노이드 밸브: 신호에 따라 물을 공급 및 차단 등 작용하는 밸브 · 온수 탱크: 세정에 쓰이는 물을 저장하고 온수 설정시 히터를 이용하여 물을 가열하는 장치 · 플로우밸브: 세정 또는 비데로 물을 분배하고 세정(비데) 동작시 수압을 조절하는 밸브 · 건조블로워: 비데 사용 후 휴지로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습기 제거를 위한 건조장치 · 노즐: 세정, 비데 시 쓰이는 물을 분사하는 장치 · PCB: 기기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장치 · 난방 변좌: 열선히터를 활용한 온열 시트 ※ 주요 모터(전동기)로는 노즐작동용 모터, 건조드라이어용 블로우모터 등이 있고, 히터는 세정장치, 건조장치, 난방 변좌에 각각 장착되어 있음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품명: 에어리스 펌프(airless pump)
- 모델명: 에어리스 펌프
-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원형 용기 상단에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펌프(airless pump)가 부착되고 펌프 헤드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뚜껑이 있는 제품. 화장품을 담아두고 있다가 사용시 펌프의 헤드(head)를 누르면 펌프의 작용으로 용기 속에 있는 화장품이 관을 통하여 밖으로 분출되며,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닫음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8424.89	8479.89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가정형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참조번호 6680)
 - 제8424호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 관세율표 제8424호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 이에 따라 본 품은 용기 안에 있는 화장품을 분사해주는 분사용 기기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24.89호에 분류함
- 독일(참조번호 DE6396/13-1)
 - 동 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분석, 제8479호에 분류함

-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에어리스 펌프는 다른 호에서 규정하지 않는 ‘디스펜서(dispenser)’로 보아 고유의 기능을 가지므로 제8479호에 분류된다고 설명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의 쟁점은 에어리스 펌프가 내부의 화장품을 ‘분사(Project)’하는 기기인지 여부임. 분사용 기기인 경우 제8424호에 분류가 가능하나, 이를 단지 내용물을 밖으로 손쉽게 꺼내어 주는 기능인 경우에는 제8479호에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제9616호에는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어 해당 호 분류가능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미국
결정세번	8424.89
물품설명	<p>The merchandise in question is a line of airless lotion dispensers. The dispensers come in 21 different sizes, ranging from 15 ml to 200 ml and are round or oval shaped. All components are of plastic and generally consist of the following components: cap, actuator top and bottom, upper and lower valves, bellows, container, piston, and bottom plate.</p> <p>The dispensers project doses between 0.3 to 1.5 ml per stroke. In operation, the dispenser is primed by finger operation until the product is dispensed through the actuator. A pump-produced vacuum lifts the piston upward toward the actuator forcing the product up and out.</p> <p>You believe the product to be classified as a pump in subheading 8413.82,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e cannot agree. This merchandise includes an actuator, valves, a piston and a reservoir in such a way as to result in a mechanical appliance and more than a mere pump.</p> <p>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airless lotion dispensers will be 8424.89.0000, HTSUS, which provides for other mechanical appliances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The rate of duty will be 1.8 percent ad valorem.</p>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영상판독장치
- 모 델 명: Image Plate Reader
- 물품설명: 컴퓨터를 이용한 엑스레이(X-Ray)영상촬영기술(CR; Computed Radiography)에서 사용되는 영상판독장치. Image plate를 삽입하여 스캔하고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함. (Image plate는 환자의 X선 영상이 촬영된 고감도 영상판)
- 물품사진 (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8471.90	8543.7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4-08-002)

-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물품은 직접적으로 X선을 사용하는 기기 아니며, 물품에 삽입되는 image plate 역시 제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 제8471호에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규정
- 따라서 동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71호에 분류함

○ 독일(참조번호 DEM/312/07-1외)

- 동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전자기기인 CR plate reader로서 제8543호에 분류함
- 동 물품은 대상을 읽기 위한 레이저, 거울, 프리즘, 포토멀티플라이어, 통합드럼유닛, USB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기계가 결합된 복합기계이나 이 중에서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리더(Reader)임.
- 관세율표 통칙 제1호와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제8543.70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이 제8471호에서 규정하는 ‘문자’를 독취하기 위한 기기인지 여부가 쟁점이나, 환자의 X선 영상을 문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8471.90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 및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 개인이 보유한 필름을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인화를 하는 용도로 사용 ○ 주요구성요소 및 요소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CCD : 필름을 스캔할 때 필름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장치 ② ED렌즈 : 카메라의 렌즈와 같이 필름의 상을 비추는 장치 ③ 밀러 : 렌즈 앞 부분에 있으며 빛을 받는 역할을 함 ④ LED광원 : 스캐너가 필름을 스캔할 때 사용되는 빛을 공급하는 장치
이미지	없음

- 본 품은 필름이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기로서 개인이 보유한 필름을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 작업을 하거나 디지털 인화를 하는 용도로 사용함
- 관세율표 제8471.90-0000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학식 판독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8471호 (A)(2)에 "광학식독취기 : 이러한 기계들은 일반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같은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금전등록기 같은 다른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상기한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8471.90-0000에 분류

1. 품명

- 상 품 명: 3D 프린터
- 모 델 명: Cube-X Trio
- 물품설명: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USB에 저장, 프린터에 입력하여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고체 플라스틱 카트리지(ABS, PLA)를 사용하여 3차원 형상의 제품을 구현하는 기기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폴란드
HS	8477.59	8477.8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그 밖의 성형기 - 기타	그 밖의 기계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은 PC에서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후 프린터로 고체 상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실물을 만드는 장비로서, 2차원 평면에 동일한 문양이나 문자를 인쇄하는 프린터(제844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우리나라(결정 14-01-003)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동 물품이 성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검토로서, [플라스틱 용어사전]에서 “성형(molding, forming)이란 플라스틱성형 재료에 열 및 압력을 가하여 연화 또는 용융 유도화 시킨 뒤, 금형 내지 다이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
 - 비록 성형이 이루어지는 금형은 없으나, 성형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8477.59호의 기타의 성형기기로 분류
- 폴란드(참조번호 PLPL-WIT-2014-01327)

- 3D 프린터는 3차원 형상으로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물품을 만드는 기기. 프린팅 대상은 레이어 형상으로 제조되는데, 플라스틱의 분말을 녹여 얇은 층으로 분사함.
- 플라스틱층을 분사하는 분사기가 이동하면서 특정 위치에 플라스틱 수지를 뿌려 한 개층을 만들고 그 위에 다른 층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듦. 완성 후 브러시 또는 압축 공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가루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 대상을 완성함. 이에 따라 기타의 방식으로 제조되는 물품으로서 제8477.80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77.59호

- 동 물품은 ‘성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임. 성형이 반드시 ‘금형’을 이용한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제8477.59호에 분류할 수 없겠으나, 실질적으로 성형작업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물품을 제8477.5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네델란드
결정세번	8477.80
물품설명	<p>A 3D printer including the following appearance and technical feat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metal housing - a so-called all-in-one printer - a print resolution of 200 microns - a plug and play system - an open cartridge system - print wire with plastic, - a heating element; - dimensions of 245 x 260 x 350 mm, - a weight of 5 kg. De printer will melt the plastic wire, and then drips from the print, resulting in a three-dimensional product is created.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가습기
- 모 델 명: 가습기
- 물품설명: 상·하단부로 분리가 가능한 가습기. USB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초음파 가습기로서, 물통과 결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본체 내부의 PCB가 등근 진동자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진동자 아래에는 막대 모양의 스펀지 필터가 밀착되어 있음. 내부의 PCB에서 신호를 받아 전류가 흐르면 진동자(압전세라믹)의 압전효과로 인해 진동자 부분이 진동하면서 물을 흡수한 펄프의 물을 공기 중으로 분무함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8479.89	8424.89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소호의 용어	부분품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참조번호 670)
 - 관세율표 제8479호에서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제 8479호에는 공기가습기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진동자의 압전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빠르게 진동하게 하여 공기 중으로 뿜어내도록 하는 초음파식 가습기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가정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47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 8479.89-1090호에 분류함.
- 독일(참조번호 DEM/2326/08-1)
 - 동 물품은 가습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기기로서 액체를 분사함으로서 공기 중의 습도를 높이도록 작동함. 동 물품은 복합 기계로서 기타 부속된 타이머, LED, 기타 전기기기 등 모두 명백한 단일의 한정된 가습기능을 위한 것이므로 제8424호의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기기'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479.8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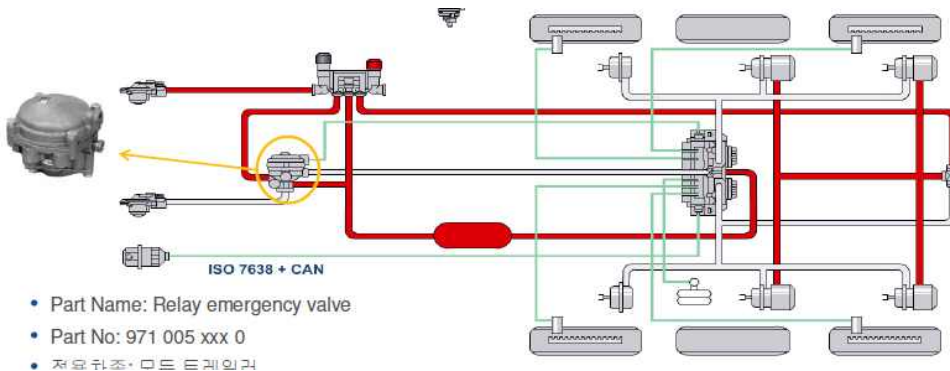
- 동 물품은 가습을 위하여 액체를 공기 중으로 분무하는 기기임. 가습과정에 '분무'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보다는 공기의 습도를 높이는 '가습'이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동 물품을 제8479호의 가습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루마니아
결정세번	8479.89
물품설명	<p>As described applicant's product is an ultrasonic humidifier chamber. The machine uses high frequency ultrasonic oscillator to split water into small particles with a diameter of approx. 1-5 micrometers.</p> <p>Ventilation spray dried particles in the air where they evaporate ensuring air humidification. Operating at a voltage of 220-240V/CA, provides hourly output volume of 280ml of water and volume of water is 3.7 liters.</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공기압 전송용 밸브
- 모 델 명: Relay Emergency Valve
- 물품설명: 트레일러의 제동을 위한 공기압력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트랙터-트레일러의 제동파이프 분리시 비상제동 가능
 - 제동과정1: 운전자가 제동페달을 밟으면, 트랙터로부터 연결된 두 개의 브레이크 라인 중 제동라인을 통해 Relay Emergency Valve의 컨트롤 포트에 압축공기가 전달됨
 - 제동과정2: 밸브의 컨트롤 포트에 압축공기가 도달하면 밸브가 열리면서 트레일러 내 압축공기 탱크에 있던 압축공기가 밸브의 전달 포트를 통해 ABS 또는 EBS 모듈레이터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공압실린더로 전달, 제동이 이루어짐
 - 비상제동: 트랙터-트레일러 제동연결 파이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커플링이 끊어짐으로 압축공기 공급라인의 압력이 2bar이하로 저하시키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탱크에 있던 압축공기가 ABS 또는 EBS로 전달되어 비상제동이 이루어짐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481.20	8708.3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국내 수출업체 문의)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이에 따라 동 물품이 제8481호에 적절히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고체 등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코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탭·코크·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브레이크밸브에서 오는 에어신호를 받아 릴레이피스톤이 하강하여 인네트밸브를 열어 에어탱크에 있는 공기를 브레이크 챔버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20-2000호에 분류함.

○ 인도

-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H) 브레이크(shoe · segment · 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 · 드럼 · 실린더 · 부착된 라이닝 · 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규정
- 동 물품은 밸브로서 기능하나 제동장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제8708호로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자동차의 제동장치 부분품으로서 제8708호에 분류해야 하나, 제848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부 제외규정에 따라 제8481호에 분류되어야 함
- 제8481호는 '밸브(Valve)'로 불리지만, 동 물품의 구체적인 기능과 형상을 파악하여 밸브로서 작동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8481.20
물품설명	<p>Energy transfer valve, called Electro-Pneumatic Control Unit, in the form of a combined machine off an electronically controlled pneumatic valve for monitoring, filling and control of the main brake line (so-called Brake Pipe Control Portion [BPCP – Part782733]) – an electronically controlled pneumatic valve to control the compensation line (so-called equalization reservoir control portion [ERCP]), with “Dead Engine regulator (DER)” functionality, – three other electronically controlled pneumatic valves (so-called 13 Portion Control [13CP], 16 Portion Control [16CP] and 20 Portion Control [20CP]) – a pneumatic relay valve (so-called Brake Cylinder Control Portion [BCCP]) for controlling the pressure in the brake cylinder, – a pneumatic valve (So. DB Triple Valve [DBTV]) as an emergency valve in Electronics disorders, – a filter element (so-called MR filter) and a DC voltage converter with electrical distribution (so-called Power Supply Junction Box [PSJB]), for converting an input DC voltage of 74 V or 110 V into a DC output voltage of 24 V, , mounted together on the electrical connection and the supply of the electronic parts of the product to a carrier plate and connected by pipes, hoses and electrical cables together for installation in rail-drive vehicles as a central pneumatic valve to control the air flows and pressures in a computer-controlled, pneumatic railcar brake (so-called Computer Controlled Brake [CCB]). Valves practice the main function OFF.The product is classified as a “fitting for pipe or tubing, valve for pneumatic power transmission”.</p>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손 건조기
- 모델명: 손 건조기
- 물품설명: 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손을 씻은 후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손을 건조할 수 있는 손 건조기.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과 이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손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바람의 온도를 조절하는 히터는 선택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음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8516.33	8414.59
기본세율	8%	Free~2.3%
호의 용어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손건조기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은 일반적으로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서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손의 습기를 제거하도록 고안됨. 특히 바람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은 끄거나 켤 수 있어 **선택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함
- 우리나라(참조번호 3078)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면서
 - 제8516.33호에는 ‘손 건조기’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 8516.33호에 분류
- 미국(참조번호 N028988)
 - 동 물품은 손 건조기로서 바람의 온도가 건조기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물품이 아님. 동 물품은 강한 바람이 분사되면서, 손의 물기를 제거하도록 작동함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제8414.59호에는 ‘팬(fan)’이 분류됨
- 동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팬’에 있고, 온도조절기능은 선택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팬이 분류되는 제8414.59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516.33호

- 일반적으로 손 건조기는 바람을 일으키는 팬과 온도를 조절하는 전열용 저항체를 모두 지닌 복합기계의 성격을 가짐
- 반면, 동 물품은 온도조절기능 없이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본질적 특성이 바람을 일으키는 팬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건조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 8516.3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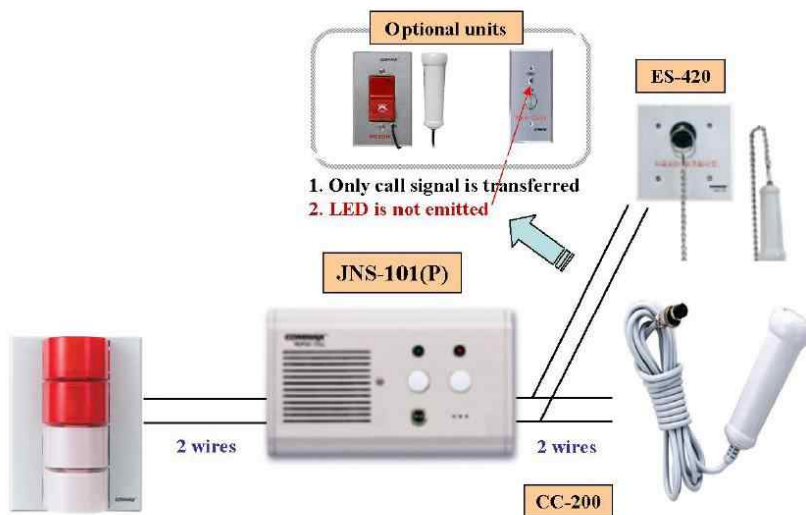
국가	영국
결정세번	8479.89
물품설명	A WALL MOUNTED HAND DRYER CONTAINING A MOTOR, AN AIR FILTER AND SOUND SILENCING EQUIPMENT. SHEETS OF AIR ARE PRODUCED FROM THIN SLOTS TO BLOW WATER OFF THE HANDS. THE AIR IS TRIGGERED BY INFRARED SENSORS. THE HAND DRYER DOES NOT HEAT THE AIR. THE AIR PASSES CLOSE TO THE MOTOR, COOLING THE MOTOR. THIS PROCESS MAY CAUSE THE HEAT TO RISE ABOVE AMBIENT TEMPERATURE OVER A PERIOD OF USE.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호출시스템
- 모 델 명: 너스콜 (JNS-101)
- 물품설명: 동 물품은 병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호출표시 기능이 있으며, 통화중 위급신호 기능, 병실전체 방송기능, 복도 등 표시 기능 등이 있는 물품임
- 물품사진



 **JNS-101 Diagram**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17.62	8531.8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우리나라에서는 제8517호의 무선 송수신 기기로 분류하는데 제8517호의 해설서에 따르면 제8517호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구분함

- (I)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 (II)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특히, (II) 그룹에는 기지국, 엔트리폰 시스템, 비디오폰, 전신기기, 전화용 또는 전신용 스위칭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 기기, 기타 통신기기가 분류되며, 특히 엔트리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설명

“이 시스템은 대개 전화핸드세트, 키패드 또는 확장기, 마이크로폰과 키로 구성되어 있다. 대개 여러 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은 원하는 키를 눌러서 입주자를 호출하여 대화할 수 있다.”

- 너스콜은 이와 역시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음성 송수신 기기로서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있음

- 또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 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물품 이외의 물품 역시 동일한 제8517호에 분류가능

- 태국(원산지증명서)

- 태국의 경우 제8531호에 분류하는데,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로서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 경보기, 화재경보기 등이 분류.

- 동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되며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든, 수동식 또는 자동식을 불문

○ 검토의견: 제8517.62호

- 동 물품은 원거리에 있는 간호사를 호출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이에 부수적으로 청각 및 시각적 신호를 발생하도록 함

- 즉, 상대방을 호출하여 대화하고 의사를 전달하며, 필요시 벨을 울려 위급상황을 전달하는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음성의 송수신 기능에 있다고 보아 통칙 제3호의 나에 따라 제851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네델란드(제8517.6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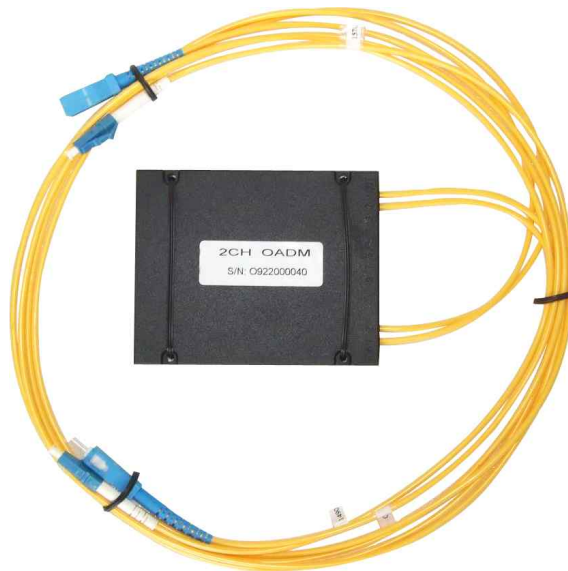
국가	네델란드
결정세번	8517.69
물품설명	<p>A wireless alarm system for floor patients and the elderly, consisting of a floor mat, a transmitter and a ontvang-/zendtoestel. The system-according to task under the following appearance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floor mat, with sensors react when being stepped on the mat; - a cable and a jack plug; - with dimensions of approximately 55 x 60 cm; - a transmission device, equipped with on / off switch, LED indicator, a connector to the jack of the floor mat, a ontvang-/zendtoestel, equipped with an LED display, a gray cable, without a. placing plug, a power supply cable for the connection with a call connection of a nurse call system, - with an adapter. The system is intended for use with a nurse call system. Classification as a plug-in for sound or visual signals under HS heading 8531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is excluded because the system has no built-in alarm. The whole is to be recognized as a functional unit with the specific function of receiving and transmitting data referred HS-heading 8517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이미지	없음

- 우리나라(제8517.62호)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수신, 변환 및 송신 또는 재생하기 위한 기기(교환기 및 라우팅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제8517호 해설서에서는 ‘(II)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F)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2) 다수언어에 의한 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하기 위한 무선송신기 및 무선수신기,
 - (5) 자동차·선박·항공기·열차 등에 사용되는 무선전화기기(무선전화 수신기를 포함한다),
 - (6) 보통 전지식으로 작동되는 휴대용수신기 : 예를 들면 부름, 경보, 호출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수신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아기의 주변소리를 듣거나 아기에게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 비교적 근거리에서 음성 등 소리를 무선전신으로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8517.62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가 내는 소리를 보호자에게 전달해주고, 보호자는 아기를 달래주는 음성을 아기에게 들려줄 수 있는 무선통신기기 ○물품 이미지 ○기능 및 제품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기용장치'와 '보호자용장치'로 구성되며, 아기용장치를 아기 근처에 설치해놓고, '보호자용장치'를 휴대하면서, 아기와 떨어진 곳에서도 아기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보호자용장치'에서 말하기 기능을 사용해 '아기용장치'를 통해 부모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음. - 주파수대역 : 1.88~1.9GHz - 작동범위 : 야외 최대 300m, 실내 최대 50m - Unit size : 보호자용[108(H)×60(W)×42(D)mm], 아기용[55(H)×109(W)×92(D)mm] - 무게 : 보호자용(90g), 아기용(135g)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광신호전송기기
- 모 델 명: SWITCH OADM(Optical Add and Drop Multiplexer)
- 물품설명: LAN망 센터장비에서 16개의 CWDM(Coar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파장별로 분할된 신호를 하나의 광신호로 합치거나 LAN 단말장비에서 16개의 CWDM신호 중 필터링된 고유 신호만을 Drop하여 수신하고 다음 단말장비로 넘어가는 신호에 남은 파장을 Add하여 전송하는 기능(분기별합다중화)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8517.70	9013.8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 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부분품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3-02-001)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로 규정.
 - 제8517호의 용어와 해설서에서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
 - 동 호 해설서에서 (II)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의 (G) 기타 통신기기에서 (4)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장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LAN 구축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광섬유에 함께 실는 광섬유케이블 시스템의 필수 부분품으로서 통칙 제1호에 따

라 제8517.70호에 분류

○ 독일(참조번호 DEB/6704/09-1)

- OADM으로 불리우는 장치는 한정된 파장영역의 신호나 광학식 네트워크상의 복합신호로부터 특정 신호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90류의 기타 기기에 포함되지 않는 광학식 기기로서 제9013.80호에 분류함

- 제16부의 주1(제외규정) 타목에 따라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13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이 기타의 광학식 기기(제9013호)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미국
결정세번	8517.50
물품설명	<p>The integrated PLC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OADM) for C or L bands and 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COADM) are devices used in long-haul telecommunication line systems for the transmission of voice, video, and data. These communications modules incorporate optical elements. They also contain complex printed circuit assemblies and a number of electronic components, which contribute to the manipulation of optical signals via carrier current systems and/or digital line systems. The optics in addition to the complex electronics within these modules make the optics subsidiary to the functioning of the electronics within the multi-channel mux/demux module and filter add/drop module. As such, they are apparatus for telephony and not optical elements or instruments.</p> <p>The integrated PLC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OADM) for C or L bands is designed for system developers</p>

	<p>building 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DWDM) networks for telecommunications, CATV/MSO, and enterprise applications. As an 8 to 32-channel device, it provides complete passive functionality, integrating fast (5 ms) reconfiguration/protection switches, per MUX/DEMUX. In addition, all necessary control electronics are integrated internally and the modules are provided with a high-level command interface. With this level of integration, it provides full optical-channel monitoring (OCM) on every port, fault detection, automatic dynamic channel equalization (DCE), and supports SONET/SDH protection switching. This multiplexer integrates a level of DWDM system management comparable to that found in SONET/SDH systems, eliminating the need for add-on monitor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technologies. It seamlessly enables future expansion and its remote configuration provides for more flexibility than fixed OADM.</p> <p>The 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COADM) Series of Configurable Optical Add Drop Multiplexers selectively adds and drops individual or a set of wavelength channels from a DWDM multi-channel stream. Furthermore, this sub-assembly serves as a node to interchange wavelength channels among fiber routes. The COADM uses established JDSU products as building blocks, e.g. DWDM mux/demux, and voltage controlled attenuators. Both opto-mechanical and solid state switch versions are offered. The COADM can be easily customized to meet customer requirements, such as number of channels, filter specifications and power equalization. The COADM sub-assembly is compact and directly mountable on a printed circuit board.</p> <p>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integrated PLC re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OADM) for C or L bands and the configurable optical add/drop multiplexer (COADM) will be 8517.50.9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Other apparatus, for carrier-current line systems or for digital line systems: Other: Telegraphic: Other." The rate of duty will be free.</p>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울트라 슬림 월마운트(Ultra Slim Wall Mount)
- 모 델 명: WMN3000BX
- 물품설명: TV를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비금속제의 장착구와 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인도
HS	8529.90	9403.20	8302.49
기본세율	8%	20%	10%
호의 용어	부분 품(제 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 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소호의 용어	기타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동 물품은 TV를 가정에서 벽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텔레비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브랜드 TV제품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부분품 분류를 위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따르면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로 분류한다. 다만,...”과 같이 규정됨
- 동 물품은 제16부 주2 가에 따라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16부 주2 나에 따라 텔레비전(제8528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52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

○ 태국(원산지증명서)

- 동 물품은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에 분류한다고 통보. 그러나 텔레비전은 가구로 볼 수 없다는 것과, 제8528호의 용

어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9403호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도(원산지증명서)

- 관세율표 제830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 부착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동 물품은 비금속제의 것으로서 일견 제8302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텔레비전의 부분품으로서 용도가 명백하며
- 제15부 주1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8302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검토의견: 제8302.49호

- 동 물품은 TV를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TV의 기능작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품’이라기 보다, ‘부속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TV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2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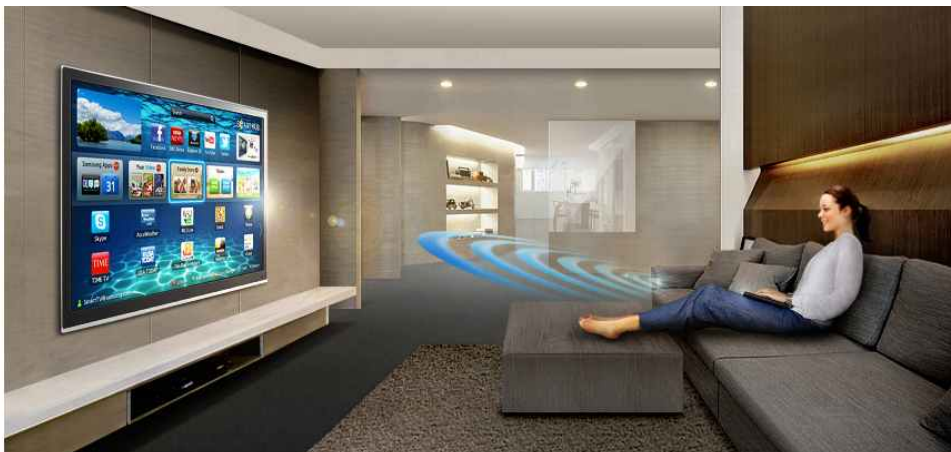
국가	폴란드
결정세번	8529.90
물품설명	Brackets made of steel, in the form similar to a rectangle of 24 x 15 mm. They have four openings and centrally mounted, internally threaded stem a length of about 8 mm. Products ultimately are screwed to the back of the TV. Allow mounting of the frame to hang the TV on the wall.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TV용 스마트 무선키보드
- 모 델 명: VG-KBD1000/XT
- 물품설명: 스마트 무선키보드는 스마트 TV와 태블릿 PC에 전용되는 키보드로서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되어 가정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임. 키보드와 무선터치패드가 결합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29.90	8543.7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일반적인 키보드는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에 따라 분류함.
 - 동 규정에 따르면 키보드가 제84류 주5 다목의 1)과 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 및 그 단 위기기 등)로 분류한다고 규정
 -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 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 위의 요건을 검토해 보면, 스마트 키보드는
 -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며(스마트 TV의 중앙처리장치),
 -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블루투스 방식)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기기임
 - 이에 따라 제84류 주5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스마트 키보드는 제 847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제84류 주5호 다목을 적용하기 전에 제84류 라목과 마목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나,

- 키보드는 라목에 열거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 마목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있지 않은 동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음

제84류 주5

5. 가.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다.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다목 2)와 3)의 조건을 충족하는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X-Y co-ordinate) 입력장치,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로 분류한다.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 3) 확성기, 마이크로폰
-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마.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

- 이에 따라 스마트 TV용 키보드는 제8471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제8529호와 태국의 제8543호의 분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네델란드
결정세번	8471.60
물품설명	<p>A keyboard with mouse function, being an input unit for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ABM)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appearance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feat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s wirelessly - with built-in battery - on one side with a mini keyboard - on the other side with several buttons for controlling the mouse function - in a plastic casing - with a micro USB receiver with a wireless range of 10 meters - rechargeable via a USB connection - for operating a smart TV , a game console, an AGM or mediaspeler. <p>Het keyboard is ready for retail sale and is packaged in a carton, together with non-determining character goods such as a USB charging cable, a USB extension cable and a user manual. The distinctive main function of the product is determined by the keyboard as falling within CN subheading 8471.60.60 of the Combined Nomenclature.</p>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클리닝 천
- 모 델 명: BN63-01798B
- 물품설명: TV 또는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청소를 위한 섬유제의 클리닝 도구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29.90	6307.10
기본세율	8%	30%
호의 용어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마루뒹이포·접시뒹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포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TV 또는 모니터의 청소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TV 또는 모니터 완제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TV 모니터 부속품이다. 이러한 부속품은 일반적으로 TV 의 소매용 포장에 함께 포장된 ‘세트물품’으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TV나 모니터와 함께 판매됨.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소매용으로 한 세트물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속 또는 판위에 등)

- 이에 따라 동 물품이 TV 또는 모니터와 함께 소매용으로 한 세트물품으로 제시된다면 TV 또는 모니터가 분류되는 제8528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동 물품이 TV와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매용으로 한 세트물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칙3(나)를 적용할 수 없으며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해야 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제시되는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가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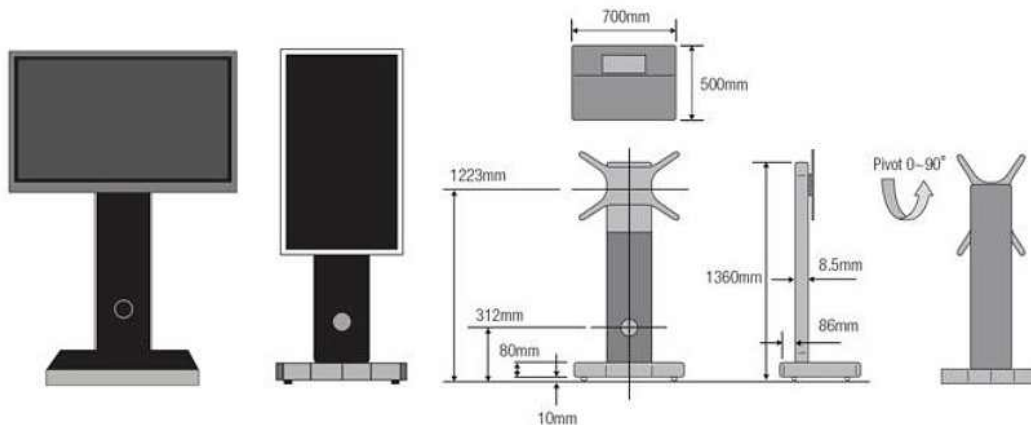
- TV와 함께 세트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528호에 분류하고,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제6307호의 용어를 적용, 제630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8528.59
물품설명	<p>LCD monitors with DVD combination- of two touch-sensitive 7 inch color TFT liquid crystal displays (screen diagonal: 17.78 cm), each with a DVD / CD player, backlight and signal electronics in swiveling housings for installation in a motor vehicle with back fastening elements, controls, USB port, AUX, TV input, crosslink and power connector as well as infrared transmitter - to display images and videos - identifying main activity - and for video and audio playback of DVDs, CDs and USB Memory together with accessory kit (cable, infrared headphones, cleaning cloth and user manual) in a common VerkaufsumschlieÙung.</p> <p>The LCD monitors with DVD combination determine the character of the whole. "monitors, not incorporating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with liquid crystal display, not 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 not Flachbildschirme that can represent the degree signals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with an acceptable of functionality, color video monitors with other devices combined (combination of monitors - and video equipment - identifying main activity in the set with no charakterbestimmendem pack "</p>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LFD(Large Format Display)용 웰컴보드
- 모 델 명: STN-520WE/EN
- 물품설명: LFD 대형모니터의 약세사리로서 디스플레이를 지지하고 이를 바닥 위에 세우는 역할을 수행. LFD 본체(모니터)와 함께 판매되는 제품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29.90	9403.70
기본세율	8%	20%
호의 용어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소호의 용어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옥외 광고판으로 사용되는 LFD의 받침용 스탠드로서, 디스플레이를 지지하고 바닥에 바로 세우며, 가로 또는 세로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 주용도가 있음
- 소매용 세트의 경우
 - 동 물품은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모니터와 함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되어 있음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한 물품의 경우 통칙 제3(나)목을 적용하여 해당 디스플레이 제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는 제8528호에 분류되므로 통칙 제3(나)목이 적용가능하다면 동일한 제8528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임
- 별도로 제시된 경우
 - 그러나 디스플레이와 함께 제시되지 않고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각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살펴보아야 함. 우리나라 유사물품 분류사례를 보면, TV 스탠드를 재질에 따라 분류한 사례가 존재. TV 스탠드는 디스플레이의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제16부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재질에 따라 분류한 사례임
 - 이와 마찬가지로, LFD 스탠드의 경우에도 LFD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며, 재질 역시 플라스틱이므로 기존의 분류사례와 동일하게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보아 제392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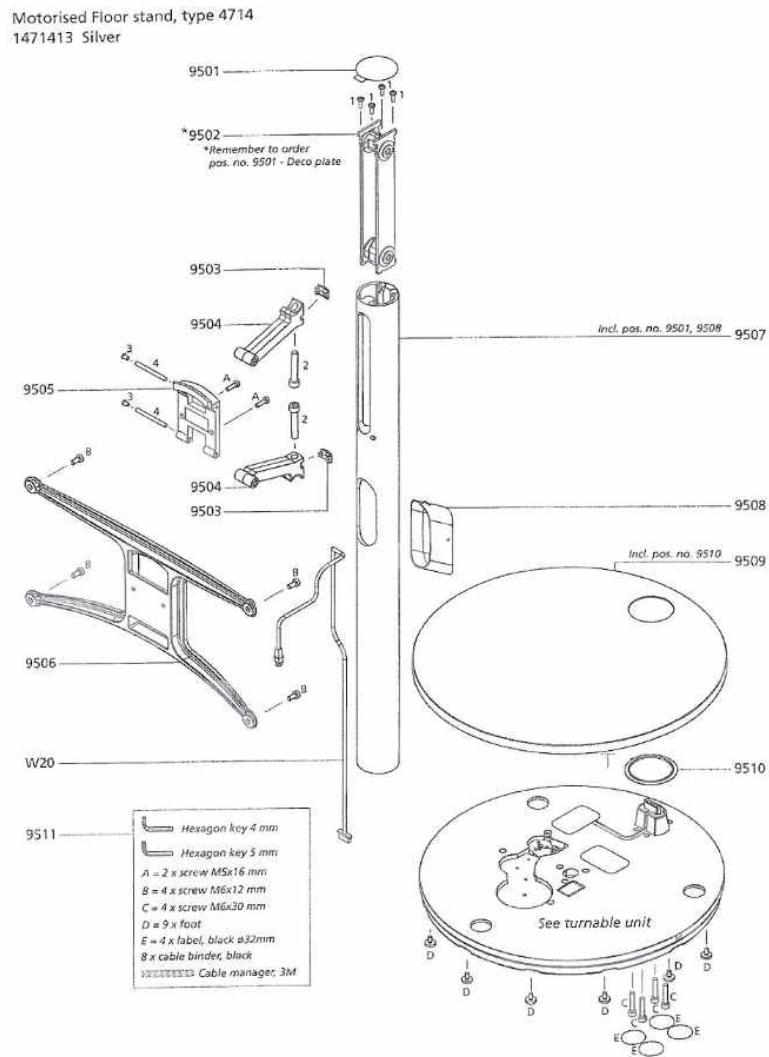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제3926.90호)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건 물품은 TV 모듈과 Stand Base를 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TV의 작동과는 무관한 TV 사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 주기 위해 제작된 부속품(Accessories)에 해당하므로, 제8529호의 텔레비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3926.90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 TV 모듈 뒷면에 장착되는 직사각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물(약 234mm * 157mm)로 TV 모듈과 Stand Base를 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재질 : 플라스틱 사출물(PC 80% + ABS 20%), Supporter(EGI 1.0T), Screw(MSWR10) - 제조방법 : 원재료 RESIN → RESIN을 고열로 녹임 → 녹인 RESIN을 금형으로 성형 → 플라스틱 사출물에 Supporter와 Screw를 체결하여 완성
이미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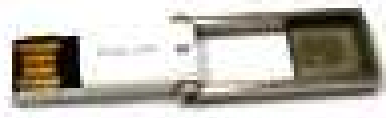
○ 덴마크(제9403.20호)

국가	덴마크
결정세번	9403.20
물품설명	Motorised floor stand to the TV. TV mounted on the floor stand. In the very foot of floor level there is an integral electric motor which means that the stand swivels left and right using the TV's fjernbetjening. it is the floor plate turning. The floor stand is preferably made of metal in particular aluminum.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소프트웨어 USB
- 모 델 명: CY-MIWB
- 물품설명: 전자칠판을 제어하고 교육내용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USB. 이외에도 학생관리, 다중수업지원의 기능을 갖추고 있음. USB KEY 형식으로 제공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529.90	8523.8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부분품(제 8525호부터 제 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 [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전자칠판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수록된 USB로서, 일반적으로 전자칠판과 함께 포장되어 판매됨.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통칙 제3호(나)목의 적용여부를 검토 필요
 - 그러나 동 물품이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이것을 일반적인 비휘발성 기억장치(제8523호)로 보아야 할지, 전자칠판의 부분품(제8529호)로 보아야 할지, 자동자료처리장치의 단위기기(제8471호)로 보아야 할지 문제가 발생
- 자동자료처리기기 단위기기 해당여부
 - 동 물품은 일반적인 자료저장장치가 아닌, 전자칠판 활용시 USB 포트에 필수적으로 삽입되어 지속적으로 자료 등을 처리하고 처리된 정보를 다시 전자칠판으로 송출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임. 이러한 경우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제16부 주 가에 따라 특정한 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함
 - 동 물품은 USB로 알려진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그 기능상 전자칠판에 꼽은 상태로 전자칠판이 기능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작동 형태가 제84류 주 (다)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면,

제84류 주5

다. 아래 라목이나 마목의 것은 제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 1)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 동 물품은 전자칠판에 접속되는 기기로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단위기기인 제8471호에 분류됨

- 태국(원산지증명서)

- 제8523호의 기억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르면, 동 물품에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으며,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된 전자칠판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523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로 분류할 수 없음

- 검토의견: 제8471.80호

- 관련 호의 용어 및 주 규정에 따라 제8471호에 분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1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 주 5 다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즉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ii)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c) 이 류 주 5 라 및 마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정품 Software의 자료처리를 위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사용되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USB 접속포트에 접속되며, 프로그램 실행시 수시로 통신을 수행하여 정품 Software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1(제8471호의 용어, 제84류 주 5) 및 관련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8471.80-0000)에 분류함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8471.80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및 형태 - 2.3(W)×0.3(H) Inch 크기의 하우징에 LED 표시램프 및 USB 포트 접속기가 달려있음 - 총 128byte의 비휘발성 메모리로 구성(알고리즘 이용시 최대 28개의 S/W를 동시에 보호, Cell 단위의 메모리 구조, H/W Key 자체의 고유 알고리즘 및 Serial 번호 내장) - 본 물품의 제작회사에서 구매정보(업체별 고유 Password)를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공급하고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는 자체의 고유 Password를 본 물품에 설정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 구입업체에 소프트웨어와 함께 본 물품을 공급함 ○기능 및 용도 - S/W는 Query Data를 이용 드라이버를 호출한다. - 드라이버는 Query Data를 H/W Key에 전달한다. - H/W Key는 Query Data와 H/W Key 내부의 알고리즘에 의해 Response Code를 생성하여 드라이버에 돌려준다. - 드라이버는 Response Code를 S/W에 전달하며, Response Code가 정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정상일 경우 S/W를 정상적으로 실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 - 본 물품을 PC의 USB 포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실행시 본 물품과 수시로 통신을 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확인함 - 본 물품이 없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닌 불법 복제품으로 인식하여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불가능함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스마트 TV 전용 리모컨
- 모델명: ACC Qwerty Remote
- 물품설명: 스마트 TV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리모콘을 업그레이드 한 것. TV를 보며 인터넷 검색, 메시지 전송 가능. 글자 입력 보조수단으로서 LCD가 달려 있으며, 앞면과 뒷면 모두가 달려있는데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게 인식 센서가 탑재됨. 스마트 TV와는 별매제품.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29.90	8543.7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동 물품은 스마트 TV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인터넷검색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모트 컨트롤러, 자판과 무선송수신 기능, LCD, 무게 인식 센서 등이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임
 - 우리나라는 제8529호, 태국은 제8543호에 분류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동 물품을 스마트 TV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에 분류
 - 동 물품이 스마트 TV의 부분품이라면 제852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나, 부분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가 구분 가능. 또한 동 물품은 스마트 TV의 부속기기일 수 있음
- 부분품 해당여부
 -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분품은 그 용도와 사용목적상 완제품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야 함. 동 물품은 스마트 TV 사용시 편리성을 증대시키기는 하나, TV의 기능상 필수적인 물품은 아니므로 부분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속기기 해당여부
 - 부속기기란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2(가) 및 3(나)과 부주 제3호 및 제4호 참조)

- 주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예: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와 함께 분류
-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함[이들은 복합기계(아래 VI항 참조) 또는 기능단위(아래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
- 동 물품은 스마트 TV의 부속기기로서 TV와 함께 판매되는 경우 TV와 동일한 품목에 분류

○ 따로 제시되는 부속기기

- 그러나, 동 물품이 따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동 물품의 품목번호를 따로 결정해야 함. 이러한 경우, 제84류나 제85류에 동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없으므로 제8543의 기타의 전기기기에 분류될 수 있음
-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

제8479호의 해설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 검토의견: 제8543호

- 동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로서 다른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다른 이유 때문에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제8543호의 '고유의 기능'요건을 충족하므로 제8543호에 분류가 가능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8543.70
물품설명	<p>Remote Comigo (KWR101827/01BU) – from one equipped with infrared light-emitting diode, radio module and other components printed circuit board in a plastic housing (dimensions: 169 x 54 x 17 mm) with QWERTY keypad and other control buttons and battery compartment (Figure see Appendix), – for wireless remote operation of a television receiver using infrared rays and to enter information and control commands via radio waves (2.4 GHz) using the keypad – without basic constituents, – together with the accessory kit (radio receiver module in the form of a USB dongle) in a common Verkaufumschließung. Die remote control determines the character of the whole “Electrical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in Chapter 85,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Remote Control (A compound machine from infrared remote control and wireless keyboard – without basic constituents, in the set with no charakterbe-stimmendem pack)”.</p>
이미지	 <p>The image shows two white Philips Dual remote controls. On the left is a standard remote with a few buttons and a scroll wheel. On the right is a keyboard-style remote with a full QWERTY keypad and other control buttons. Both are shown against a white background.</p>

1. 품명

- 상 품 명: 터치 오버레이
- 모 델 명: Samsung Touch Overlay CY-TE65
- 물품설명: 터치 오버레이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터치스크린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임. 일반 디스플레이(TV 등) 위에 동 물품을 장착시키면 손가락 터치로 해당 기기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37.10	8543.7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터치 오버레이는 디스플레이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를 터치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는 장치임. 터치는 곧 해당 기기를 보다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동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제8537호는 전기제어나 배전용의 보드로서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동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
 - 해설서에 동 물품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으나 제8537호의 해설서에서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가 동 물품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태국(원산지증명서)
 - 태국의 경우 제8543호에 분류하였는 바, 동 호는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전기기기로서 분류. 터치 오버레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호 또는 소호가 부재하므로 제 8543호에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검토의견: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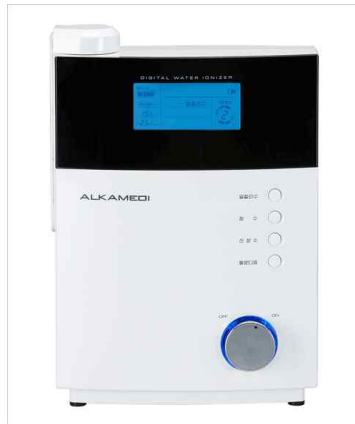
- 터치 오버레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상품으로서 유럽에서는 제 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 인도는 제8529호(카메라·텔레비전 등의 부분품)에 분류하는 등 아직 여러 국가에서 품목분류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동 물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네델란드
결정세번	8471.60
물품설명	<p>An overlay touch screen include the following appearance and technical featur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de of glass - in an aluminum housing - working with infrared light - for LCD screens from 10.4 to 103 inches - a maximum resolution of 16384 x 16384 - includes a USB cable with aansluiting. <p>Het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regular LCD screens to convert to and touch screen by connecting to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이온정수기
- 모 델 명: 이온정수기
- 물품설명: 알칼리이온수생성기로서 먹는 물을 전기분해 등을 하여 pH 8.5초과~10.0까지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여 위장증상(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내 이상발효, 위산과다)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용의 수소이온농도(pH) 9.5의 알칼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543.70	8421.21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3. 품목분류 검토(수출입기업지원센터)

- 본건 물품은 직결 여과식의 정수기로 수백만의 기공이 있는 다공성 물질의 블럭형 카본필터를 이용하여 수돗물에 용해되어 있는 잔류염소나 유기화학물질 등을 흡착·제거하는 기능과 함께 이온수 전환기능을 갖춘 가정형의 정수기 필터임.
- 우리나라
 - 본 물품은 정수된 물을 공급하거나 정수된 물을 전기분해를 통해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전환한 뒤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수돗물의 여과기능과 정수된 물의 이온수 전환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물품의 주된 용도와 기능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주기능은 이온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가정형의 이온정수기’에 해당하는 제 8543.70-2010호에 분류함.
- 태국
 - HS 분류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4단위 호의 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6단위 소호 용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제8421호의 해설서 ‘(A)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부분품이 아닌 액체용 여과기(Filter)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1-1000호의 '가정형의 액체용 여과기'로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 관세율표 HSK상 '가정형의 이온정수기'가 특게되어 있으나 이는 10단위상의 분류이므로 이보다 호의 용어를 우선시하여 해석해야 함

- 다만 어떤 호에도 '이온정수기'를 4단위에서 표현하는 호는 없으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참조번호 NY 187395)

국가	미국
결정세번	8421.21
물품설명	<p>The Omega Ionizing Sticks are plastic cylinders with vent holes on the sides and one hole on each capped end so that the magnesium and ceramic in the inner stainless steel wire mesh container can react with the water. They come in two sizes, the small is approximately 3 inches long while the large is a little over 4 inches long. Both are approximately 3/4" in diameter.</p> <p>The Omega Water Chambers contain the same magnesium and ceramic particles as the ionizing sticks. The difference is that the chambers are designed to create whirlpool movement within the chamber when water runs through, thus accelerating the ionizing reaction. The chamber may be installed between a faucet and water pipe and a washing machine and water pipe. The samples submitted have a vinyl chloride (hard plastic) body. Future models may have stainless steel bodies. These unit are approximately 10 inches long and a little under 4" in diameter. They have built-in fittings to attach to the water supply.</p> <p>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Omega Water Ionizing Sticks and Water Ionizing Chambers will be 8421.21.0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which provides fo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for filtering or purifying water. The duty rate will be free.</p>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발열조끼
- 모 델 명: 발열조끼
- 물품설명: 합성섬유제의 직물 내부에 전열용 탄소 저항체등이 회로와 같이 연결된 발열패드, 편직물로 만든 조끼상의와 마이크로 USB 포트 전원이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소매용 포장물품. 조끼에 전원을 공급하여 전기가열식 상의형태로 착용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8545.90	6102.3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록(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합성섬유로 만든 것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4-06-001)

- 관세율표 통칙 제3(나)에 따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발열패드라 볼 수 있음
-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 동 호 해설서에는 “...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은 그 기본성분 및 필요한 결합제 이외의 금속분과 같은 타물질도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을 압출성형 또는 주형 및 열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설명
- 따라서 전열용 저항체가 내장된 발열패드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발열패드는 탄소의 전기저항에 의하여 열이 발생하는 탄소제의 전열저항체이므로 제8545.90호에 분류함

○ 독일(참조번호 DEF/6920/07-1)

- 동 물품은 가슴과 등 부분에 전기 저항체가 삽입된 물품으로서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와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물품들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되어 있음
- 동 물품은 여성용 재킷으로서 제85류 주1의 제외규정 가 ‘전기가열식 모포·베드패드(bed pad)·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신발류·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과 제61류의 주 1 및 주 9 에 따라서 여성용 의류로 판단되므로 제6102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제85류 제외규정에 따라 전기가열식 의류로 보아 다른 호에 분류해야 하나, 세트형태로 제시되는 경우 통칙 3(나)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따라서, 동 물품이 제시되는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6110
물품설명	<p>Vest with electric blankets for women, size M, see attached photo – thick in area mainly (essential character) of 2.5 mm, monochrome, double napped knitted fabrics (fleece) made according to the request 100% polyester (synthetic fiber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 placed cutouts at the shoulders, thick collar and the armholes of 0.1 mm, plain woven textile materials, - fed - reaching beyond the step (back length: 74 cm) - with stand-up collar, - the front one with a continuous opening (therefore no blouson position 6102 and no jacket of heading 6104 and others), sleeveless - - with an inserted chest pocket with zipper and two used on the collar edge with a short overlap right over left (Women's Clothing), up to the collar points reaching zip pockets below the waist (including therefore not a small extension piece to the position 6106) - narrows at the bottom by an elastic drawstring, - with embedded, electric heating resistors (thin according to my application, highly flexible, biothermic carbon fibers) in the chest and in the back, with connection cables for the control electronics and a rechargeable battery, (according to my application but are imported separately, the control electronics, the battery and charger are not included in the report) a connecting cable ends in a breast pocket, a connection cable terminates in an inner pocket.
이미지	

제 4 장

수송기기 및 정밀기기

1. 품명

- 상 품 명: 폰툰(PONTOON)
- 모 델 명: 폰툰
- 물품설명: 폰툰이란 네모지고 밑이 평평하게 만들어진 배로서 수상에서 물품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작은 배나 바지. 보트나, 래프트, 바지, 독, 공기보트, 호버크라프트, 해상비행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폰툰 위에 집을 지으면 수상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
HS	8907.90	3926.90
기본세율	5%	-
호의 용어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제8907호의 용어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로 규정하고 있고,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아니한 특정 부(浮)구조물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 여기에는 가교의 지지에 사용되는 중공통형의 부선거, 부잔교, 각종 부교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폰툰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품임

○ 태국(원산지증명서)

- 동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기타의 제품으로서 호의 용어에 따라 제3926.90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907.90호

- 폰툰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 제3926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동 물품의 경우 기능상 물에 떠 있으면서 물품의 운반이나, 건설,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주 기능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보다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의 표현이 더 구체적임. 이에 통칙 제3호

의 가목에 따라 제8907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프랑스
결정세번	8907.90
물품설명	FLOATING PONTOON WHICH THE STRUCTURE IS ALUMINUM DECK THE WOODEN FLOATS rotomoulés FILLED POLYETHYLENE POLYSTYRENE AND BOLTS STAINLESS. THE FLOATS ARE USED ON THE RIVERS IN THE FOUNDATIONS OF RECREATION AND OTHER.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LED 패널
- 모 델 명: Samsung LTI460HN01
- 물품설명: TV제조에 사용되는 LED패널. 약 46인치의 크기에 풀HD 해상도를 가지며 밝기 700cd/m², 명암비 3000:1, 전압12.0볼트로 나타남.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TFT-LCD패널, 드라이버 서킷, 백라이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물품은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가정용 TV나 비디오 디스플레이, DID(디지털 정도 디스플레이)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9013.80	8529.90
기본세율	8%	7.5~10%
호의 용어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기타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동 물품은 액정디바이스로서 추가적인 부분품의 장착 후 최종용도가 결정되는 물품임. 우리나라에서는 제9013호에 분류하였는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되며, 액정디바이스란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존재.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
- 즉, 액정디바이스라도 특정 물품(TV, 광고판, 기계의 부착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으로 분류

○ 인도(원산지증명서)

- 반면 인도에서는 제8529호는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특히 제8528호(텔레비전)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동 호에 분류한 것으로 판단

○ 검토의견: 제9013.80호

- LED 패널은 TV용 패널에 전용되도록 생산된 것은 아니며 추가가공에 따라 광고판, 모니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액정


디바이스이므로, 제9013호의 액정디바이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4. 유사물품 분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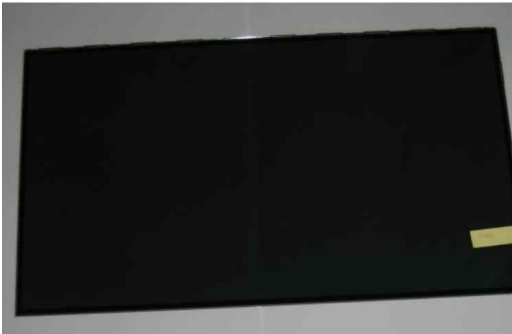
- 우리나라(제9013.80호)
- 관세율표 제9013호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됨을 규정하고

- 동해설서에서 액정디바이스는 “두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제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
- 본건물품은 12.1인치 LCD패널 그 자체로, TFT-LCD Panel, driver IC, Control circuit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일반 데스크탑 모니터의 구성요소인 A/D변환기는 없는 상태로 제시된 물품임
- 동 물품은 SVGA급(800×600)의 해상도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으며, 그 사용되는 응용분야가 컴퓨터·사무용기기·공장자동화기기·측정기기·의료용기기용 모니터 등 다양하여, 제시된 상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인 액정모니터로 활용할 수 없고, 추가적으로 A/D 신호변환기 등을 추가로 장착하여야만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활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컴퓨터용의 모니터(HSK8528.51-1000호)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 관세율표 제9013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액정디바이스’ (HSK 9013.80-1090호)로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9013.80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개요 : 12.1인치 화면 크기의 컬러 TFT LCD 모듈 ○ 물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 : 280(W)*210(H)*12(D)mm, 중량 : 720g - 금속제 샤시에 LCD 패널, 드라이버 IC, 제어용 회로(control circuit), 백라이트(CCFL)를 내장한 형태 ○ 물품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 크기 : 246.0(수평)*184.5(수직)mm (12.1인치) - 최대화소수 : 800 * 600 (SVGA) - 픽셀 간격(pixel pitch) : 0.3075 * 0.3075 - 밝기(휘도, cd/m2) : 350 ○ 기능 및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된 LCD 패널의 광투과도를 조절하여 화상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으며, - 컴퓨터·사무용기기·공장자동화기기·측정기기·의료용기기 등의 화상 표시 목적으로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심사 신청인의 수입이후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합성부, A/D변환장치, 화면구성부로 구성된 영상처리 보드를 추가하여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의 영상 표시를 위해 사용
<p style="text-align: center;">이미지</p>	

○ 폴란드(제9013.80호)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p>	<p style="text-align: center;">폴란드</p>
<p style="text-align: center;">결정세번</p>	<p style="text-align: center;">9013.80</p>
<p style="text-align: center;">물품설명</p>	<p>Liquid crystal device technology-based thin-film transistor (TFT), comprising a layer of liquid crystal sandwiched between two glass plates. The panel contains no electronic devices.</p> <p>Its mission is to transform the image signal received from the controller (Driver IC) on the actual image. It is a device used for the production of LCD modules, which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monitors and television sets.</p> <p>Key features: diagonal sizes: 26, 32, 37, 42, 46 and 52 inch, Resolution: WXGA 1366 x 768, 1920 x 1080 FHD response time of 4 ms or 6 ms, contrast of 1000:1 to 2000:1, the angle of 170°.</p>
<p style="text-align: center;">이미지</p>	

1. 품명

- 상 품 명: 개인용 마사지기(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
- 모 델 명: NUGA BEST NM-5000
- 물품설명: 지압요법, 온열요법, 저주파요법 및 로링 마사지요법 등을 혼합한 개인용 온열저주파 조합자극기로 척추/골반, 견갑골 교정, 신경이완, 혈액순환 개선, 혈전용해 및 면역력 증강과 세포 재생효과가 있다고 함
- 물품사진



○ 구성부분

- ① 외부투광기 : 지압을 위한 것으로 신경자극, 근육이완, 피로회복에 도움 (본체와 분리 가능)
- ② 누가 클리닉 : 신체에 밀착되도록 벨트로 압착하여 헬스파(일종의 저주파)에 의한 근육운동시스템(본체와 분리 가능)
- ③ 다기능 통합리모콘(본체와 분리 가능)

- ④ 커넥터 : 투광기, 누가클리닉 및 리모콘 등을 연결하여 사용
- ⑤ 내부투광기 : 척추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며 척추 및 주변의 경락과 근육전체에 지압, 마사지, 뜸을 떠줌
- ⑥ 높이조절 설계 : 높이를 10도, 20도, 30도로 조절
- ⑦ 토르마늄세라믹 특수발열 보조매트 : 온열 및 원적외선 방출
- ⑧ 온도조절 명판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불가리아
HS	9018.90	9019.10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420)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V)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의료기기도 분류된다. 다만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는 제외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전자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신경통·반신불수·정맥염·내분비성빈혈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이 기기 중에는 아래 (7)항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

(4) 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예: 류머티즘·신경통·치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예: 판류·관 등)을 이용한다.

- 동 물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 열에너지 및 일종의 저주파로 변환하여 신경자극, 근육이완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용 기기로서 해설서상 열거하고 있는 ‘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제9018.90 호에 분류함

○ 불가리아(참조번호 BGBG/2009/000135)

- 관세율표 제9019호에서는“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
- 동 호 해설서에는 ‘마사지용 기기’를 설명하면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거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 또는 치상판 등).”을 설명

- 이에 따라, 동 물품을 신체 각 부분을 마찰 및 진동으로 안마하는 기기로 보아 제9019호의 마사지용기기로 분류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의 분류쟁점은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의료용 기기(제9018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단순 마사지용 기기(제9019호)인지에 대한 것임
- 물품의 주요 용도, 의료용 기기로서의 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품목분류 결정할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기식의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물을 넣어 전기히터를 이용하여 물을 일정온도(섭씨35도~45도 유지)를 유지하는 전기식의 물가열 기능과 자동모터를 이용하여 돌기롤러를 돌려서 발바닥을 지압하여 마사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기계로서 주기능을 검토해야 함
- 족욕을 할 때 물을 가열하여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기능은 신체에 온열효과를 주어 발바닥 지압마사지를 할 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기능이며, 마사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기능(폭포수 분출) 등 전반적인 기능 및 용도를 살펴볼 때 발의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돕는 마사지 기계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19호의 용어에 “마사지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 “..발·다리... 등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스폰지·평판 또는 치상판 등). 고 해설하면서
 - “물의 흐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압력에 의한 물과 공기의 혼합을 이용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마하는 수(水)안마기를 포함한다”고 부연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체의 일부인 발바닥을 지압롤러로 마찰 및 진동 등의 동작을 하여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돕는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 9019.10-200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9019.10
물품설명	<p>전기식의 플라스틱제의 욕조에 물을 넣어 일정온도에서 하는 족욕과 발바닥을 올려 놓은 부위에 돌기롤러가 내장되어 발바닥 지압마사지를 동시에 수행하여 발의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을 돕는 자동롤러 족욕기(규격 : 440×395×235mm,중량 3.8kg)</p> <p>- 제어 패널 조작장치 : 전원, 족탕 물 온도 표시, 온도설정, 마사지, 시간 (타이머)기능</p> <p>- 기능 및 작동원리 :</p> <p>① 자동모터가 장착되어 버튼(마사지버튼) 작동시 돌기형 지압롤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발바닥 지압 기능</p> <p>② 전기히터내장으로 물의 온도(섭씨35도~45도 조절)을 급속 가열하여 온열 기능</p> <p>③ 2개의 기포구멍(분출구)에서 폭포수 발생으로 물이 자동으로 순환하여 마사지 효과에 도움을 줌</p>

1. 품명

- 상 품 명: 혈당측정기
- 모 델 명: Easy Check
- 물품설명: 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 가방 등이 종이 박스로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인체로부터 채취한 소량의 혈액을 이용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 세트임
- 물품사진(유사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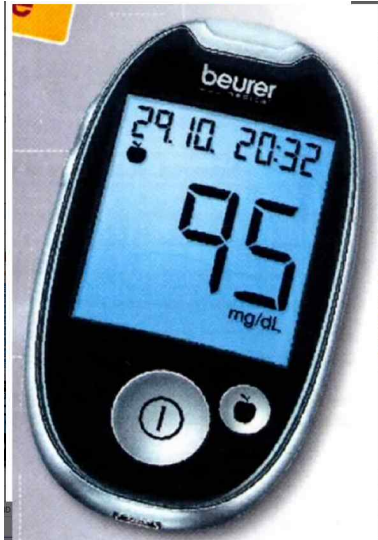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9027.80	9018.90
기본세율	8%	7.5%
호의 용어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그 밖의 기기

3. 품목분류 검토(해당업체 문의)

- 동 물품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 세트로서 제 9018호의 해설에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진단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일반적으로 제902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
 - 이는 검사 및 진단을 하는 장소의 명칭을 반드시 ‘실험실’로 한정하지 않고,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 기기는 주로 성분을 측정·검사하는 것이므로 제9018호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
 - 또한 동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해당 세트물품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없으며, 혈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제9027.80호
 - 따라서 동 물품은 혈당측정기, 채혈기, 혈당측정전극, 휴대용 가방 등이 종이박스로 이루어진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27.80호에 분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독일
결정세번	9027.80
물품설명	<p>The glucose meter GL 44, No. 463.15 made in the form of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consisting essentially of the following ingredients: 1 A portable device with oval housing, 52 x 95 x 16 mm, 44 g (essential character in terms of scale and use), with electronic measuring and evaluation, LC display for monitoring blood glucose in mg / dl (with 4 buttons etc. on / off, mark, reset), PC socket, an illuminated slot for the insertion of the test strip, and two in the battery compartment loaded button cells (3V CR2032). To determine blood glucose levels an applied drop of blood on a test strip is inserted into the appropriate slot of the device measured prepare. Second Third test strip 10 in a tin 1 lancing device with AST cap for blood 4th 10 needle lancets for lancing the ingredients together with a user manual and a zipper pouch, which is to receive the specially prepared ingredients and suitable for permanent use, packed in a box. The exterior shape see Figure in Appendix. The product is classified as "other than in the subheadings (CN) 9027 1010-9027 8013 called electronic device for chemical analysis, no cargo control system" classified.</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기체(산소·수소) 분석기기
- 모 델 명: OH-900
- 물품설명: 고체상태(Solid-state)의 무기재료를 절단하여 흑연도가니에 넣고 전극 충전로에 투입하여 3,000℃까지 가열 용융하여, 발생된 연소가스로부터 적외선 검출기와 열전도 검출기를 이용하여 산소와 수소의 함량을 분석하는 기기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프랑스
HS	9027.80	9027.1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4-08-003)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고
-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체상태가 아닌 고체상태의 시료를 연소시켜 적외선 흡수방식 및 열전도 방식의 원리에 의해 분석하는 장비로서 그 밖의 기기인 제9027.8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프랑스(참조번호 FR-PRO-2009-001707)

- 동 물품은 고체상태의 무기재료를 전극 충동로에 투입하여 가열 용융하고 이때 발생된 연소가스로부터 적외선 검출기와 열전도 검출기를 이용하여 산소와 수소의 함유량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임
- 즉 산수와 수소 등 발생된 기체를 대상으로 함유량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이므로 제9027.10호의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고체상태의 재료에서 발생한 기체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분석대상이 '고체'인지 또는 '기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분류쟁점임
- 그러나 '고체'또는 '기체'의 상태는 온도나 기압 등 여러 가지 환경요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다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므로 보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본 물품은 고무·플라스틱·광물·세라믹 및 각종 혼합물 등 광범위한 재료(주로 고체)를 대상으로 시료의 정량적인 물질의 조성을 분석하는 장비로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물질이 혼합물내에서 온도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질량변화를 보일때 이를 측정하여 시료의 가열시의 분해성, 반응성 및 특정성분의 함량 등을 분석함.
- 관세율표 제 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타·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이 분류되며, 제9027호 해설서에 의하면 “(6) 재료의 질량 분석기 및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의 구성분석용기기”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9027.80-1000호에는 기타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기가 분류되는 바, 물리 또는 화학분석이란 관련자료에 의거 살펴볼 때 물리 또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물질의 성분을 동정(同定)하는 정성분석(定性分析)과 시료에 포함된 목적성분의 함유량을 결정하거나 구성성분의 양적인 비율을 결정하는 정량분석, 미지물질의 화학구조를 분석하는 구조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 본품은 “기타의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서 HSK 9027.80-1000호에 분류한다.것이 타당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9027.80
물품설명	고무·플라스틱·광물·세라믹 및 각종 혼합물 등 광범위한 재료(주로 고체)를 대상으로 시료의 정량적인 물질의 조성을 분석하는 장비로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구성물질이 혼합물내에서 온도 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질량변화를 보일때 이를 측정하는 장비 본 기기는 상온(room temperature)에서부터 섭씨 1,600℃까지의 범위 안에서 시료의 질량변화를 μg 단위로 표시가능하며, 측정결과는 전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에 연결하여 열분해 곡선 형태로 표시함.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XY 수동 스테이지
- 모 델 명: XY 수동 스테이지
- 물품설명: 손잡이, 클램프 레버, 크로스롤러 가이드, 상·하면 스테이지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스테이지 하면을 측정 및 검사장비 등에 장착 후 손잡이를 수동(육각렌치 등)으로 돌려 상면 스테이지의 검사 물품(카메라·렌즈 등)을 고정밀도(μm 단위)로 이동시키며 불량 여부 등을 검사하는데 활용하는 기기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9033.00	8479.89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목에 따르면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참조번호 9677)

-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 다목에서는 “기타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3호의 해설에는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기기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측정 및 검사장비 등에 장착되어 카메라 및 렌즈 등의 물품을 고정 후 위치를 고정밀도(μm 단위)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는 스테이지로서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 기기에 사용하는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3.00-0000호”에 분류함.
- 즉, XY 수동 스테이지는 제90류의 여러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

○ 독일(DE18451/13-1)

- 제90류 주2호 나목에 따르면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물품은 XY 축을 이동하여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나, 특히 이미지 프로세서, 마이크로카피, 바이오테크놀로지, 웨이퍼 포지셔닝 등의 기기(제8479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제90류 주2 나목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의 요건에 따라 제8479호에 분류가능한지 여부임
 - XY 수동 스테이지는 종류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없음

제 5 장
의류 및 생활용품

1. 품명

- 상 품 명: 빈백(Bean Bag) 커버
- 모 델 명: 빈백(Bean Bag) 커버
- 물품설명: 밑면이 원형이며 전체적으로 원뿔 형상의 커버. 끝부분에 고리가 있으며 밑부분에 슬라이드파스너(지퍼)로 잠글 수 있는 것. 충전물을 삽입하면 의자 형태가 됨.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6304.93	9401.90
기본세율	13%	Free
호의 용어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소호의 용어	기타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결정 14-10-006)

- 동 물품은 충전물을 보호하고 인체에 닿는 촉감을 좋게 하는 용도로 제작된 자루모양의 직물제 쿠션커버에 해당하므로 제6304.93호에 분류
- 제6304호의 용어에 ‘그 밖의 실내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방석커버, 의자덮개 등을 예시함

○ 미국(참조번호 N117317)

- 미국에서는 동 물품이 실내에서 사용되도록 고안되었고 속이 빈 상태로 수입되지만 빈(bean)을 채워넣음으로서 가구를 만들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
- 제9401호의 용어에서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제9401.90호에 분류된다고 설명

○ 검토의견: 제6304호(충전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동 물품은 충전물의 유무에 따라 가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제

9401호)에 분류되거나 기타의 실내용품(제6304호)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충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6304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영국
결정세번	6304.92
물품설명	A BEAN BAG COVER MADE FROM 100 PER CENT WOVEN COTTON. WITH A OPENING FOR FILLING THE BEAN BAG WHICH HAS A ZIP CLOSURE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미니선풍기
- 모 델 명: 미니선풍기
- 물품설명: 버튼을 누르면 날개가 회전하면서 LED 빛이 발광. 한손으로 작동시키는 소형 팬으로서 AAA 건전지 3개를 이용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네델란드
HS	9503.00	8414.59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	항공기용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468)
 - HS 관세율표 해설에 의하면 제95류 총설에 오락용으로 설계 및 제작된 각종의 완구가 분류되며, 제9503호에는 한정된 실용성의 기능을 갖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건전지에 의해 날개를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으나 일반적인 날개와 같이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축하거나 주위의 공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거나 정밀·견고하게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모터가 결합된 완구인 제9503.00호에 분류함
- 네델란드(참조번호 NLRTD-2006-001259)
 - 플라스틱 하우징에 결합되어 한손으로 사용하는 미니 팬으로서, 전기불빛이 나오고 두 개의 AAA배터리로 작동. 세 개의 팬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D는 윗부분에 장착.
 -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소형 전동기를 갖춘 팬이 분류되는 제8414.59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9503호
 - WCO 품목분류 결정사례⁷⁰⁾에 따르면 장난감 선풍기(Toy fan)를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90호에 분류함

70) 2004년 10월 제34세션

Product description

- Toy Fan with a container extension holding candy. One version ("Mini Fan With Candy") consists of a plastic toy fan (70 mm in diameter) comprising part of the lid of a transparent rigid cylindrical plastic container (190 mm long and 7 mm in diameter) containing tiny drops of candy. Another version ("Top Fan With Candy") consists of three toy plastic fans (70 mm in diameter) mounted one above the other on a plastic framework which is 210 mm in length.
- The framework comprises part of the lid of a transparent rigid cylindrical plastic container (145 mm long and 10 mm in diameter), which contains candy drops. The lid itself, without the framework, which is moulded to it, is 25 mm long. In both versions, the containers (minus lids) could conceivably be regarded as fan shafts or extensions of the fans.

Classification

- 9503.90(Toy fan), 1704.90(candy)

Classification rationale

- GIR 1 and 6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프랑스
결정세번	9503.00
물품설명	TOY MOTOR IS IN THE FORM OF A MINI FAN LIGHT OF PLASTIC WITH 3 SMALL AND FANS OF ILLUMINATING DEVICE LED. IT WORKS WITH 3 BATTERIES INCLUDED LR3.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페이퍼 타겟
- 모 델 명: 페이퍼 타겟
- 물품설명: 세계사격연맹(ISSF)에서 공인한 공인표적지로 사격선수들이 공인대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보드지로 절단 앞면 인쇄된 페이퍼 타겟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9506.91	9305.29 (2007) 9305.20 (2012)
기본세율	8%	Free~3.5%
호의 용어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930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품목분류 검토

동 물품은 잉크가 프린트된 종이로서 뒤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사격용 타켓임. 뒷면에 뗄 수 있도록 구성된 종이로 되어 있으며 적당한 장소에 붙이도록 만들어짐.

○ 우리나라(참조번호 1030)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예시로서, “(11) 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4)기타의 물품 및 육구 예: ...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를 분류하도록 설명
- 따라서 동 물품은 사격경기용의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6.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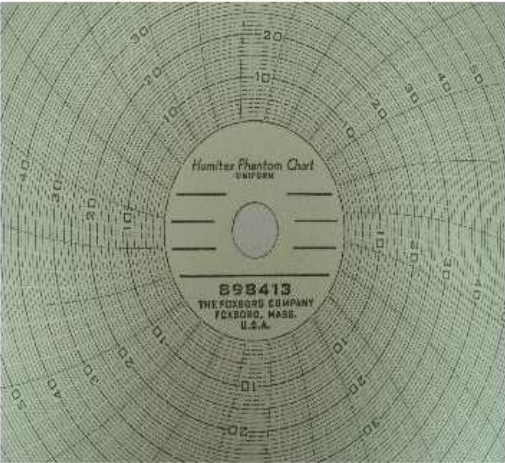
○ 미국(참조번호 N188800)

- 동 물품은 제9301호부터 제9304호의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제9305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9506.91호

- 페이지 타켓은 무기의 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폴란드
결정세번	4823.40
물품설명	Paper discs printed with scale for recording equipment environmental parameters. On the discs are prepared pie charts the course of the measured values. Product imported from the USA.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아기용 기저귀
- 모델명: HUGGIES MAGICPANTS 6B 28/6
- 물품설명: 아기용 기저귀. 흡수성 물질인 펄프를 주성분으로 하고 고분자 흡수재를 혼합하여 만든 부직포와 결합되어 있고 허리 부분에는 접착식 밴드가 부착된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9619.00	4818.40
기본세율	8~13%	-
호의 용어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 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소호 없음	(삭제)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우리나라(수출신고필증)

- 유아용 기저귀는 HS 2012 개정시 신규로 추가된 호로서 제9619호에 분류.
- 제9619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월(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함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은 제지용 펄프나 종이, 셀룰로오스 워딩이나 웹 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등이 있음
- 유아용 기저귀는 HS 2012 개정 전까지 제4818호에 분류. 제4818호에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종이, 셀룰로오스 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 등이 분류됨. 우리나라 역시 2012 개정 전까지 유아용 기저귀를 제4818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제9619호가 신설되면서 제48류의 주2 너목에 제외규정으로

서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기저귀는 제 4818호에서 제외됨

○ 태국(원산지증명서)

- HS 2007 제4818호의 용어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 냅킨·탐폰·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 또는 병원용품·의류 및 의류부속품(제지용 펄프·지제·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다)’ 및 제 4818.40호의 용어 ‘위생 타올과 탐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에 따라 제4818.40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9619.00호

- 태국에서 유아용 기저귀를 제4818.40호에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제 4818.40호는 HS 2012 개정시 삭제된 소호임
- 따라서 태국의 경우 HS 2012 개정사항의 반영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단순 품목분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슬로바키아
결정세번	9619.00
물품설명	Disposable diaper composed of different materials. The outer layer is a nonwoven fabric interwoven elastic threads, an absorbent core of cellulose wadding scattered superabsorbent is located between the inner, draining layer of nonwoven with the system FeelDry and a thin plastic film.The diaper pants are in white color. Due to elastic fibers in the web portion and the area encircling the thighs are adapted to the human body and well držia.Dodávajú is packed in a plastic case with color picture of the size, absorbency and method of use thereof. They are designed for men and women as health, hygiene incontinence
이미지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여성용 위생용품
- 모 델 명: WHISPER ULTRA REGULAR FLOWNONWING
- 물품설명: 여성용 위생용품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9619.00	4818.40
기본세율	8~13%	-
호의 용어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 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없음	(삭제)

3. 품목분류 검토(수출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 상이)

- 여성용 위생용품은 HS 2012 개정시 신규로 추가된 호로서 제9619호에 분류.
- 제9619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재질을 불문하고 위생 타월(패드) 및 탐폰·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흡수력이 있는 위생 수유 패드·실금(失禁)이 있는 성인을 위한 냅킨(기저귀) 및 팬티 라이너를 포함한다]을 분류함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은 제지용 펄프나 종이, 셀룰로오스 워딩이나 웹 또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등이 있음

○ 검토의견: 제9619.00호

- 여성용 위생용품은 HS 2012 개정 전까지 제4818호에 분류. 제4818호에는 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종이, 셀룰로오스 워딩,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 등이 분류됨. 우리나라 역시 2012 개정 전까지 유아용 기저귀를 제4818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제9619호가 신설되면서 제48류의 주2 너목에 제외규정으로

서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용 위생용품은 제4818호에서 제외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국가	대한민국
결정세번	9619.00
물품설명	흡수성 펄프워딩을 주성분으로 한 시트에 일면에는 부직포, 이면에는 수지제 방수막으로 마감 처리한 여성용 생리대를 3등분으로 접어 개별 포장한 것(15매/백)
이미지	없음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이 펄프 주성분의 위당'인 여성용 생리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19.00-1090호에 분류함

제 3 편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수집 · 분석

우리나라 관세법 별표 1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 협약)’을 수용하고 있으며, HS 협약은 4~6년을 주기로 하여 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회원국은 2012년에 개정된 제5차 HS 품목분류 체계를 국내법으로 수용, 통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HS 협약의 통일적 운용은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수출입통관애로 가능성을 배제하여 신속한 수출입통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각국은 물품 관점 및 해석방법의 차이, 기존의 관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간 품목분류에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는 물품을 선정하고, 상이한 품목분류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품목분류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제2편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수집 · 분석에 제시된 총 50개의 상이사례는 다음의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첫 번째,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간 품목분류가 상이한 물품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며, 원칙적으로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간의 품목분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약상대국 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 이유로 수출신고필증과 다른 품목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고 있다. 동 사안에 착안하여 동일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간 품목분류에 차이가 있는 수출건을 선정, 품목분류 상이사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FTA통관애로와 관련하여 관세청 및 세관에 품목분류 상이사례에 대해서 질의한 수출입자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세관에 설치된 FTA콜센터로 전화문의한 민원자와, 각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 서류로 문의한 민원자를 모두 포함한다. 민원자들로부터 수집한 사례는 대부분 구두상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일부 서류로 제출한 사례가 존재한다.

제2차 최종보고 품목분류 상이사례(50건)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차 납품된 50건의 상이사례까지 총 100개의 품목분류 상이사례를 수집 · 분석하였다.

HS 품목분류 상이사례 리스트 (총 50건)

연번	물품명	조사출처	품목번호	연번	물품명	조사출처	품목번호
1	가공유	수출업체민원	0402.99	26	다이아몬드 원형톱	FTA콜센터	8202.39
2	요구르트	수출업체민원	0403.10	27	기어 커터	만족도조사	8207.70
3	코코피트	수출업체민원	1404.90	28	다이아몬드 공구	수출CO상이	8209.00
4	특수분유	수출업체민원	1901.10	29	인젝터	수출CO상이	8409.91
5	커피음료	수출업체민원	2101.12	30	유압파워팩	수출CO상이	8412.29
6	콜라겐드링크	수출CO상이	2106.90	31	플런저	FTA콜센터	8413.91
7	염산 라니티딘	FTA콜센터	2932.19	32	고무 댐퍼	수출CO상이	8415.90
8	폴리쿼터늄-10	FTA콜센터	3402.12	33	탄화로	수출CO상이	8417.80
9	조제접착제	FTA콜센터	3506.91	34	초크 코일	수출CO상이	8418.99
10	벌레 끈끈이	수출CO상이	3506.99	35	축매탈취제	수출CO상이	8418.99
11	카본코어드와이어	수출CO상이	3824.90	36	필터 엘리먼트	FTA콜센터	8421.99
12	액상 아크릴	FTA콜센터	3906.10	37	제지용 정선장치	수출CO상이	8433.99
13	고분자 응집제	수출CO상이	3906.90	38	스태킹 키트	FTA콜센터	8450.90
14	감수제	수출CO상이	3907.20	39	라미네이팅 기계	수출CO상이	8479.89
15	면 접착테이프	FTA콜센터	3919.10	40	스팀세척기	수출CO상이	8479.89
16	멤브레인 시트	FTA콜센터	3921.19	41	도포기 부분품	FTA콜센터	8479.90
17	가니시 패스너	만족도조사	3926.90	42	타이어 몰드	FTA콜센터	8480.79
18	피펫	수출CO상이	3926.90	43	벨브포지셔너	만족도조사	8481.20
19	전사지	수출CO상이	4809.90	44	베어링 레이스	만족도조사	8482.99
20	산업용종이필터	수출CO상이	4811.59	45	RTC 칩	FTA콜센터	8548.90
21	폴리우레탄 직물	수출CO상이	5903.20	46	버쿰로리	수출CO상이	8705.90
22	리코팅 버퍼	수출CO상이	6805.30	47	크로스멤버	FTA콜센터	8708.99
23	세탁기용 유리	수출CO상이	7007.29	48	절대압력센서	만족도조사	9025.80
24	스틸피팅	만족도조사	7307.99	49	워터센서	수출CO상이	9026.10
25	샌드위치 패널	수출CO상이	7308.90	50	카시트 유모차	수출CO상이	9401.80

1

가공유

1. 품명

○ 상 품 명: 가공유

○ 물품설명

- 우유(약 30%)를 주성분으로 하여 맛을 내는 과즙(딸기농축과즙 등 약 1%)과 정제수, 액상과당, 합성착향료 등을 첨가한 음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국
HS	0402.99	2202.90
기본세율	40%	100%
호의 용어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유는 특히 정상적인 상태로 용이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분(전중량의 5% 이하)이 함유된 것도 있다.’고 하여,
- 밀크 외에 소량의 감미료가 추가될 수 있음을 설명. 이에 따라 우유를 기제로 하여 여러 가지 감미료를 첨가한 동 물품을 제0402호에 분류함

○ 중국

- 우유는 그 함유량에 따라 다양한 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우유의 함유량을 검토해야 하며, 동 물품과 같이 소량(30%이하) 함유한 것은 우유라기보다 조제음료에 가까움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0402호의 해설에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응고·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 (b) 코코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우유를 기제로 하여 맛과 향을 내는 다양한 물질을 첨가한 조제음료로서 제2202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2202.90호

- 밀크의 한 종류인 우유는 제4류에 분류하며, 여기에 다양한 첨가제를 넣은 것은 조제음료로 보아 제22류에 분류하는 바,

- 동 물품과 같이 우유가 상대적으로 미량이고, 기타의 첨가제가 함유된 것은 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

- 본품은 우유 주성분에 설탕 및 딸기퓨레, 쌀가루, 향 등을 첨가한 담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0402.99-900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0402.99호
물품설명	우유 89.5% 주성분에 설탕 7.3%, 딸기퓨레 2.5%, 쌀가루 2.1%, 향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2

요구르트

1. 품명

- 상 품 명: 요구르트
- 물품설명³⁾

- 요구르트는 몸에 좋은 유산균을 다량 함유한 식품으로서 대표적인 건강식품임. 요구르트는 무지유고형분⁴⁾ 비중과 유산균 수 또는 효모수에 따라 액상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등으로 구분함.
- 우리나라에서는 액상발효유와 농후발효유가 대표적임. 이들은 축산물 성분규격에 따라 최소함유 유산균 수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음.

항목 \ 유형	액상발효유	농후발효유
무지유고형분(%)	3.0 이상	8.0 이상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1ml당 10,000,000이상	1ml당 100,000,000이상 (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 물품사진



3) 컨슈머리서치, ‘떠먹는 요구르트와 마시는 요구르트, 유산균 더 많은 제품은?’ 2013. 11. 12.
 4) 우유는 약 88%의 수분과 12%의 전고형분(全固形粉)으로 구성된다. 전고형분은 다시 무지유고형분과 유지방으로 구성된다.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국
HS	0403.10	2202.90
기본세율	36%	100%
호의 용어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요구르트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특히 제0403.10호에는 ‘요구르트(Yogurt)’를 특제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향미료·과실(과육 및 잼 포함)·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단순한 발효유 외에도 다양한 첨가물을 함유한 물품도 제0403호에 분류할 수 있음

○ 중국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1)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천연 또는 인조), (2) 레모네이드·오렌지수·콜라 등과 같은 음료 : 보통 음료수(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과실주스·과실에센스 또는 합성엑스로 향미를 가하고, 이것에 구연산·주석산을 가한 때도 있다. 이같은 음료수는 때로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으며 보통 병 또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제시된다.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

- 액상 요구르트에는 발효유 외 기타의 당과 착향물질, 색소 등 다양한 물질이 함유되는 음료로서 제2202호에 분류

○ 검토의견: 보류

-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따라 액상 요구르트 또는 농후요구르트는 제0403.10호에 분류되어야 하나, 요구르트에 필요 이상의 많은 수분 또는 당이 포함되는 경우 제2202호의 음요로 분류될 수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원재료명 및 함유비율을 분석하여 제0403호의 요구르트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액상의 음료수로 보아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분석47260-1374)

- 관세율표 제0403호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의거 액상 요구르트가 분류되는 HSK 0403.10-1000 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0403.10호
물품설명	요구르트에 당, 구연산, 향을 첨가한 미황색 점조액상

3

코코피트(cocopeat)

1. 품명

○ 상 품 명: 코코피트

○ 물품설명

- 코코피트(cocopeat; coconut husk powder)란 섬유를 뽑아낸 코코넛 껍질의 부스러기를 건조한 암갈색 파우더로서 주로 상토 원료로 사용됨. 최근 원예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며 경량성, 보습력, 보비력 등이 우수한 유기물로서 밭에 뿌려 퇴비로 사용함. 코코넛이 잘 자라는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이 주요 원산지임

- 국제운송시에는 압축을 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시에는 물을 뿌리면서 중장비 등을 사용하여 풀어주어야 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1404.90	5305.00
기본세율	3~5%	10%
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 산물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크(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동 물품은 다른 호에서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제1404호에 분류
- 제1404호 해설서에 따르면 ‘(5) 상아야자 : 도움팜 “넛”·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코코넛을 가루형태로 만든 코코피트는 제1404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 인도

- 제5305호의 용어에 따르면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생략)’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넛의 섬유재질인 코코피트는 제5305호에 분류

- 또한 제1404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충전물로서 사용되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과 타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는 제외된다. 예: 목모(wood wool)(제4405호)·코르크울(제4501호)·코코넛 섬유(혹은 coir)(제5305호)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제52류·제53류) 등이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5305호의 물품은 제1404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함

○ 검토의견: 제1404호

- 비록 제1404호에서 제5305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물품은 방직용 섬유가 아닌 비료용의 코코넛 부산물로서, 방직용 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1404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47)에서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 : 제25류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어드·모래·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인 또는 칼륨과 같은 비료요소를 소량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1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토탄을 기제로 한 것 또는 토탄·모래의 혼합물 또는 토탄·점토의 혼합물을 기제로 한 것(제2703호)과 토양·모래·점토 등의 혼합물을 기제로 한 화분용 흙과 같은 조제 식물 성장 매체(제3824호)를 제외한다. 이들 모든 제품들은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또는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피트, 지렁이 분변토, 마사토, 질석, 펄라이트 등을 혼합한 화분용 토양과 같은 식물 성장매체로 사용되는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3824.90
물품설명	코코피트 약 70%, 지렁이 분변토 약10%, 마사토 약 10%, 질석 약 5%, 펄라이트 약 5% 등으로 혼합된 갈색 거친 분말상 - 용도 : 작물재배용 배양토(배란다 텃밭, 화분등)

1. 품명

○ 상품명: 유아용 특수분유

○ 물품설명

- 특수분유란 유아용 이유식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분유에 특수한 기능, 예를 들어 식품 단백질 알레르기, 항설사제 등의 기능이 추가된 고급 분유
- 식품 단백질 및 알레르기용 분유란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이 있는 영아의 알레르기 질환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모유수유가 불가능할 경우, 부분가수분해분유 또는 완전가수분해분유를 수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분가수분해단백질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과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조기에 방지해 주는 단백질.
- 또한 항설사기능 분유는 수유 후 아기의 변성을 좋게 해 주는 물질임. 분유에 올리고당을 추가하여 모유수유와 유사한 장내 환경을 형성하여 아기의 배변을 도와주는 기능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국
HS	1901.10	2106.90
기본세율	8~40%	80~180%
호의 용어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소호의 용어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10호에서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식약처 고시 제2013-137호에서 '조제분유'를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분말상의 모유대용품으로 유성분(우유에서 유래된 수분 이외의 성분) 60.0% 이상의 것으로 고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성분 60%미만의 소매포장된 유아용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10-1090호에 분류함.

○ 중국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고 설명하면서, ... (생략)...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 설탕 ·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고 설명
- 동 물품은 식료품인 분유에 특정 기능을 하는 화학품을 첨가한 것으로서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이며, 따라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따라 제2106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1901.10호

- 동 물품은 분유를 기초성분으로 하여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첨가한 조제식료품으로서, 비록 단백질 등 식용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는 혼합조제식료품이긴 하나 여전히 주 목적이 유아용 분유로 사용되며 추가적인 기능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식품임. 따라서, 동 물품은 밀크로부터 조제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1901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2808/13-1)

국가	독일
결정세번	제1901.10호
물품설명	<p>Infant formula with whey powder, skimmed milk powder and semolina Pre Sets was a printed Originalfaltkarton with details of the product, the manufacturer, the contents of one packet (500 g), the composition (mainly whey powder, skimmed milk powder, durum wheat semolina, skim milk yogurt, maltodextrin, fruit powder and fruit flakes), the application (Bio-milk pudding) and the preparation.</p> <p>In the box there are two aluminum foil bags that are filled with a fine, pale yellow, speckled Pulver.Kakao</p> <p>*: not contain starch / glucose **: 25 to less than 50 GHTSaccharose / invert sugar / isoglucose **: 5 to less than 30 GHTMilchfett * : 0 to less than 1.5 GHTMilchprotein *: 6 to less than 18 GHT *: according to specification **: determined according to Regulation (EC) No 900/2008, Regulation (EU) No 118/2010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not containing coco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preparation for infant use, put up for retail sale</p>

1. 품명

○ 상품명: 커피음료

○ 물품설명

- 커피음료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이러한 물품은 원유를 주요 성분으로 하고 이에 코코아나 커피파우더, 정제수, 액상과당, 탈지분유 등 여러 종류의 첨가제를 넣어 만듦.

○ 물품사진(유사물품)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국
HS	제2101.12호	제2202.90호
기본세율	8%	100%
호의 용어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2101호에서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 특히 제2101.12호에는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커피엑스 ·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은 진짜커피(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또는 진짜커피와 함량의 정도를 불문한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 또는 분형으로서 보통고도의 농축물이다. 이 범주에는 인스턴트 커피로 알려진 물품을 포함한다. 이것은 끓여서 탈수한 것 또는 끓여서 냉동한 후 진공건조한 커피를 말한다.’라고 설명하여 커피를 함유한 제품이 제2101.12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설명

○ 중국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일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이 류주 제3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고 설명하면서
- 이에 대한 예시로서 ‘(2)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 : 예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우유를 기제로 커피분말 등 다양한 식품을 첨가한 커피 음료로서 제2202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2202.90호

- 동 물품은 상품명에 ‘커피음료’이며, 우유를 기제로 하여 커피파우더를 함유한 커피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으나,


-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원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피의 함유량은 단지 1~2%에 지나지 않아 커피를 주성분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이는 커피음료를 구성하는 기타의 다른 성분인 탈지분유, 액상과당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동 물품을 커피음료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따라서 동 물품을 커피를 기제로 한 물품이 아닌, 기타의 음료로 보아 제220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⁵⁾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관세평가분류원8133)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로서 우유와 코코아 등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2호에서 “코코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를 제2202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제2101호에서도 “제22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우유, 커피추출액, 정백당, 유크림, 탈지분유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료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기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 2202.90-9000호에 분류함.

5) 동 물품을 제1901호의 밀크조제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19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설탕과자의 특성을 갖는 물품(제1704호)과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이상인 물품(제1806호)과 음료(제22류)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여, 음료의 것은 제22류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2202.90호
물품설명	<p>Beverage, non-alcoholic ; Arabus Roasted and Ground RTD Cup Coffee caramel macchiato(커피음료)</p> <p>우유 30%, 원두커피추출액 24%, 정백당 5.5%, 유크림 4%, 탈지분유, 카라멜시럽, 탄산수소나트륨,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합성 착향료, 정제수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ml) 용도 : 직접 음용</p>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콜라겐드링크

○ 물품설명

-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드링크. 건강한 피부를 중요시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음. 외국 브랜드로는 일본의 인지도가 가장 높으며, 그 밖에는 대만의 Lumi, 중국의 즈메이탕, 엔루위 등이 있음. 중국 제품 중 대부분이 저가 어류껍질에서 채취된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보도로 국내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 물품은 콜라겐 중에서도 분자량이 매우 작은 다이펩타이드 콜라겐이 다량 함유된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특히, 더 작은 분자인 3세대 듀오펩타이드 콜라겐을 함유. 또한, 푸룬과 블랙커런트, 슈퍼푸드 아사이베리 등 베리농축액을 함유하고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 국
HS	2106.90	2106.10
기본세율	8~30%	90%
호의 용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소호의 용어	기타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textured) 단백질계 물질

3. 품목분류 검토

- 동 물품 콜라겐드링크의 품목번호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제2106호에 분류하고 있음,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 호로서 다양한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동 호에 분류됨.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동 물품이 제2106.90호에 분류되며, 제2106.90호에 분류되지 않는다고 결정. 제2106.9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는 바, 동 물품 콜라겐 드링크는 주요 성분이 단백질계의 콜라겐이긴 하지만, 콜라겐 외에도 다양한 성분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제2106.90호에 분류함.

○ 중국

- 제2106호 해설서에는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 (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그러나, 비텍스처(non-textured)된 탈지대두분은 식용에 적합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서 제외되며(제2304호)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504호).”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단백질계 물질인 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단백질 농축물 또는 텍스처화된 단백질이 분류되는 제 2106.1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

○ 검토의견: 제2106.90호

- 콜라겐 드링크는 콜라겐 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성분을 원료로 하여 식용에 공하도록 조제한 식료품이므로 제2106.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참조번호 1582)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 (A)항에 따르면 “이 호에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 (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7호의 제외규정에 “젤라틴·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실에센스로 조제한 식탁용젤리는 제21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콜라겐, 프락토올리고당, 딸기농축액, 결정과당, 블루베리농축액, 검혼합제제, 천연라즈베리향, 무수구연산, 과일야채혼합분말,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 된 젤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2106.90
물품설명	콜라겐, 프락토올리고당, 딸기농축액, 결정과당, 블루베리농축액, 검혼합제제, 천연라즈베리향, 무수구연산, 과일야채혼합분말,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담갈색계 젤리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g) - 용도 : 식용(피부 건강관리용)

7

염산 라니티딘(Ranitidine HC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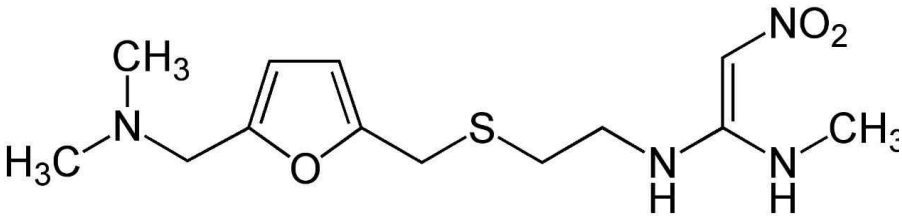
1. 품명

○ 상 품 명: 염산 라니티딘

○ 물품설명

- 라니티딘은 수용체 차단제로 작용하여 위 내부에서 산의 생성작용을 억제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위궤양 또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잔탁’, ‘큐란’이라는 브랜드로 출시되었다.
- 라니티딘이 바로 의약품으로 출시되는 것은 아니며, 라니티딘 성분과 함께 제산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라니티딘과 마그네슘염 및 알루미늄염의 복합제로 구성되어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2932.19	2942.00
기본세율	2~8%	10%
호의 용어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그 밖의 유기화합물
소호의 용어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 기타	-

3. 품목분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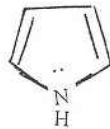
○ 우리나라

- 고리내에 탄소가 아닌 원자가 하나 이상 있는 고리 화합물을 다른 종(이종) 원자(헤테로) 고리 화합물 (heterocyclic compounds)이라고 한다. 이런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로는 피리딘(pyridine), 피롤(pyrrole), 퓨란(furan)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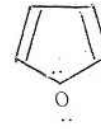
이종 원자고리화합물 heterocyclic compounds



피리딘(pyridine)



피롤(pyrrole)



퓨란(furan)

- 라니티딘은 고리 내에 산소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퓨란 구조에 다양한 분자가 붙어 생긴 화합물로서 제2932호에 포함됨. 또한 제2932.19호에 ‘붙지 않는 푸란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분류되므로 라니티딘 염은 제2932.19호에 분류됨

○ 인도

- 제2942호는 그 밖의 유기화합물이 분류되며, 염산 라니티딘은 제29류에 별도로 분류되는 호가 없으므로 제2942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2932.19호

- 동 물품은 분자식으로 보아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며, 고리 내에 탄소외에 산소원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2932호에 분류되며, 서로 붙지 않는 푸란고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2932.1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13813/14-1)

국가	독일
결정세번	3004.90
물품설명	<p>Medicaments with RanitidinBei the goods is it in accordance with the submitted data sheets to dose pharmaceutical products containing the active ingredient ranitidine (a drug for the treatment of gastric and duodenal ulcers) in the form of tablets.</p> <p>The goods are packed in colorful printed Pappfaltchachteln for retail sale. The leaflets contain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tion areas, the dosage, the type of application and the ingredients of the Arzneiwaren.As dosed and put up for retail sale Medicaments are the products classified 3004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in the position.</p>

○ 미국(NY K87553)

국가	미국
결정세번	2932.19
물품설명	<p>In your letter dated June 23, 2004, you requested a tariff classification ruling.</p> <p>The subject product, Ranitidine, which you refer to as "Ranitidine Form 1," inhibits the secretion of gastric acid. It is indicated for use in the treatment of active duodenal and gastric ulcer, pathological hypersecretory conditions, erosive esophagitis and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GERD), among other things.</p> <p>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Ranitidine, imported in bulk form, will be 2932.19.5000,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 which provides for "Heterocyclic compounds with oxygen hetero-atom(s) only: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furan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Other: Other. Pursuant to General Note 13, HTS, the rate of duty will be free.</p>

1. 품명

- 상품명: 폴리쿼터늄(miconium pq10-j3000)
- 물품설명
 - 동 제품은 폴리쿼터니움(polyquaternium)-10으로서 백색의 분말상의 것임
 -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내에 잔류하지 않아 인간의 조직이나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음.
 - 양이온성 폴리머인 폴리쿼터늄-10은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HEC)에 염화글리시딜트리메칠암모늄 또는 염화-3-클로로-2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메칠암모늄을 부가하여 합성한 4급 암모늄염 성분⁶⁾.
 - 천연 셀룰로오스를 양이온화 시킨 제품. 수용성이며 연한 미색의 특이한 향기가 있는 분말상의 것
 - 샴푸, 린스, 염모용 제품, 기타 모발케어 제품의 점도를 증진시키고 트리트먼트 효과를 얻음. 모발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빗질이 잘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음

6) 암모늄염이란 암모니아와 산이 화합하여 생기는 염이다.

○ 물품사진



MICONIUM PQ10-J400 Conditioning polymer

INCI Name	Polyquaternium 10			
Description	Polymeric quaternary ammonium salt of hydroxyethyl cellulose reacted with a trimethyl ammonium substituted epoxide			
Composition	Component Name	CAS No.	EINECS	Component
	Polyquaternium 10	68610-92-4		91%
	Water	7732-18-5	231-791-2	6%
	Sodium chloride	7647-14-5	231-598-3	3%
	* preservative : none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3402.12	3402.90
기본세율	8%	5~10%
호의 용어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양이온성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제3402.1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양이온의 것이 분류됨
- 제34류 주3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 특히 양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는 ‘수용액 중에서 전리하여 양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아민 염 및 제4암모늄염기의 염’으로 설명

○ 태국

- 제3402호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조제계면활성제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1) 유기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예: 술폰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 또는 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

(2) 유기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예: 황산화 지방 알코올 시클로헥사놀 또는 테트라히드로나프탈렌에 용해한 것)

(3)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예: 스테아린산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알킬벤젠술폰네이트와 같이 일정비율의 비누를 함유한 조제계면활성제)

(4) 비누를 시크로헥사놀과 같은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예: 비누의 수용액에는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 또는 글리세롤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물품은 제3401호에 해당하는 액상비누이다.]

- 따라서 동 물품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혼합물이므로 조제계면활성제인 제3402.90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3402.12호

- 동 물품은 트리메칠암모늄 치환 에폭사이드와 반응한 하이드록시 에칠셀룰로오스의 중합된 4급 암모늄염으로서 제3402.12호에 분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없음

9

조제접착제

1. 품명

- 상품명: 조제접착제
- 물품설명
 - 조제접착제로 다양한 종류의 중합체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접착제. 특히 에폭시수지를 기본으로 하는 에폭시 접착제는 경화 후 기계적 특성이 뛰어나고 접착력이 강하며, 전기절연성 특성이 뛰어나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3506.91	3208.9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소호의 용어	기타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가 분류되며,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 조제품이 있다.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Epoxy수지 주성분에 실리카, 레진, 유기용매 등이 포함된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 인도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제32류 주4에 따르면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동 물품은 제39류에 해당하는 에폭시 중합체에 휘발성 유기용매를 첨가한 것으로서 제3208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437/14-1)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3506.10호
물품설명	Information from the applicant: 1: 1 epoxy glue set 6 Std.Zur repair of medical endoscope composition according to the safety: 84% bisphenol type epoxy resin, 16% dicyandiamides based latent curing agent investigation results in a trade sample the set of two metal tubes with screw cap filled with a whitish transparent or light yellow, viscous liquid, a rectangular, flexible plastic film (Dimensions: 8 x 4.5 cm) and a white plastic spatula. The components of the set are in a printed with Asian characters Pappfaltschachtel (see illustration) .Befund: The character of the present the set is determined based on the scope and use by the included 2-component adhesive.Then there is customs tariff law to a suitable for use as an adhesive product put up for retail sale with a net content of 1 kg or less in the sense of position 3506th

1. 품명

- 상품명: sticky trap
- 물품설명: 농업용 벌레 끈끈이(agricultural products)
 - 농업방제용 끈끈이로서 비닐하우스 내의 작물에 피해를 주는 흰나방, 온실가루이, 응애, 아메리카잎굴파리 등의 포획에 사용됨
 - 노랑과 파랑색상은 해충이 선호하는 파장을 일으켜 포획 성공률이 높음
 - 방수코팅 처리가 되어있어, 농약이나 물을 살포하여도 무방
 - 해충 예찰 용도는 물론, 포획용으로도 사용
 - 종이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소재로도 제작이 가능
 - 농약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인체와 생태계에 무해한 친환경 제품임
 - 제품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되며 대 사이즈의 경우 220*330(mm), 포장단위는 50장/인박스 수준임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3506.99	3808.99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물품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해충을 잡는 끈끈이로서 물품의 주요한 특징이 접착제에 있으므로 ‘기타의 조제글루’가 분류되는 제 3506.99호에 분류함

○ 인도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3)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공장용 큰 통·주거지 등의 소독 및 훈증용) 및 파리잡이 끈끈이(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글루를 도포한 것을 포함한다)·과수용 그리스 밴드(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잽저장용기로서 살리실산을 침투시킨 것·린덴(ISO, INN)을 도포한 작은 목재 토막 스틱 및 태워서 사용하는 물품 등과 같은 형상의 물품으로 한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
- 동 물품은 해설서에서 설명한 ‘파리잡이 끈끈이’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으로 글루를 도포한 살충제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제3808.99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3808.99호

- 동 물품은 비록 글루 및 접착제를 주요 구성성분으로 하고 있으나, 제3808호의 용어에서 ‘파리잡이 끈끈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해설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808.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감정22701-4198

- 본품은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파리잡이 끈끈이 등이 분류되는 HSK3808.90-900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3808.90호
물품설명	판지를 3등분으로 접은 중앙에 합성수지제 강력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양쪽을 접어서 포장

○ GB123104824

국가	영국
결정세번	제4811.41호
물품설명	<p>GLUEBOARDS USED IN ELECTRICAL FLY TRAPS THAT USE UV LIGHT TO ATTRACT FLYING INSECTS.</p> <p>GLUEBOARD IS MADE OF CARDBOARD AND COATED WITH GLUE. HAS A SHEET OF RELEASE PAPER. THEY DO NOT CONTAIN ANY POISONS OR ATTRACTANTS. DIMENSIONS ARE 42.7x24.5 CM. PACKED IN SIXES</p>

1. 품명

- 상 품 명: 카본 코어드 와이어(Carbon Cored Wire)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철제튜브(지름 13mm)속에 carbon 분말을 충전한 것으로
서 쇠물에 투입하여 강의 탄소성분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S	3824.90	8311.90
기본세율	2~8%	10%
호의 용어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땀·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본 물품은 철제튜브(지름 13mm)속에 탄소(carbon)분말을 충전한 것으로서 쇳물에 투입하여 강의 탄소성분을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임
- 본품은 내용물 성분 뿐만 아니라 외피도 함께 투입하여 사용 되므로 이는 단순한 Carrier의 차원을 넘어 제품의 특성을 주는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된 제품임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B)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 해설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例 : 나프텐 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제튜브속에 탄소분말을 충전한 것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 인도네시아

- 관세율표 제831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땀·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⁷⁾(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피복용 또는 심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플럭스(예: 염화아연·염화암모늄·붕사·석영·수지 또는 라놀린 등으로 제조)이며 플럭스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용접·납접 또는 용착할 때 별도로 첨가한다. 전극 등도 분말상의 첨가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수가 있으며 전기용접의 경우에는 용접부분에 전호(電弧)를 인도하는 내열재(석면 등)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
- 동 물품은 철제튜브에 탄소를 충전한 것으로서 직접 철강재로 사용되지 않고 용접이나 납땀하여 다른 금속을 붙이는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8311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3824.90호

- 동 물품은 철제의 튜브 내부에 탄소를 충전한 것으로서 외형상 플럭스를 충전한 용접봉과 유사해 보이지만, 물품의 용도가 명백히 강의 탄소성분을 조정하는데 있으며 내부 충전물은 플럭스가 아닌 탄소분말이므로 제8311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3824호의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7) 플럭스란 납땀 작업에서 접합부를 깨끗이 하고, 접합시에 산화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접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조성제임(네이버 백과사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23080417)

국가	영국
결정세번	제8311.10호
물품설명	STAINLESS STEEL WELDING ELECTRODE SUITABLE FOR THE WELDING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INCLUDES EXTRA LOW CARBON AND CRACK RESISTANCE. THE PRODUCT IS A HIGHLY SPECIALIED ANTI SPATTER REAGENT COATED WELDING CONSUMABLE AND IS PRODUCED IN VARIOUS GRADES OF WIRE AND CONSUMER PACKS UP TO 12.5KG. THE PRODUCT IS COATED WITH FLUX, COMPRISING OF A MIX OF DICHLOROETHYLENE, METHYLENE CHLORIDE AND SILICONE, WHICH FORMS A THIN COATING OF SILICONE ON THE WIRE.

1. 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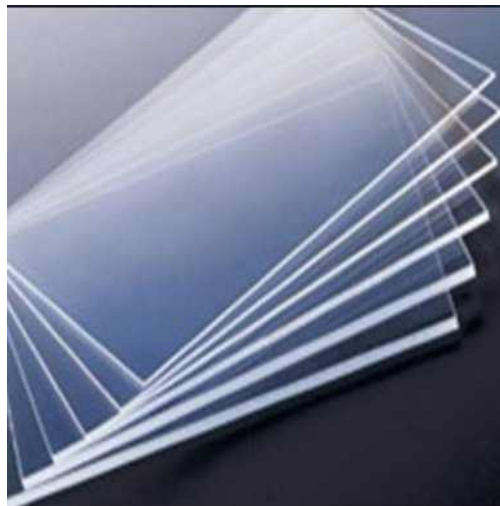
○ 상품명: 액상아크릴

○ 물품설명

- 아크릴은 아크릴산을 응고시켜 만든 플라스틱. 아크릴산은 기본 원료인 아세틸렌, 아크로니트릴, 프로필렌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촉매를 통한 화학반응을 거쳐 제조됨. 제품의 코팅, 접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

- 욕조나 세면대, 샤워부스 등 아크릴로 이루어진 목욕탕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투명 아크릴 시트를 성형하여 만듦. 용도에 따라 아크릴에 촉매, 코팅제, 접착제 등 첨가물이 추가될 수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영국
HS	3906.10	3824.90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가 분류되며, 이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에 한함. 일차제품의 형상이란 제39류 주6에서 ‘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나.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으로 정의
- 동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로서 액상의 것이므로 제39류 주6에서 정의한 형상에 부합하므로 제3906호에 분류

○ 영국

-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
- 동 물품은 액상의 아크릴에 다양한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이므로 제3824호에 분류

○ 검토의견: 보류

- 동 물품은 욕조 등 목욕용품의 제조에 전용되는 액상의 아크릴로서 일반적으로 아크릴이 주요한 성분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첨가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1565863)

국가	영국
결정세번	3824.90
물품설명	A 59ML CONTAINER OF ARTIFICIAL NAIL REMOVER LIQUID, WHICH SAFELY AND GENTLY REMOVES POLISH, FULL-COVER NAILS, TIPS, GELS, WRAPS AND ACRYLICS. INGREDIENTS INCLUDE, ACETONE, N-METHYL-2-PYRROIDONE, BUTYL STEARATE AND FRAGRANCE.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고분자 응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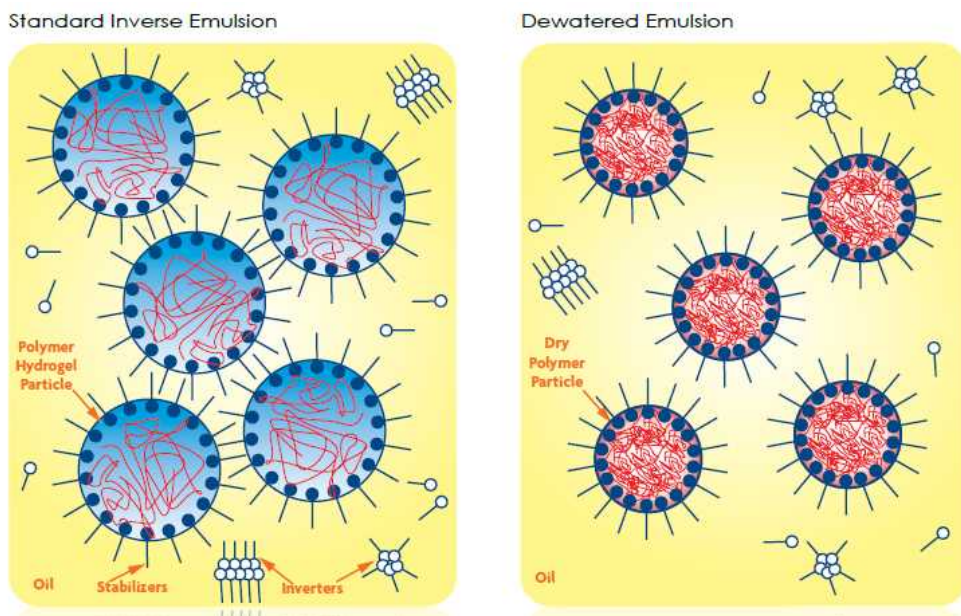
○ 물품설명

- ANIONIC WATER SOLUBLE POLYMER IN EMULSION(폴리아크릴아미드)

-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유기계 응집제. 물에 분산한 미립자를 응집시켜 공장 폐수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됨. 양이온성, 음이온성, 비이온성으로 분류됨. 폴리아크릴산,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알코올 등이 있음.

- Acrylamide-Benzyl chloride ammonium acrylate copolymer로 유백색 에멀션상, 용도 : 폐수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S	3906.90	3911.90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아미드 또는 니트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유백색 에멀션상의 아크릴아미드 공중합체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 인도네시아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숄파이드·폴리숄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
- 동 물품은 고중합체로서 제39류의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므로 기타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제3911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DK15/05-2121-00421

국가	덴마크
결정세번	제3906.90호
물품설명	<p>The product exists as small irregular crystals / granules (in a mixed order of about 2 x 3 mm, 1 mm x 2, 3 x 3 mm). A booklet, it is clear that the crystals to swell by the addition of water (in 8 hours) and to certain plants - including succulents - can grow therein instead of in the ground. In addition, the swollen / swollen product is used for decorative purposes, for example.</p> <p>Liquid light in a bowl (instead of water). 5 grams of product added to 1 liter of water gives a volume of approx. 6 dl.</p> <p>The product has been to study and is identified as: poly (acrylamide-co-acrylic acid). The product comes in several different colors. The investigated sample is green crystals.</p>

1. 품명

○ 상품명: 감수제

○ 물품설명: 폴리카르본산계 혼화제용 감수제(PC)

- 콘크리트에 필요 이상으로 물이 너무 많으면 물이 표면에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건조수축이 일어남.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수제를 사용하여 워커빌리티를 개선해야 함

- 워커빌리티(workability)란 콘크리트를 혼합한 다음 운반해서 다져 넣을 때까지 잘 굳지 않는 정도, 즉 시공성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성질임. 워커빌리티가 좋으면 작업도 쉬우며 굳은 후 균열도 생기지 않게 됨

- 감수제(water-reducing agent)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의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의 일종. 감수제를 투입함으로써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작업할 수 있는 ‘워커블(workable)’한 상태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음.

- 감수제에는 감수제와 고성능 AE감수제로 구분하며, 고성능 AE감수제는 다시 변성리그닌계, 나프탈렌계, 폴리카르본산계로 구분됨. 특히 폴리카르본산계 감수제는 고가이며, 성능이 탁월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3907.20	3824.4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그 밖의 폴리에테르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폴리카르본산을 기제로 한 동 물품을 관세율표 제3907호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에 분류

○ 인도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3)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 : 예를 들어, 규산나트륨이나 규산칼륨과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 규산칼륨을 기제로 한 내산첨가제 및 예를 들면 산화칼슘·지방산 등을 기제로 한 방수조제품(비누를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불문)’라고 설명함

- 동 물품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조제첨가제인 감수제로서 제3824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에 따라 제3824.40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3824.40호

-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소호의 용어에 따라 제3824.4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20528018)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3824.40호
물품설명	<p>CEMENTITIOUS MIXTURE PROVIDED IN POWDER FORM FOR THE WATERPROOFING OF CONCRETE.</p> <p>WHEN MIXED WITH WATER AND APPLIED AS A CEMENTIOUS COATING, THE ACTIVE CHEMICALS IN THE PRODUCT CAUSE A CATALYTIC REACTION WHICH GENERATES A NON-SOLUBLE CRYSTALLINE FORMATION OF DENDRITIC FIBRES WITHIN THE PORES AND CAPILLARY TRACTS OF CONCRETE.</p> <p>THE PRODUCT THEN BECOMES AN INTEGRAL PART OF THE CONCRETE.</p> <p>THIS PROCESS PERMANENTLY SEALS THE CONCRETE AGAINST THE PENETRATION OF WATER OR LIQUIDS FROM ANY DIRECTION.</p> <p>SUPPLIED IN 500LB(227 KG) STEEL DRUMS.</p>

1. 품명

- 상품명: 면 점착테이프
- 물품설명: PE 코팅된 면 점착테이프. 일반적인 묶음 작업, 이음, 비닐 수리 및 포장 용도로 사용됨
- 물품사진



▶ 제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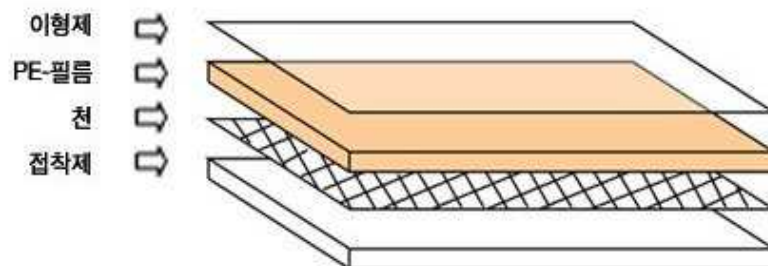
PE 코팅된 면 점착테이프

일반적인 묶음 작업, 이음, 비닐 수리 및 포장 용도로 사용됨.

▶ 기술 데이터

기재	PE 코팅 천
점착제	천연 고무
총 두께 (mm)	0.21
점착력 (kg/25mm)	0.9
되감는 힘 (kg/50mm)	2
인장 강도 (kg/25mm)	10
유지력 (25mm x 25mm / 40°C)	30min
볼텍 (cm / ball no. 20)	20
온도 저항 1h/°C	-35 / up to +80
저장 수명 (20°C / 60%)	6 개월

▶ 제품 설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3919.10 / 3919.90	5906.10 / 5906.99
기본세율	8% / 8%	2.9% / Free~3.3%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 테이프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하며, 소호 제3919.10호에는 “롤 모양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 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접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 결합물품 -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테이프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10-0000호에 분류함

○ 미국

- 제5906호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D) 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이면재로 한 접착 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를 제59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
- 동 물품은 방직용 섬유를 베이스로 하여 양면에 플라스틱 재질인 폴리에틸렌과, 고무를 베이스로한 접착제를 도포한 제품으로서 제 5906호에 분류

○ 검토의견: 보류

- 방직용 섬유를 기본으로 양면에 플라스틱 재질과 고무재질을 모두 사용한 제품으로서 구체적 상품구성요서에 따라 제3919호와 제 5906호 모두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16091888)

국가	영국
결정세번	제5906.10호
물품설명	A ROLL OF SELF ADHESIVE PLASTIC COATED CLOTH TAPE. CONSISTING OF 3 LAYERS, OUTER LAYER OF POLYETHYLENE, MIDDLE LAYER OF A WOVEN POLYESTER CLOTH AND A BACKING OF A NATURAL RUBBER ADHESIVE. WITH A WIDTH OF LESS THAN 20CMS. IT IS A UTILITY GRADE DUCT T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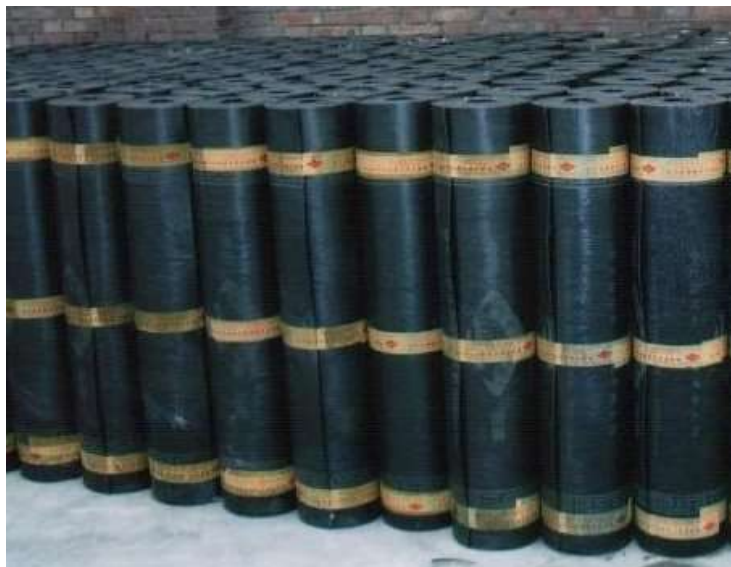
1. 품명

○ 상품명: 멤브레인 시트

○ 물품설명

- 액체 등 특정 성분을 통과시킴으로서 본래 물질에서 이물질을 여과시키는 필터 역할을 하는 시트. 주로 오염된 물을 정화(중금속 제거, 이온성분 미생물 제거)하는 정수기에 필터로서 사용하거나 바닷물을 담수화 하는데 사용. 땀은 방출하고 빗물은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고어텍스 섬유도 멤브레인의 일종임.
- 일반적으로 멤브레인 제조에 사용되는 고분자는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등의 천연고무와 폴리이미드, 폴리에테르, 폴리에틸렌 등 기계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플라스틱 등이 있음
- 멤브레인은 이들 고분자물질에 기체를 넣어 기공을 만들고 이러한 기공을 제거함으로서 제조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중국
HS	3921.19	3921.90
기본세율	4~8%	45%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소호의 용어	셀룰러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9호에는 ‘셀룰러의 것으로서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는 셀룰러에 대하여 ‘셀룰러 플라스틱은 피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폼 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도는 마이크로 셀룰러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과 경질의 것이 있다.’고 정의
- 셀룰러 플라스틱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셀룰러 플라스틱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중에는 플라스틱에 가스를 혼합시키는 방법(예: 기계적혼합, 저비점 용매의 기화와 가스 생성물질의 분해), 중공의 마이크로스피어(예: 글라스 또는 페놀수지의 것)를 플라스틱에 혼합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미립자를 소결하는 방법과 플라스틱에 물 또는 용제가용물을 혼합하여 그것들을 제거하여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방법은 멤브레인 시트의 제조공정과 동일하므로 멤브레인 시트는 플라스틱 시트 중에서 셀룰러의 것에 해당하므로 제 3921.19호에 분류

○ 중국

- 멤브레인 시트는 플라스틱 시트이면서 기타의 것에 해당되는 제 3921.90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3921.19호

- 멤브레인 시트는 특성상 많은 기공이 있어 이를 이물질의 여과에 활용하는 셀룰러 플라스틱의 일종이므로 제3921.1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프랑스(FR-RTC-2014-003710)

국가	프랑스
결정세번	3921.19
물품설명	SEPARATOR BATTERIES IN THE FORM OF A MEMBRANE MICROPOROUS trilayer OF MICRON 12, IS A THIN POLYETHYLENE SHEET BETWEEN 2 SHEETS POLYPROPYLENE PRESENTED IN ROLLS OF DIFFERENT WIDTH.

○ 아일랜드(IE11NT14-1001-02)

국가	아일랜드
결정세번	3921.19
물품설명	MICROPOROUS (MICROCELLUAR) POLYTETRAFLUOROETHYLENE(PTFE)SHEETS PRESENTED ON ROLLS OF VARIOUS LENGTHS. IT IS USED AS A FILTER MEMBR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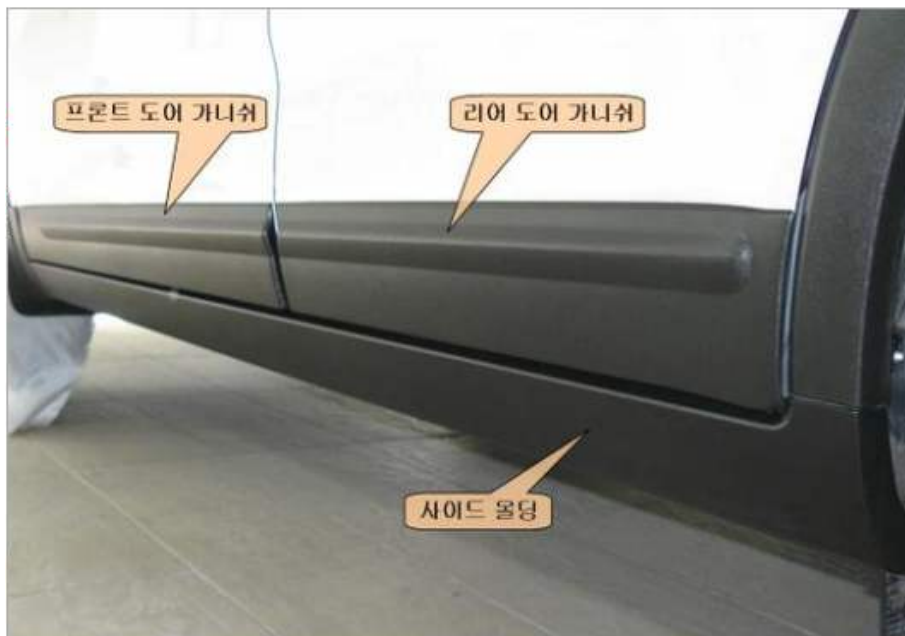
1. 품명

○ 상 품 명: 가니시 패스너(Garnish fastner)

○ 물품설명:

- 가니시(Garnish)란 ‘장식’이란 뜻으로 자동차의 차체에 붙여진 플라스틱의 것. 차량의 둔탁한 부분이나 손잡이 부분을 감추어 외관을 보기 좋게 함. 일반적으로 차량 외관에는 디자인에 어울리지 않게 모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가니시를 사용하여 덮어줌
- 자동차 부품인 가니쉬 판넬, 도어판넬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용 제품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에 의해 제조됨
- 피 고정부위에 삽입되는 부분은 화살표 형상으로 돌출 성형되어 있으며, 홈이 파여 있어 체결시 맞물려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대 쪽은 압정모양의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3926.90	8708.29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17부의 주 제2호 나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의 주 제2호에 가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부품인 가니쉬 판넬, 도어판넬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용 제품으로서, 피 고정부위에 삽입되는 부분은 화살표 형상으로 돌출 성형되어 있으며, 홈이 파여 있어 체결시 맞물려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능상 제7318호에서 규정한 스크루, 볼트 등과 유사한 물품임으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아 제39류에 분류해야 함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6)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인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 동 물품은 자동차 부품인 가니쉬 판넬, 도어판넬 등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체결용 제품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며, 제17부의 제외물품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없음

1. 품명

○ 상품명: 피펫(Pipets)

○ 물품설명

- 피펫은 일정량의 액체나 기체를 측정하거나 추가·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음. 자주 쓰는 것으로는 메스피펫(홀피펫), 스포이드 피펫, 파스퇴르 피펫, 자동 피펫 등이 있음
- 스포이드는 피펫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유리관 한쪽 끝에 액체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고무로 된 부분이 있어 이를 눌렀다 떼는 식으로 액체를 빨아들이거나 내뿜을 수 있음.
- 자동피펫(automatic pipet)은 자동으로 액체나 기체의 양을 조절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3926.90	8479.90
기본세율	8%	Free
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피펫은 관세율표상 어느 호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 제품이므로 제3926호에 분류됨

○ 미국

- 동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몸체와 힘을 가하는 손잡이로 이루어진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상 ‘기계(machine) 또는 장치(apparatus)’로 분류할 수 있음.
- 기계의 사전적 정의는 ‘미리 정해진 방법으로 힘, 움직임,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부품의 조립품 또는 ②동력, 힘, 움직임을 전달하고 변환하도록 설계된 계기 또는 ③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작동되는 장치(예: 전자계산기, 카드분류기 등)’로 설명가능⁸⁾
- 또한 관세율표상에서 기계란 제16부 주5에 따라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고 규정

8) Webster dictionary


- 따라서 외부의 작용을 이용하여 액체나 기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피펫은 관세율표상 제16부에 해당하는 “기계”로 볼 수 있음. 또한 제16부 상의 어느 호에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8479호의 기타의 기계류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

○ 검토의견: 제8479.90호

- 피펫은 주로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16부 주5의 규정상 기계로 볼 수 있고, 제16부의 어느 호에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제8479호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고유의 기능⁹⁾’을 가진 제품이므로 제8479.90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참조번호 PLPL-WIT-2013-01765)

국가	독일
결정세번	8479.89
물품설명	<p>Pipettor made of polypropylene, designed for use in laboratories - for precise measurement and secure transport of small volumes (portions) of the liquid.</p> <p>Pipette works on the principle of the airbag (ie charged liquid is not in contact with the stem or diver pipette). Liquid is drawn to the terminals, which are applied to the pipette.</p> <p>Pipettes, depending on the model (single-channel multi-channel) may be a counter indicating the pipette objętość. Wielokanałowe metered allow simultaneous multiple metering of the liquid portion of the set volume.</p>
이미지	

9)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1. 품명

○ 상품명: 전사지(Transfer Paper)

○ 물품설명

- 전사지란 제품의 표면에 직접 문자나 그림 등을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로서 문자나 그림을 먼저 전사지에 인쇄한 후, 이것을 다시 제품에 입히는 방식임
- 다양한 제품에 사용될 수 있으나 흔히 티셔츠나 섬유제의 원단 등 각종 디자인을 인쇄할 때 많이 사용되며, 컵이나 기타 다양한 재질 위에 그림을 표현할 때 사용하게 됨
- 전사지의 크기는 A3용지의 크기부터 폭 610mm에서 1600mm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베트남
HS	4809.90	4816.90
기본세율	8%	0~5%
호의 용어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4809호에는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크기에 관해서 제48류의 주8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제48류의 주8

제4801호,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 가.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 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

- 동 주규정에 따라 폭이 36센티미터(360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여 제4809호에 분류하며, 36센티미터 이하의 전사지는 제4816호에 분류함. 동 물품은 최소 610mm에서 160mm의 것이므로 제480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베트남

- 관세율표 제4816호에는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관세율표 제48류의 주8에 따라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의 것에 한하여 동 호에 분류함
- 제시된 물품에는 크기가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며 특히 A3용지 크기의 전사지가 포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제4816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크기에 따라 분류

- 전사지는 크기에 따라 제4809호와 제4816호에 각각 분류할 수 있으며, 분류기준은 제48류의 주8에 규정되어 있음
- 동 물품은 A3크기의 물품부터 폭이 1600mm, 길이 100M의 것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미국(HQ 961550)

국가	미국
결정세번	제4809.90호
물품설명	The paper under protest is a coated transfer paper which we are advised is used in color copiers to transfer images to textile fabrics. It is used by owners of color laser copiers such as Xerox and Canon, and by users of a commercial heat press which allows the images to be transferred onto fabrics.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the transfer papers are either a duplex (two sheet) system or a simplex (one sheet) system.

1. 품명

- 상품명: 종이필터(Filter paper)
- 물품설명
 - 폐놀수지를 함침한 황색계 종이를 폭 방향으로 주름지게 접은 롤상의 것(펼쳤을 때 전체길이 약 155cm, 폭 약 6.6cm)으로서 필터제조용의 것임
 - 폐놀수지 등 중합체를 침투시킨 필터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이 됨. 오염물질을 여과시키므로서 미세한 현탁물질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수행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S	4811.59	4805.40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 기타	여과지와 판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4811.59호에 “기타의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소호 해설서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침투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등에 적용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도포한 지와 판지”는 ‘해당 호에 규정된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타르, 역청물, 아스팔트, 플라스틱 또는 기타 유기물질(왁스·스테아린·섬유더스트·톱밥·분상의 코르크·셀락 등)을 도포한 롤상 또는 시트상의 지와 판지는 제4811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페놀수지를 함침한 황색계 종이를 폭 방향으로 주름지게 접은 롤상의 것(펼쳤을 때 전체길이 약 155cm, 폭 약 6.6c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11.59-0000호에 분류함

○ 인도네시아

- 관세율표 제4805호에는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제4805.40호에는 ‘여과지와 판지’를 분류함
- 호의 용어에 ‘여과지(Filter paper)’를 별도로 계기하고 있으므로, 페놀수지를 침투시킨 동 여과지는 제4805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4811.59호

-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서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은 제4811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4805호 해설서에서도 ‘다만, 특수지와 판지 또는 특수제품(제4806호부터 제4808호까지와 제4812호부터 제4816호까지) 및 예를 들면 도포·침투한 지 또는 판지 등 주 제3호에 규정한 공정을 제외한 공정을 거친 지와 판지(제4809호부터 제4811호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페놀수지를 침투 및 도포하여 산업용 여과기로 사용되는 동 물품은 제4811.5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22830/09-1)

국가	독일
결정세번	제4811.90호
물품설명	<p>The submitted product samples is a rectangular, about 121.0 cm long, 6.30 cm wide strip of about 1.3 mm thick cardboard of pulp of wood,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with synthetic rubber is impregnated as a binder. On the top is the name of the supplier and the product name are printed. The bottom is due to the production of a sieve structure. The piece of cardboard to use as Anreißband performed on pipes for miter cuts. The product is wrapped for the role, along with two advertising printing (and not the subject of this report) packed in a bag of plastic film on which a folded, is attached with product information printed strip of paper. Such papers include as "other than in subheadings 4811 10-4811 60 referred papers, inked and printed goods in rectangular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from that of heading 4803, 4809 or 4810" in the code number 4811 9000 00 of the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ARIC).</p>

1. 품명

- 상 품 명: 폴리우레탄 직물(신발제조용)
- 물품설명
 - 기모한 백색계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살구색계 폴리우레탄 시트를 적층한 것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5903.20	5903.90
기본세율	10%	Free~8%
호의 용어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폴리우레탄의 것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903.20호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1㎡ 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 (2) 경질의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가 섭씨 15도 내지 30도에서 직경이 7mm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호에 분류토록 설명
- 따라서, 본 품은 기모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우레탄 시트를 적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의하여 제5903.20호에 분류함

○ 미국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나
- 동 물품의 경우 적층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소호를 달리해야 할 것임

○ 검토의견: 보류

-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제59류의 주2에 따라 동 물품이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적층한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소호가 구분되므로 해당 적층 플라스틱의 성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8025/14-1)

국가	독일
결정세번	5903.20
물품설명	<p>Textile laminate, called Wilma Asia No. B 9983, photo see attachment - according to the request by the meter with a width exceeding 30 cm, -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wo with their whole face superimposed and so interconnected by bonding layers - with a top sheet (face side): --- of a dense, roughened and stained, having approximately 2/3 of the total thickness in cross section and thus not merely for reinforcing serving warp (= tissue within the meaning of chapter 59) from yarn of textile materials, which on the outside with the naked eye visible to plastic (cellular plastics, loud request: polyurethane; no microspheres containing) is covered - with a backing: --- from a white fabric of synthetic fibers (polyester) - - Plain weave, - by hand at a temperature between 15 and 30 ° C on a mandrel of 7 mm diameter rolled up without being cracked -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use as a shoe cover material that determines forming the exposed surface fabric of heading 5903 to character of the goods. "fabric, plastic (polyurethane) coated, other than those of heading 5902, excluding embedded microspheres"
이미지	

1. 품명

○ 상 품 명: 리코팅 버퍼(recoating buffer), 리코팅 패드, 코팅패드 등

○ 물품설명

- 광택기는 세차 시 외관의 페인트, 녹, 흙집 등을 제거하고 광택을 내는 용품으로서, 회전 방식에 따라 광택, 클리닝 작업에 사용되는 로타리버퍼와 코팅작업에 사용되는 오비탈버퍼 등으로 구분됨.

- 오비탈 버퍼란 코팅작업시 사용되는 섬유재질의 패드로서, 코팅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화알루미늄 등이 도포되어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6805.30	9603.5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또한 연마재료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살포되어 있으며 결합물질로 방직용 섬유에 부착시킨 부직포로 만든 유사물품도 포함한다. 사용되는 연마재료에는 금강사·강옥·탄화규소·석류석·경석·수석·석영·사·유리의 분 등을 포함한다. 띠상·디스크상 등은 봉합하거나, 접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만들어 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주요 용도로는 ‘이 호에는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금속·목재·코르크·유리·가죽·고무(경화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플라스틱재료 등을 손 또는 기계적으로 평활하게 하거나 크리닝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니스칠 또는 래커칠을 한 표면의 평활용 또는 연마용으로도 사용되며 카드 크로싱(card clothing)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여, 주 용도가 광택을 내거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
- 리코팅 버퍼는 차량이나 마룻바닥에 코팅시 사용되는 패드로서 주로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에 산화알루미늄을 도포한 것으로 제6805호에 분류함

○ 태국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제9603.50호에는 기타의 브러시로서 ‘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코팅기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도포된 섬유재질의 비나 브러시로 볼 수 있으므로 제9603.50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6805.30호

- 동 물품은 그 용도가 금속이나 마룻바닥의 코팅기 부분품으로서 사용됨이 명백하고, 재질상 섬유재의 것에 산화알루미늄이 도포된 것으로서 제6805호의 용어에 해당하는 물품임
- 이것을 비·브러시로 볼 수 있으나, 재질의 특성상 연마용 가루인 산화알루미늄이 도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비·브러시라기보다 제6805호의 물품에 더 가까우므로 제6805.30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감정22701-1610)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6805.30호
물품설명	Aluminum Oxide계 무기연마분이 코팅된 청록계 직사각형 Nylon Non Woven Fabric 제품

1. 품명

- 상 품 명: 세탁기용 유리
- 물품설명: 세탁기에 사용하는 유리제품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HS	7007.29	8450.90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접합 안전유리 기타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접합유리(laminated glass)를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만약의 충격에 대비하여 안전하도록 만든 세탁기용 유리는 제7007호의 안전유리로 분류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

-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제8450.90호에는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

- 또한 제7007호의 해설서에서는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된다.’고 설명

- 따라서 세탁기의 부분품의 형상을 가지는 동 물품은 제8450호에 분류

○ 검토의견: 보류

- 일반적으로 세탁기에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유리로 만들어지며, 세탁기의 부분품 형상으로 만들어짐

- 그러나 세탁기용 유리의 수입시 형상이 다른 부분품과 결합되어있는지에 따라 제8450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의 과세물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2008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관세율표 제7007호 용어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를,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각각 규정
 - 관세율표해설서 통칙3가 (IV)나(2)는 “강화 또는 합판유리로 구성된 틀에 끼우지 않은 안전유리로서 항공기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제8801호 내지 제8802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제8803호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안전유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7007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총설 (III) 부분품 및 부속품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중 (8) 강화 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틀을 붙이지 아니한 안전유리(성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7007호)를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
 - 제7007호 (B) 합판유리(laminated glass)는 “합판유리, 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2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합판 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합판유리에...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성질이 있으므로 이 유리는 자동차의 방풍유리 (windscreens) 등에 사용된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 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Safety glass incorporated in other articles and thus in the form of parts of...vehicles is classified with those... vehicles)”고 규정

- 제8708호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
-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들 중에서 ...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 windows equipped with heating resistors and electrical connectors) 등을 규정
- 신청인이 제시한 합판유리 제조공정을 따라서 해설서 제7007호상에 예시된 특정 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합판유리를 만들려면,
 - 절단·연마 등의 성형, 곡면성형, 접합공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능 등이 추가될 경우에 합판유리상에 와이퍼 결빙 방지용 열선인쇄, 접속단자 부착, Mirror Base 접착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합판유리의 기능보강과 작업편의 등을 위한 것임
 - 합판유리의 기능보강 등을 위한 추가공정들 중 접속단자 부착 공정외의 나머지 공정들이 행하여지는 시점은 합판유리를 완성한 후가 아니라, 공정순서상 합판유리 완성 전에 반드시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동 공정들이 수행 되는 시점에서는 완성된 합판유리로 인정할 만한 수준의 공정진행 단계가 아님

- 해설서 제7007호상의 특정형상을 갖춘 합판유리가 되기까지, 이러한 기능보강을 위한 중간공정들은 합판유리 완성공정상에서 정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공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중간공정들을 추가로 거친 합판유리가 안전유리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여 부분품으로서 인정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커넥터가 부착되기 전의 합판유리는 더 협의적이고 구체적인 호인 제7007호의 차량용 합판 안전유리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합판유리의 최종 완성단계인 접합공정까지만 거치고 커넥터가 없는 ①②번 물품은 관세율표 통칙3 가에 의거 차량 부분품보다 더 협의적인 표현인 “합판 안전유리 중 차량 등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크기 및 모양의 것(제7007 .21-0000호)”에 분류하며, 나머지 ③번 물품은 합판유리 완성 후에 커넥터를 부착한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제8708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중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 29-000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7007.21호(부착되지 않은 것) 제8708.29호(부착된 것)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및 형태 - ①번 물품 :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이 인쇄된 차량용 합판 유리에 Mirror Base만 부착한 합판 안전유리 - ②번 물품 : 테두리에 검은색 에나멜이 인쇄된 차량용 합판 유리의 하단부 (와이퍼 부분)에 열선만 부분인쇄한 합판 안전유리 - ③번 물품 : ②번 물품 열선에 전기접속단자(커넥터)를 추가로 부착한 합판 안전유리 ○ 용도 - 자동차용 앞유리(방풍유리)
이미지	<p>The image contains several components: a small photo of a car's windshield labeled 'windshield'; a large photo of a glass panel with a black frame, with red dashed lines indicating specific areas; a close-up photo of a connector labeled '접속용 단자'; and text labels '에나멜인쇄부' (enamel printed part), '열선인쇄부' (heating wire printed part), and 'Mirror Base' pointing to different parts of the glass panel. A caption at the bottom right reads '< 신청물품 >'.</p>

1. 품명

○ 상품명: 스틸피팅

○ 물품설명

-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데 사용 되는 철강제 관연결구로써 연결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기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물품임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스위스
HS	7307.99	8708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및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 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텐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오피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철강제 관연결구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07.99-9000호에 분류함

○ 스위스: 스위스에서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i)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 동 물품은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의 연료탱크 또는 진공펌프와 각 관료들을 연결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며, 제17부의 제외물품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708호

- 스틸피팅은 비록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이기는 하나, 그 용도가 자동차용의 부분품으로 명확하고 제17부의 주규정에 따라 부분품으로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4067/14-1)

국가	독일
결정세번	제8708.99호
물품설명	Parts for motor vehicles photo see attachment - specifically molded capping (circular tank cap), - according to the request of thermoplastic material (POM) and polyamide 66 (PA66) manufactured - with an inner part made of steel (called DC01.) - According to a resolution by a maximum diameter of 70 mm and a height of 38.1 mm, - fitted on the outside with a handle - inside with an inlaid seal - is clamped as a cap on the filler neck of a fuel tank or fuel tanks of motor vehicles and serves To close the fuel tank filler neck by a quarter turn - recognizable part for the exclusive use of motor vehicles "part for motor vehicle (tank cap), but in subheading 8708 1010-8708 9993 called".

샌드위치 패널

1. 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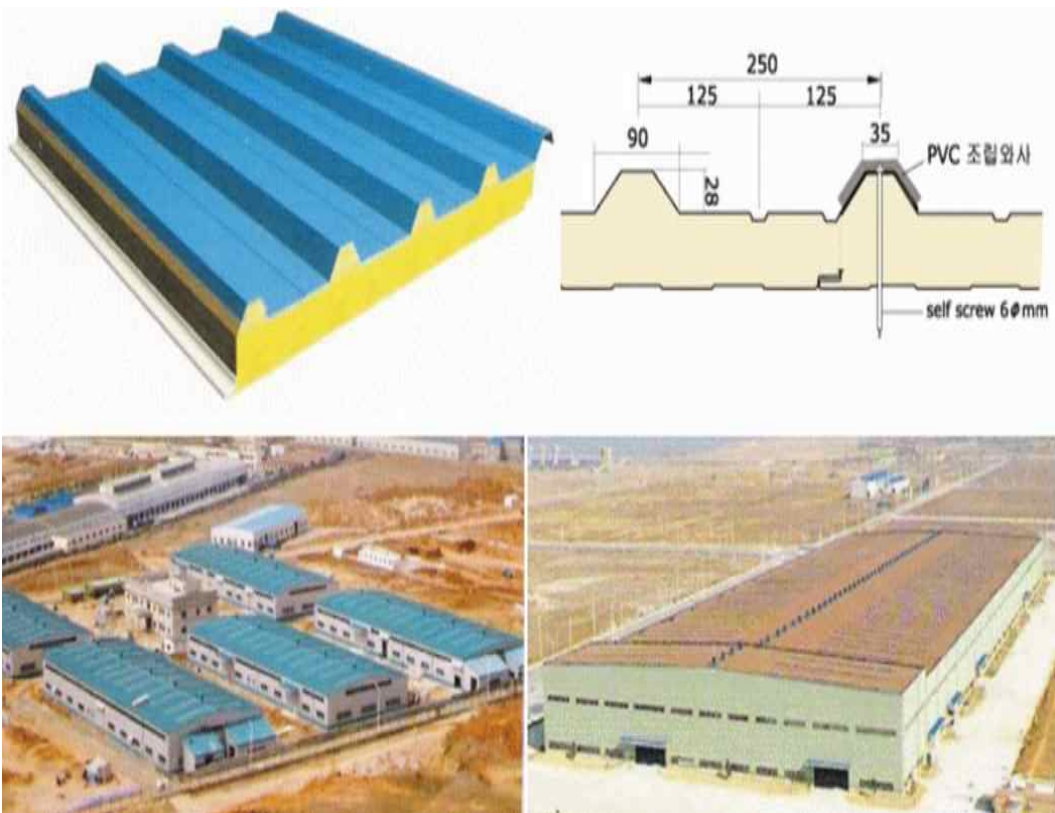
○ 상품명: Roof Sandwich Panel

○ 물품설명

- 스티로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판재. 일반적으로 표면판은 강철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강도가 큰 재료를, 심재에는 종이, 플라스틱 등 보온 및 방음 기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함.

- 주로 가건물이나 창고 등의 건립에 사용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S	7308.90	9406.00
기본세율	8%	12.5~15%
호의 용어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조립식 건축물
소호의 용어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생략)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제7314호의 강선으로 직조한 패널 또는 익스팬디드메탈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구조물에 사용되는 패널로서 강판과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제7308호에 분류

○ 인도네시아

-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는 각종 재료로 만든 이른바 “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한다.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헛간·차고 및 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고 설명
- 동 물품은 조립식 건축물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제9408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7308.90호

- 제7308호의 용어 및 해설에 따르면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은 제7308호에 분류하며,
- 제9406호의 해설서에서도 ‘별도로 제시되는 조립식 건축물과 설비의 부분품은 이들 건축물용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9406호에서 제외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조립식 건축물의 부분품으로서 재료에 따라 제7308.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16777451)

국가	영국
결정세번	제7308.90호
물품설명	A SANDWICH PLATE SYSTEM CONSISTING OF AN ELASTOMER CORE BETWEEN TWO PLATES OF SHEET STEEL. CONSTRUCTED FROM SHEET STEEL AND BARS WELDED TOGETHER TO FORM A CAVITY INTO WHICH POLYURETHANE IS INJECTED. THE ITEM CAN BE USED IN THE CONSTRUCTION OF STADIUM RISERS, FLOORING AND BRIDGES.

1. 품명

○ 상품명: 다이아몬드 원형톱(Diamond saw)

○ 물품설명

- 다이아몬드 원형톱은 건축자재, 묘석류, 조각제품류 등을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공구로서 다이아몬드가 부착된 톱날을 회전시켜 가공물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날의 개수에 따라 문형식, 단주형식, 다날식 등이 있음
-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절삭팁이 부착된 원형톱은 일반 금속이 부착된 원형톱에 비하여 수명이 30~100배 이상 길어지므로 대규모 작업장을 위주로 보급이 확산됨
- 다만, 다이아몬드 원형톱은 절삭팁이 설치되는 갈래부 사이 간격이 불필요하게 커지면 절삭팁과 피삭물의 갑작스런 충돌로 인하여 절삭날에 부착된 다이아몬드 입자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202.39	6804.21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202호에는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제8202.39호에는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을 분류
- 우리나라 관세율표 HSK상에서 제8202.39-20호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

- 동 물품은 원형 톱날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이므로 제8202.39호에 분류

○ 태국


-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3) 그라인딩 휠 · 헤드 · 디스크 · 포인트 등 : 이것은 금속 · 석 · 유리 · 플라스틱 · 도자기 · 고무 · 가죽 · 자개 · 아이보리 등을 다듬기 · 연마 · 버리기 정형 또는 때때로 절단을 하기 위한 기계공구 · 전동공구 또는 압축공기식 수공구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금속을 다듬기 위한 도구로서 다이아몬드를 부착한 것이므로 제6804.21호에 분류

○ 검토의견: 8202.39

- 제8202호와 제6804호를 구분하는 분류기준이 있는 바, 제6804호의 해설서에서는 ‘그러나 특정한 연마용구는 이 호에서 제외되고 제82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82류에는 연마재료 첨가한 후에도 그것의 동일성과 기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절단용의 치, 홈통, 자국 등을 가지고 있는 공구(즉, 이 호의 물품과는 달리 연마재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공구) 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연마재료로서 피복되어 있는 절단치를 가지고 있는 톱은 제8202호에 분류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 · 석영 등의 판으로부터 디스크를 절단해 내는데 사용되는 크라운 드릴은 연마재료의 피복에는 관계없이 사용하는 날이 평활하면 이 호에 분류하고 치가 있으면 제8207호에 분류한다(연마재료의 피복여부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절단용의 치를 가지고 있는 동 물품은 비록 연마재료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8202호에 분류하며, 제6804호에 분류하지 아니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네델란드(참조번호 NLRTD-2012-000832)

국가	네델란드
결정세번	6804.21
물품설명	<p>A composite article, being a saw disc,-as stated, inter alia,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 in the form of a round disc - consisting of a core of base metal, provided with holes suitable for sawing machines of various types of stone, concrete, and asphalt; - on the outside provided with an edge or a series of segments, consisting of a metal alloy, and diamond grains (agglomerated diamond powder) and having a flat or profiled slijpvak, - provided with slots between the segments for the cooling and the removal of sharps, - a segment height of 7, 7.5, 10 and 15 mm, depending on the type, - a diameter ranging from 100 to 600 mm, depending on the type. The saw blade is to be recognized as interchangeable tools.</p> <p>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article is assigned to the active portion of agglomerated natural or synthetic diamonds like those of HS heading 6804.</p>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기어 커터

○ 물품설명

- 기어커터는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에 장착하여 기어를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공구임. 기어를 가공하는 기계는 주로 창성법에 의한 가공 기계를 말하며 사용하는 공구나 기어 절삭 방식에 따라 호브 커터(Hob cutter), 밀링 커터(milling cutter), 피니언 커터(pinion cutter), 브로치 커터(broach cutter)를 사용한 것으로 분류 가능.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207.70	8207.9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 · 스탬핑(stamping)용 · 펀칭(punching)용 · 태핑(tapping)용 · 드레딩(threading)용 · 드릴링(drilling)용 · 보링(bor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밀링(milling)용 · 터닝(turning)용 · 스크루 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밀링(milling)용 공구	그 밖의 호환성 공구

3. 품목분류 검토

- 제8207호에는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공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7) 밀링용 공구 : 예, 밀링 커터(플레인커터 · 헤리컬커터 · 스테저드 커터 · 앵글 커터), 기어커팅 흡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
- 우리나라
 - 제8207.70호의 용어에 따라 밀링(milling)용 공구가 분류되며, 10단 위에서 ‘기어커터(gear cutters)’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 8207.7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인도
 - 인도에서는 기어커터를 제8207.90호의 그 밖의 호환성 공구(Other interchangeable tools)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207.70호
 - 동 물품은 기어커터로서의 용도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 8207.70호의 용어에 따라 동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

국가	독일
결정세번	8207.70
물품설명	<p>Suction. Gear Cutters-replaceable tool (cutter) alloy tool steel consisting of a cylindrical mold with a cylindrical bore with keyway exterior with a ground cutting geometry (teeth) - in different lengths and diameters made-for use in machine tools for machining (milling) of metal (applicant information) see Figure Anlage.</p> <p>Derartige products include as "Other interchangeable tools for use in machine tools (milling tool) for working metal, with working part of base metal" to the TARIC code 8207 7037 00</p>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 물품설명: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구(마팔 하이테크)

○ 물품사진

- 초경보다 경도 및 절삭성이 탁월한 PCD를 인선으로 제작하여 기존 초경 드릴보다 우수한 절삭속도와 고정도의 내경 가공이 가능
- 복잡한 상태의 다단 드릴에서부터 드릴과 보링툴이 결합한 형태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PCD를 갖추고 있음
- 공업용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을 마름모꼴 형상의 초경 본체에 용접한 형태의 INSERT로서,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밀링, 보링, 터닝, 드릴링 등의 가공용 호환성 공구에 사용됨)의 외경홀더나 TOOL에 고정되어 절삭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절삭날 부분은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

부분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209.00	8207.9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 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공구용 팁	그 밖의 호환성 공구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209호의 용어에는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판·팁 등은 금속 또는 기타 경질물을 가공하는 선반툴·밀링툴·드릴·다이스 또는 기타의 고속절삭기의 공구에 뿔질 또는 용접되거나 고정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것은 선단(先端)을 예리하게 한 것인지, 또는 다른 가공을 한 것인지를 불문하나 공구에 부착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구에 부착된 것은 공구가 해당하는 호(특히 제8207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여 제8207호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다이아몬드 TIP부분이며 호환성 공구에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되었으므로 제8209호의 용어에 따라 제8209호에 분류함

○ 태국

- 관세율표 제82류 주2에서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생략) (다)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의 용어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 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다이아몬드(Poly-Crystalline Diamond) 소재의 TIP을 초경본체에 결합한 형태의 인서트로서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의 외경홀더나 TOOL에 고정되어 다이아몬드 소재의 TIP을 절삭날로 이용하여 가공작업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호환성 다이아몬드 제 공구”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07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207.90-1000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품목분류과-104100)
 - ①번 물품에 대해서는 갑론과 같고 ②번 물품이 관세율표 제8207호의 드릴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류 총설 (C) 및 제8207호에서 “공구용 판·스틱·팁과 이와 유사한 물품(plates, sticks, tips and the like, for tools)은 제8209호”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 또한, 제8209호에는 “이 호의 물품은 보통, 판·봉·팁·로드·펠릿·링 등과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으며 가열시에도 대단히 견고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팁 등은 금속 또는 기타 경질물을 가공하는 선반투울·밀링투울·드릴·다이스 또는 기타의 고속절삭기의 공구에 뿔질 또는 용접되거나 고정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것은 선단(先端)을 예리하게 한 것인지, 또는 다른 가공을 한 것인지를 불문하나 공구에 부착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구에 부착된 것은 공구가 해당하는 호(특히 제8207호)에 분류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 본 인서트 드릴이 비록 구멍가공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홀더를 사용하면 인서트 자체적으로 드릴기능(구멍가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제820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구용 팁에 부합하게 팁 형상으로 되어 있고, 서메트제의 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드릴용 공구인 Drill Body의 앞 부분에 고정되어 드릴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서메트제 공구용 팁이 분류되는 HSK 8209.00-104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8207호, 제8209호
<p>물품설명</p>	<p>□ 구조 및 형태</p> <p>①번 물품 : 한쪽 끝에는 인서트 드릴을 끼울 수 있는 홈, 측면에는 나선형 홈이 있고, 내부에는 공작기계에 결합되는 구멍이 길이 방향으로 뚫려있는 steel제의 드릴용 공구</p> <p>②번 물품 : 여러 가지 지지물(drill body, 기타 holder 등)에 결합되는 꼭지가 붙어있는 5각형 형상의 서메트제의 인서트 드릴</p> <p>□ 물품 성분</p> <p>① Indexable Drill Body : SKD 61</p> <p>② Indexable Insert Drill : Tungsten Carbide(초경)</p> <p>□ 기능 및 용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기계(머시닝센터, 선반)에 부착하여 공작기계의 회전 및 이송에 의해 모든 금속재료에 구멍을 가공 ○ 인덱서블 드릴(Indexable Drill) : 인덱서블 드릴은 모든 금속의 구멍을 가공하는 드릴로서 구멍 가공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인서트 드릴(Insert Drill) : 인덱서블 드릴 Body를 사용하지 않아도 얇은 깊이의 구멍가공은 홀더를 사용하면 구멍을 가공할 수 있음 ○ 일반 공구용 팁과 인서트 드릴의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공구용 팁 · 구멍가공 및 밀링가공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인서트 자체적으로는 드릴 기능이 없기 때문에 Tip이라 할 수 있음. - (주)예스툴 인서트 드릴 · 구멍가공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림과 같은 홀더를 사용하면 인서트 자체적으로 드릴기능(구멍가공)이 가능하지만 홀더는 드릴 바디처럼 스쿠류 형태로 된 홈이 없기 때문에 구멍 가공에서 생기는 잔유물을 이송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깊은 구멍가공에는 부적당
<p>이미지</p>	

1. 품명

- 상 품 명: 인젝터
- 물품설명

- 인젝터(injector)란 전자식 노즐을 이용하여 고압으로 압축된 연료를 정해진 양만큼 분사하는 장치임. 분사신호로 전자석처럼 입구를 막고 있다가 전기가 흐르면 막았던 스틱이 전자석에 의하여 당겨져 분사구멍이 열리고, 연료가 입구로 분사됨. 노즐로부터 연료가 분사되면 저압력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이 노즐 주위의 기체 또는 액체를 흡입하게 되고 압력기체와 혼합되어 다시 분사작용을 반복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09.91	9032.90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소호의 용어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부분품과 부속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이 세분류 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7류에 분류되는 차량에 사용되는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엔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연료분사기(injector)이므로 불꽃점화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 태국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기기는 orders(펌프·압축기·밸브·노의 버너 등)가 변량(예 : 탱크에서 측정된 액체 또는 실에서 측정된 온도)을 지정치로 회생하게 하는 기기와 연결되며, 안전장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기의 작동이 제어되어 정지하도록 하는 기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
- 따라서 연료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분사해주는 것이 주요 기능이므로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동 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09.91호
- 동 물품은 차량의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공급해주는 인젝터로서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호의 용어에 따라 제8409.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참조번호 DE2938/13-1)

국가	독일
결정세번	8409.91
물품설명	Injector of a nozzle body with sealing rings, jet needle with solenoid valve, spray nozzle, electric plug connection and connection for fuel supply line, -, identifiable as intended for the controlled injection of fuel into the combustion chamber of a gasoline engine "part solely for internal combustion spark ignition engines of heading 8407, not a commodity the. code numbers 8409 1000 10 0-8409 9100 10 0 - the so-called fuel injector "

1. 품명

○ 상 품 명: 유압과워팩(HYDRAULIC POWER PACK)

○ 물품설명¹⁰⁾

- 유압과워팩이란 유압구동식 기기들을 작동시키기 위하여 유압을 발생시키는 장치임. 보통 선박에서는 유압 밸브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압밸브를 원거리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대규모 기계구조물에서 유압 밸브를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유압과워팩을 사용함
- 유압 파워 팩은 프레스 라인(Press Line)과 리턴 파이프 라인(Return Line)을 이용하여 유압 밸브와 연결된 솔레노이드 박스(Solenoid Box)를 제어함으로써, 원거리의 유압 밸브를 조정함

○ 물품사진



10) 듀얼 유압 파워팩을 구비한 선박. 공개특허 10-2014-0000974.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12.29	8413.60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그 밖의 엔진과 모터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소호의 용어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 기타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분류하며, 제 8412.29호에는 ‘수력엔진과 수력모터’로서 유압실린더를 포함함.
- 유압실린더란 ‘이들은 예를 들면, 동제나 철강제의 배럴 및 피스톤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기타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또는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는 공작기계·건설기계·조종장치 등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 유압과워팩은 유압을 발생시켜 원거리에 있는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장치이므로 유압실린더에 해당하며, 제8412.29호에 분류됨

○ 태국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호가 분류되며, 제8413.60호에는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
- 용적형 회전펌프에 대해서 ‘이 펌프에 있어서 액체의 흡인과 토출은 흡인 및 압축에 의하여 행하여지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캠(lobes)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발생되며, 축상(軸上)에서 연속적으로 회전된다. 이러한 장치는 펌프 본체의 벽에 하나 이상의 점으로 접촉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체임버(chambers)를 형성하며 그 체임버 속에 액체는 배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유압과워팩은 액체의 흡인과 토출로 작동하는 기기이므로 용적형 회전펌프에 해당하며, 제8413.60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12.29호

- 유압과워팩은 액체를 이용하여 유압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유압을 이용하여 기계장치를 조종할 수 있는 장치임. 제8412호의 유압실린더와 제8413호의 액체펌프는 액체를 사용하는 점에서 유사하나, 유압실린더는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액체를 운반하는 액체펌프와는 기능이 구분됨. 따라서, 유압과워팩은 기계를 작동시키는 목적으로 작동하므로 제8412호의 유압실린더와 기능상 유사점이 있어, 제8412.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M/1884/06-1)

국가	독일
결정세번	제8412.21호
물품설명	<p>- rotating an electric motor (induction motor), hydraulic working Displacement, position sensor, a stepper motor driven rotary valve operating control valves, oil tank and a hydraulic cylinder with spare closing cone spring and a push-rod function not expand with patch,- the connecting element for connection to force transmission elements on cane- lines connected to each other (hydro system), modular design (Figure see Appendix),</p> <p>- to the longitudinal drive of the piston rod through the production of hydraulic forces, - For use as a drive for bars at railroad crossings. "combustion engine - linear-working hydraulic system (functional unit of hydraulic Combustion engine and hydraulic cyl.I.A.A.F.nder with piston rod)"</p>
이미지	<p>The image contains two technical drawings. The left drawing is a perspective view of a complex hydraulic assembly with various pipes, valves, and a motor. The right drawing is a schematic diagram of a hydraulic system. It shows a rotor pump (Rotorpumpe) connected to an asynchronous motor (Asynchronmotor). The pump feeds into a hydraulic cylinder (Hydraulikzylinder) which contains a cone spring (ErstschlieÙ-Kegelfeder). The cylinder is also connected to a rotary valve (Drehschieber) which is driven by a stepper motor (Schrittmotor). An oil filter (Ölbehälter) is also part of the syste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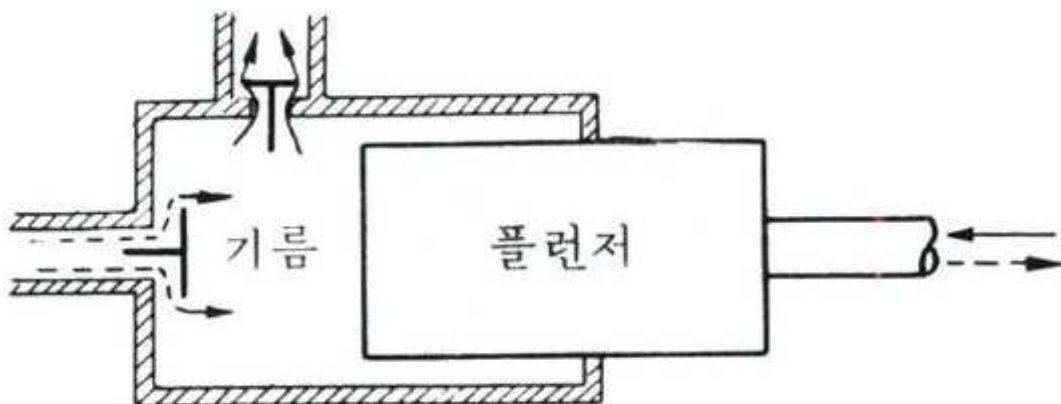
1. 품명

○ 상 품 명: 플런저

○ 물품설명

- 플런저는 피스톤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린더와 함께 사용하여 유체의 압력을 전달하는 기계부품. 일반적으로 지름이 작고, 실린더 내를 왕복함으로서 주로 펌프나 압축기, 액압 프레스에 사용됨. 실린더 롤러라고도 함. LPG 펌프에 사용. ZRO(Cylinder roller)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독일
HS	8413.91	8482.91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 베어링(roller bearing)
소호의 용어	부분품 - 펌프의 것	부분품 - 볼 · 니들 · 롤러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며
- 제8413.91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면서 특히 ‘펌프의 것’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 · “서커로드”), 피스톤 · 플런저 · 베인, 캠 · 나선스크루 · 임펠러휠 · 확산익(擴散翼), 버킷과 버킷이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로 플런저를 예시로 듦
- 이에 따라 액체펌프에 사용되는 플런저는 액체펌프의 부분품으로서 제8413.91호에 분류

○ 독일

-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 제8482.91호에는 베어링의 부분품을 분류하면서 ‘볼, 니들, 롤러’를 분류
-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B) 롤러 베어링 : 원통·원추·통상(barrel-shaped) 등의 형을 한 롤러가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
- 동 물품은 롤러베어링의 부분품으로서 제8482.91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413.91호

- 동 물품은 원통형의 강제의 것으로서 외형상 롤러베어링의 부분품인 롤러와 유사하나, 그 용도가 LGP펌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베어링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액체펌프의 부분품인 제8413.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없음

1. 품명

- 상품명: 고무댐퍼(Damper Butyl)(에어컨 부분품, 완충기)
- 물품설명:
 - 댐퍼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고무로 만들어진 장치임. 자동차나 항공기, 냉장고, 에어컨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될 수 있음
 - 에어컨에 사용되는 댐퍼는 실외기의 진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일반적으로 특정 기기에 맞도록 나오기보다는 범용성의 댐퍼를 생산하여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HS	8415.90	4016.93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소호의 용어	부분품	기타 -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부분품 역시 제8415.90호에 분류함
- 해설서에 따르면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고 설명
- 동 물품은 에어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무재질의 댐퍼이므로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5.90호에 분류

○ 인도네시아

- 동 물품은 제8415호의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제 16부 주1에 따르면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로 규정
- 제16부의 부분품 규정은 먼저 제외물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주1에 의하여 제외된다면 제8415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생략)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
- 동 물품은 고무재질의 댐퍼로서 가황한 고무의 제품으로서 제4016호에 분류가능하며, 따라서 제8415호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제 4016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4016.99호

- 제16부 주1의 제외규정 및 부분품 분류규정에 따라 가황한 고무재질의 에어컨 부분품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 4016.99호에 분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관세평가분류원 3015

-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소형의 흡입축·식탁깔개·개수대 마개·문 버팀쇠(doorstops)·가구의 다리용 고무발” 등 각종의 고무제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의자 팔걸이를 접을 시 팔걸이가 내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부 벽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제40류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무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4016.99호
물품설명	자동차의 2열 시트 팔걸이를 접을 시에 팔걸이가 내부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부 벽에 부착되는 탄성이 있는 고무재질의 물품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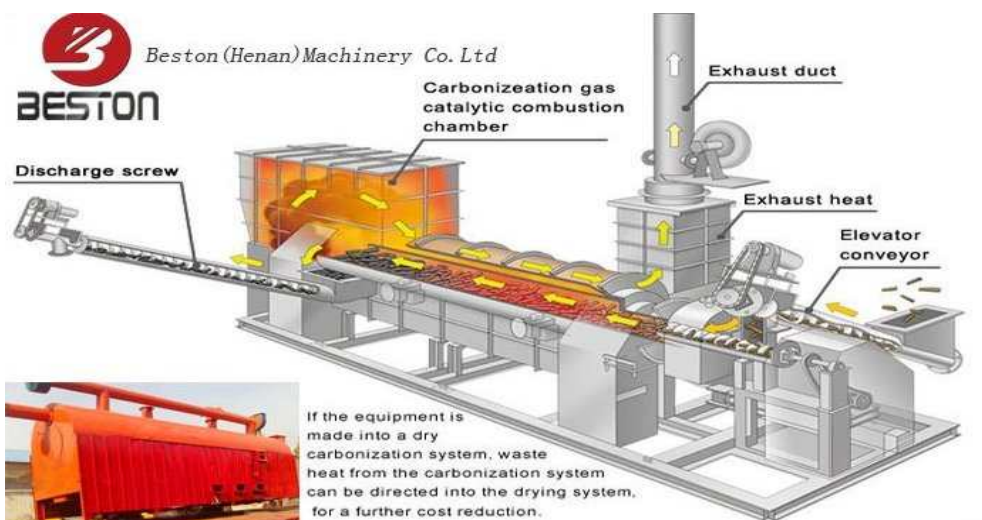
1. 품명

○ 상품명: 탄화로

○ 물품설명

- 탄화로는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인분 등을 탄화물질로 만드는 장치를 말함
- 본래 폐기물의 처리에는 ‘소각’ 방법을 사용하나 소각에 의한 폐기는 직접 대상에 화염을 가하는 방법으로서 적재량, 밀도, 가열온도 등 여러 요인으로 완전연소가 불가능하고 먼지 및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대신 탄화로는 각종 폐기물을 탄화 및 열분해 가스화하고, 탄화 및 열분해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연소시켜 에너지화할 수 있는 폐기물의 탄화 및 열분해 가스화 연소장치임.
- 탄화로는 일반적으로 폐기물 연소장치, 발열본체, 발전기, 이송유닛, 폐기물 공급유닛 등으로 구성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17.80	6810.99 (castable) -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26.90 (channel frame)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414.80 (cooling tower)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3918.90 (keeping warmth & insulation) -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 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 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 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기본세율	8%	10% / 10% / 10% / 10%
호의 용어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노와 오븐이 분류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직접 노실에서 또는 별도의 연소실에서)에 의한 노실 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 또는 선반 위에 놓여지는 각종 물품의 열처리(예: 배소·용해소성 또는 분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증기가열식의 오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구성요소의 분류에 있어서 ‘많은 공업용 노와 오븐에는 차입하거나 인출하는 장치·문·커버·화상(火床) 또는 기타의 가동부(可動部)의 조작용 또는 노의 경사용 등의 장치가 결합된다. 이러한 리프팅 또는 하역용의 장치로서 노 또는 오븐과 일체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본체와 같이 분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8428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유기물을 로에 넣고 공기의 유통을 차단하고 열을 가함으로서 탄소를 만드는 장치로서 제8417호에 분류되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로에 해당하며, 로와 함께 제시된 다양한 장치 등도 해설서에 따라서 함께 분류됨

○ 태국

- 동 물품은 투입물을 탄화하기 위한 탄화로로서 다양한 부분품 및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완성됨
- 이에 캐스터블은 제6810.99호에, 프레임은 제7326.90호에, 냉각타워는 제8414.80호에, 인슐레이션은 제3918.90호에 각각 분류함

○ 검토의견: 보류

- 탄화로 물품의 특성상 하나의 물품이 아닌 여러개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하나의 탄화로를 완성함.
-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건설장제도를 두어, 다양한 원재료 및 구성요소 반입시 보세상태로 반입하고, 이를 완성한 후 하나의 물품으로 수입신고 하나,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보세건설장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수입신고 상태, 즉 원재료 및 구성요소의 상태로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국의 법과 제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프랑스(FR-PRO-2011-000022)

국가	프랑스
결정세번	제8417.90호
물품설명	Chaudronnée FOUR PIECE OF INDUSTRIAL TYPE HEAT TREATMENT FURNACE BELL BELL CONSISTING OF A REFRACTORY ALLOY RESISTANT TO 1200 DEGREES.IT IS MADE OF CHROME, NICKEL IRON, CARBON AND SILICON. IT IS MADE FROM SHEETS THEN FORMED WELDED AND CUSTOM MADE BY CUSTOMERS OF PLANS OR PARTS MODELS.

1. 품명

○ 상품명: 초크 코일(choke coil)

○ 물품설명

- 초크 코일이란 고주파에 대하여 저항 작용을 사용하여 고주파를 감소시키는 도구.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회로소자 중 하나로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장치인 코일의 종류 중 하나임.
- 초크 코일은 억제한다는 뜻을 가진 초크(choke)의 의미대로, 전기 회로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주파를 억제, 고주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 부품.
- 주파수가 높을수록 교류전류가 흐르기 어려우므로 고주파를 억제하여 전류가 쉽게 흐르도록 만듦¹¹⁾
- 초크코일은 인덕터의 한 종류임. 인덕터에는 공심 인덕터, 초크코일 인덕터(교류전류를 저지) 및 코일 속에 철, 코발트화합물 등 자성체를 넣어 자기장을 관리하는 인덕터 등이 있음

○ 물품사진



11) 사이언스올 과학백과사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418.99	8504.50
기본세율	8%	7.5%
호의 용어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소호의 용어	부분품 - 기타	그 밖의 유도자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그 부분품은 제8418.9호에 분류
- 초크 코일은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제8418.99호에 분류

○ 인도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를 분류하며, 제8504.50호에는 ‘기타의 유도자’를 분류
- 동 호 해설서에서 유도자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예: 단로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였음
- 동 물품 초크 코일은 유도자(인덕터) 중 하나로서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정의에 부합하며, 따라서 제8504.50호에 분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관세평가분류원 796)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서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의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4호에 유도자를, 소호 제8504.50호에는 그 밖의 유도자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4호에서 유도자를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등에 사용되는 작은 초크로부터 콘크리트에 설치되어 전력회로에 사용되는(예: 단로때에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하여) 대형코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 또는 인덕턴스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하는 전기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다용도 사용(통신용 정류기, PC용 SMPS, MOTOR 제어기, 전력변환 장치, 오디오 등)이 가능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인덕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50-2090호에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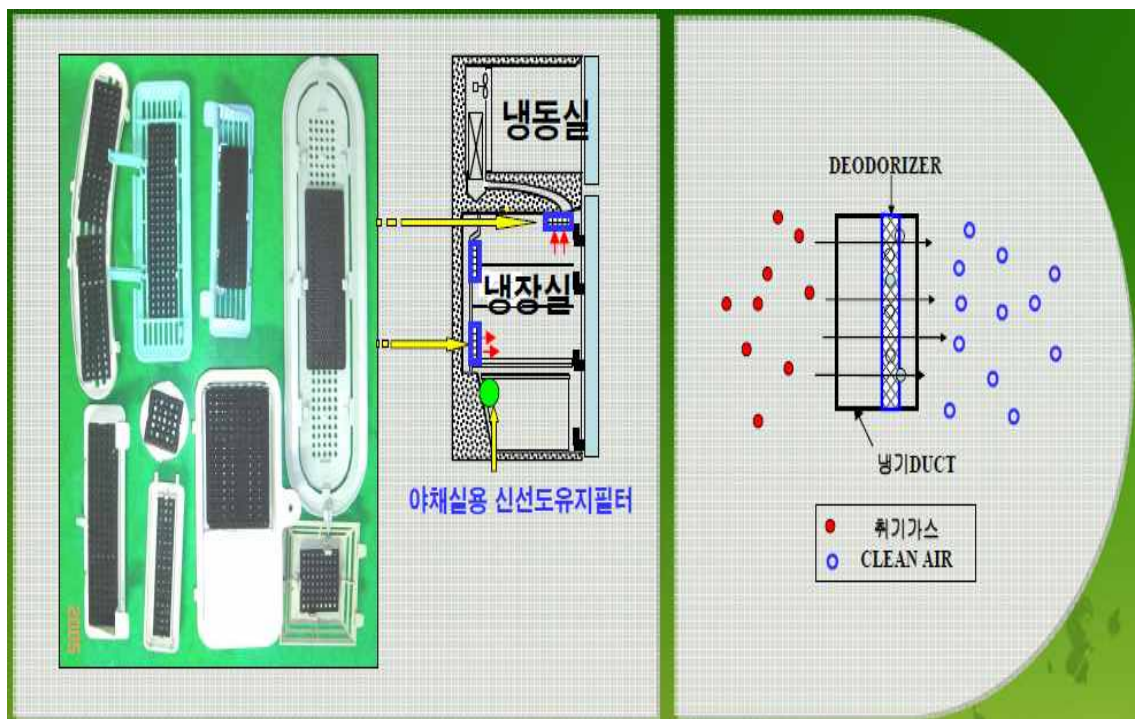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8504.50호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개요: Ferrite Core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구리선을 감은 Choke Coil임. 규격(mm): 19 X 22 X 20(H) ○ 기능: Common Mode Noise 제거(EMC/ EMI 대책용) ○ 용도: 통신용 정류기, PC용 SMPS, MOTOR 제어기, 전력변환 장치, 오디오 등

1. 품명

○ 상 품 명: 촉매 탈취제(Catalyst Deodorizer)

○ 물품설명:

- 냉장고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를 흡착, 분해하는 촉매
- 탈취제를 냉장고의 냉기가 이동하는 곳에 탈취제를 장착하여 냉기 속에 함유된 냄새가 탈취제를 통과하면서 탈취제에 흡착되고 흡착된 냄새는 촉매에 의하여 분해되는 시스템임
- 제조된 탈취제를 냉장고 제품에 응용하기 위하여 제품에 맞는 사출물을 이용하여 제품에 장착



자료: 백림화학

○ 물품사진

※ 탈취기 종류 비교

구분	일반 탈취기	솔라파워 탈취기	청정탈취+
이미지			
특징	햇빛에 의해 탈취력 재생	햇빛에 의해 탈취력 재생 냄새 등 한국형 탈취기	탈취력 우수 김치 냄새에 특화된 촉매(MnO:산화 망간 코팅)를 사용한 탈취기
관리법	약 2년 주기 햇빛에 하루 정도 말린 후 사용	약 2년 주기 햇빛에 하루 정 도 말린 후 사용	1년 5개월 주기 교체 요망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8418.99	3307.49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 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항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 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 인지에 상관없다)
소호의 용어	부분품 - 기타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 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8418.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
- 동 물품은 특정 냉장고에 맞도록 제작된 탈취제 이므로 냉장고용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8.99호에 분류함

○ 인도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제3307.4호에는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을 분류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실내용 방취제를 설명하면서 ‘냉장고·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
- 이에 따라 냉장고용으로 제작된 축매용 탈취제는 제3307호의 용어에 따라 제3307.49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3307.49호

- 비록 동 물품이 특정 냉장고에 맞도록 제작되었고, 부분품으로서의 특성이 존재하나, 제3307호의 용어에 탈취제가 명시되어 있고 보다 협의의 표현이며, 동 호 해설서에서 냉장고에 사용되는 방취제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3307.4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9.5X8.5X0.025Cm)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3307.49호
물품설명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9.5X8.5X0.025Cm)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냉장고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3307.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	

- 프랑스(FR-PRO-2012-005071)

국가	프랑스
결정세번	제3307.49호
물품설명	BLUE GEL CONTAINED IN A CLEAR PLASTIC BOX. THE PRODUCT IS INTENDED TO BE PLACED IN A REFRIGERATOR TO DEFEAT MALODOR DEODORIZE AND THE REFRIGERATOR

1. 품명

○ 상품명: 필터 엘리먼트

○ 물품설명

- 원유의 정제시에 경유(디젤)에는 파라핀이 포함되며, 파라핀은 원유가 파라핀기(基) 원유일 경우 다른 기의 원유에 비하여 더 많이 포함되는데, 파라핀은 기온이 영하 5℃ 이하가 되면 응고하기 시작하여 엔진을 정지하면 연료탱크를 포함한 연료필터 등의 연료공급계에 퇴적됨
- 연료공급계에 파라핀이 응고 퇴적되면 엔진의 시동성이 악화되며, 엔진의 시동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료 필터 하우징의 연료도입구에 히터 코일을 내장하여 연료펌프의 흡입력에 의하여 연료탱크내의 연료가 연료필터에 흡입될 때 그 흡입되는 연료를 히터 코일에 의하여 가열하여 응고된 파라핀을 용융하고,
- 그 가열된 연료에 의하여 하우징 내의 파라핀이 용융됨과 동시에 필터 엘리먼트를 경유하여 엔진에 공급될 때 필터 엘리먼트 본체에 응고 퇴적한 파라핀을 간접 용융하는 것임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8421.99	8479.90
기본세율	8%	Free
호의 용어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부분품 기타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제8421.9-호에는 원심분리기의 부분품이 분류
- 또한 해설서에서는 ‘(3)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 :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형이 있다. (i) 보통 펠트·금망·스티일울 등의 적층으로 된 필터엘리먼트를 갖춘 것 (ii) 기름으로부터 철의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한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을 갖춘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내연기관 내에서 오일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터 엘리먼트로서 제8421.99호에 분류함

○ 미국

- 제8479호에는 별도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의 것이 분류되며, 동 필터 엘리먼트는 제84류의 어느호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제8479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21.99호

- 동 물품은 내연기관의 부분품으로서 그 용도가 명확하며, 관세율 표 해설서에 설명된 것 중 ‘내연기관용 및 공작기계용의 오일필터’에 해당하므로 제8421.99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8270/11-1)

국가	독일
결정세번	8421.99
물품설명	undertow. Support tube - in the form of a dimensionally manufactured to work drawing cylinder (component length 220 mm, internal diameter 46.7 mm) base metal with tin surface and helically framing seam, - for use as a support element for the filter mat of a fluid filter and the fixation of two filter caps. "Part, identifiable as intended for an apparatus for purifying liquids, not of centrifuges - the so-called support tube for liquid filter"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제지용 정선장치, 스트레이너(strainer)의 부분품, 또는 초지기(paper making machine) 스크린 바스켓(screen bas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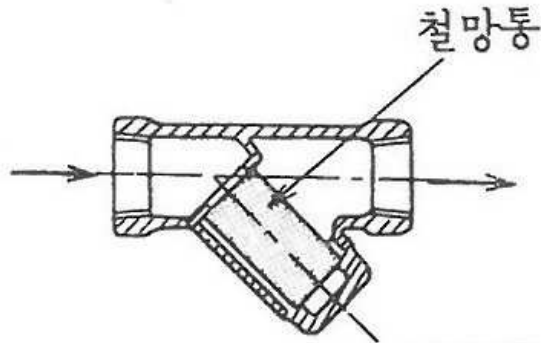
○ 물품설명

- 일반적으로, 고해기에서 고해된 고해펄프에는 덜 풀리거나 거칠고 큰 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초지기로 이송되기 전에 섬유의 크기를 고르게 하고 선별하게 되는데 이를 정선이라 함

- 작업자는 정선장치를 사용하여 초지기로 이송되기 전에 섬유의 크기를 고르게 하고 선별하게 됨. 여기서, 정선장치는 통상적으로 고해펄프가 수용되는 하우징과, 내부에 고정되는 스크린 바스켓과, 스크린 바스켓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하우징의 내부에 구비되고, 원심력에 의해 하우징에 수용된 고해펄프가 표면에 형성되는 복수의 배출공을 통해 외측으로 이동하여 하우징의 하측에 형성되는 배출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구동부재의 구동에 의해 회전하는 스크리닝 레이커로 구성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39.99	8421.91
기본세율	8%	5%
호의 용어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소호의 용어	부분품 - 기타	부분품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39호에는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를 분류하며, 제8439.9호에는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
- 동 호 해설서에서는 ‘(I)섬유소 원료의 펄프 제조용 기계.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 스트레이너: 이 기계 중에서 희박한 펄프액은 미파쇄된 것과 옹이·마디·오물 등을 남기고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스트레이너에 사용되는 스크린 바스켓으로서 제8439.99호에 분류

○ 태국

- 관세율표 제8439호 해설서에서는 스트레이너를 분류하고 있으나, ‘(B) 스트레이너 : 이 기계 중에서 희박한 펄프액은 미파쇄된 것과 옹이·마디·오물 등을 남기고 스크린을 통하여 통과한다. 그러나 원심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제외된다(제8421호).’라고 설명
- 동 물품은 원심력에 의하여 펄프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하는 스트레이너 부분품으로서 ‘원심력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제 8421호에 분류
- 또한 제8421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세탁용·염색가공용·펄프공장용·제분공장용 등의 원심건조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부분품도 제8421.9호에 분류하므로 동 물품을 제8421.91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421.91호

- 스트레이너의 부분품인 스크린 바스켓은 펄프제조용 기계로서 제 8439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원심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것은 동 호에서 제외하여 제8421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21.91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M/3928/08-1)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8439.91호
물품설명	Strainer - a hohlzylindrigen steel body with flared outer edges, four parallel to the outer edges extending rings and countless is located ends in the circumferential surface slot having a width of 0.30 mm, - with a height of 633 mm and an inner diameter of 600 mm, - the installation in a pressure screen for a paper making machine. "Part solely intended for machines for making pulp of fibrous cellulosic material, not cast iron or steel - called strainer basket"

스태킹 키트

1. 품명

○ 상 품 명: Stacking Kit SK-DH(삼성)

○ 물품설명

- 스태킹 키트는 세탁기 위에 세탁기를 올려놓을 때 이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속품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모델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임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 태국
HS	8450.90	8302.42
기본세율	8%	-, 10%
호의 용어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소호의 용어	부분품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50호에는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8450.90호에는 동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규정인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나목에 따르면, 기계의 부분품은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제8450호에 분류되는 세탁기의 부분품으로서 특정 모델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으므로 제16부 주2의 나목에 따라 제8450.90호에 분류함

○ 필리핀·태국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E) 가구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서 ‘(1) 가구 등의 각부 보호용 스테드(studs)(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포인트가 있는 것), 금속제의 장식구, 북케이스용의 조절구, 찬장 및 침대용의 부착구, 키홀 플레이트, (2) 코너 브레이스·보강용 플레이트·앵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스테킹 키트는 세탁기 및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 또는 가구 등을 연결하고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부착구로서, 제8302호의 해설서에 예시로서 열거하고 있는 물품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므로 제 8302.42호에 분류함

○ 검토의견: 제8302.42호

- 제8302호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범용성 부분품은 비록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범용성 부분품으로 분류함.
- 제8302호의 해설에 따르면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 동 물품은 세탁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고, 제15부 주2에 따른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42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없음

1. 품명

○ 상 품 명: 라미네이팅(코팅) 기계

○ 물품설명:

- 라미네이션이란 대상이 되는 물체에 1겹 이상의 얇은 레이어를 씌워 표면을 보호하는 기술을 말함. 일반적으로 코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함.¹²⁾
- 동 물품은 라미네이팅 압력을 사용하여 인쇄물의 한면 또는 양면 코팅이 가능한 물품
- 접착하고자 하는 인쇄물을 표면처리하여 가열판에 넣고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하여 코팅함
- 이를 위하여 라미네이터는 히터 표면 온도가 균일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진공 유지를 통해 기포 발생을 막는 것, 그리고 압력 제어 등을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함.
- 자동급지기, 천공기, 필름 트리머, 리와인더, 버스터 등이 포함

○ 물품사진



자료: 지엠피

12) 위키백과.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HS	8479.89	8472.90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 · 스텐실(stencil) 등사기 · 주소인쇄기 · 현금 자동지불기 · 주화분류기 · 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 · 연필깎이 · 천공기 · 지철기(stapling machine)]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 기타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8479호 해설서에 따르면 제847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i) 기계류의 품명 · 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 코팅기는 각각의 기계가 하나의 일체구조임
- 2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 구성된 코팅롤러 및 냉각롤러에 의하여 코팅액을 도포하는 기능, 그리고 완성가공도장 또는 표면도장하는 기기에 해당되는 기능은 제8420호의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에 해당
- 또한 열풍터널에서 필름에 히터로 건조하는 증발 및 건조장치는 제8419호(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에 해당
- 라미네이터는 위에 해당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복합기로 그 어느 하나의 기능이 주된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기능이므로 관세율표제 84류주7에 따라 HSK8479.89-9099호에 분류

○ 말레이시아

-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사무용 기계란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서류·서식·기록문·계획서 등의 기재·기록·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
- 라미네이팅 기계는 사무실이나 공장 등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동 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79.89호

- 동 물품은 단순한 사무용의 기계가 아닌, 사진이나 인쇄물 등의 표면을 보호하는 필름을 코팅하는 라미네이팅 기계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며, 제8479호의 해설서에 설명하는 것과 같이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없고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8479.8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24433/12-1)

국가	독일
결정세번	제8479.89호
물품설명	Laminating machine (laminator) - from Leiterplatten-Lade-/Entladestationen, internal transport system, laminating with rubber rollers, foil cutter, machine control in a floor-standing enclosure with viewing window, signal tower and power supply terminal (figure attached), - for winding of plastic film . printed circuit boards "machine having individual functions, in Chapter 84,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 PCB laminating machine (laminator)"

1. 품명

○ 상 품 명: 스팀세척기

○ 물품설명

- 스팀세척기는 가습조절장치를 이용해 흙, 먼지 오염이 심한 차량을 빠르고 편리하게 스팀세차하는데 사용함. 압력, 온도, 안전밸브의 삼중 안전장치로 자동 경보기능, 자동소화(정지) 및 자동복귀 기능이 있음.
- 가습밸브 개방 정도에 따라 스팀분사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정도가 달라지며, 오염이 심할 경우 가습밸브를 전부 개방해 습증기(물기가 있는 증기)로 작업할 수 있고, 실내세차 시 가습밸브를 닫아 건스팀(물기가 없는 스팀)으로만 세차를 할 수도 있음
- 제품의 스팀 분사량은 300~1200cc/min로, 2~3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예열시간이 소요되며 소비전력도 0.3kw 수준, 압력은 약 8~10바 정도
- 스팀세척기는 세차 이외에도 스팀이 필요한 기타 여러 가지 작업에도 사용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HS	8479.89	8424.30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 기타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제8479호 분류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i)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 (ii)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 (iii)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 동 물품 스팀세척기는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류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고, 제84류의 어느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아 기타의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9호에 분류

○ 말레이시아

- 관세율표 제8424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4.30호에는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모래취부기 및 기타 유사한 기기는 중량이 큰 구조물로 된 것이 많고 압축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다. 이들은 모래·금속연마재 등의 고압제트의 작용에 의하여 금속제품의 제석 또는 청정과 유리 또는 석재 등의 광택이 없는 면을 식각 또는 퍼팅하는데 사용된다. 이들은 남은 모래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집진기가 붙어있다. 이 호에는 예를 들면 기계가공을 한 금속 등의 그리이스를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증기취부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

- 이에 따라 동 스팀세척기는 약 8~10bar 로 스팀을 분사하여 자동차 또는 다양한 대상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증기분사기로서 제 8424.30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24.30호

- 동 물품 스팀세척기는 증기를 분사하여 다양한 대상을 세척하는 물품으로서 제8424호의 ‘분무용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

- 제847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요건 중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나, 동 스팀세척기는 기능 또는 형식이 제8424호의 ‘증기의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제8479호에 분류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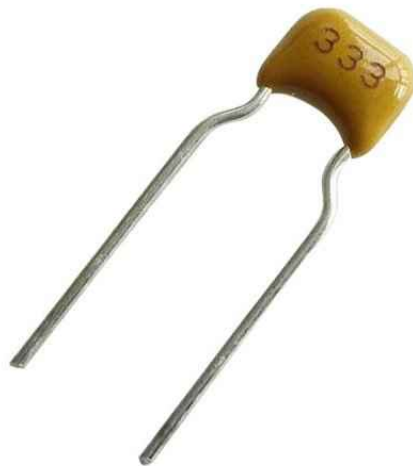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19684247)

국가	영국
결정세번	8424.30
물품설명	ELECTRIC STEAM CLEANER WITH BUILT-IN INDICATOR LIGHT, PRODUCT SPECIFICATION, MAXIMUM POWER 1500W, WATER TANK 1.2 LITRES, STEAM PRESSURE 4.0 TO 5.0 BAR. SUPPLIED WITH VARIOUS NOZZLE ATTACHMENTS, MEASURING CUP AND FUNNEL. USED BY SIMPLY ADDING WATER, CHEMICALS NOT REQUIRED. AVAILABLE IN A VARIETY OF COLOURS.

1. 품명

- 상품명: 콘덴서 전극 도포기 부분품
- 물품설명
 - 플레이트 안에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직경 약 4mm, 플레이트 안의 천공 수: 27 x 44)이 가공되어 있는 사각형의 금속제 플레이트로 천공된 부위에는 실리콘 수지가 도포되어 있고, 플레이트 양쪽에는 도포기와 결합을 위해 구멍과 단면에 홈 가공한 물품임 [전체 크기: 약 28cm× 17.7cm, 두께 약 8mm(천공이 있는 부분 크기: 25.7cm× 15.9cm)]
 - 용도 : 적층세라믹 콘덴서(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도록 제어하는 핵심부품으로 휴대폰, LCD TV, 컴퓨터 등에 사용된다)를 도포하는 도포기



○ 물품사진¹³⁾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8479.90	8419.90
기본세율	8%	Free~4%
호의 용어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 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소호의 용어	부분품	부분품

13) 코팅- 터미널 부착 후 캐피터는 외부 케이싱에 싸여 코팅된다. 원가절감을 위해 코팅과정을 생략하기도 한다.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 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적층세라믹 콘덴서 제조시 외부전극을 도포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부분품이므로 제8479.90호에 분류함

○ 미국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 제8419.90호에는 동 기계에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동 물품은 콘덴서를 도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코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온도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동 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79.90호
 - 관세율표 제8419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 ‘그러나 이 호에는 가열 또는 냉각이 비록 필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는 제외한다. 예: 비스킷 등의 초콜릿 피복기와 콘체(conches)(제8438호)·세탁기(제8450호 또는 제8451호)·역청질의 노면(路面)재료를 뿌리고 다지는 기계(제8479호)’고 추가적으로 설명
 - 동 물품은 코팅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열하는데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그 기계 또는 설비의 주요한 기계적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단지 부차적인 기능이 되는 기계와 설비’에 해당하므로 제84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1. 품명

○ 상품명: 타이어 몰드

○ 물품설명: 타이어 몰드

- 타이어 몰드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한 틀로서 크게 캐스팅몰드와 인그레이빙 몰드, 컨테이너로 구분함.
- 캐스팅몰드는 주형 틀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몰드로서 과거에는 스틸몰드를, 현재에는 알루미늄 몰드를 사용하고 있음.
- 인그레이빙몰드는 정밀도뿐만 아니라 외관품질이 월등하며 압연소재를 직접 기계가공하기 때문에 소재로 인한 잠재적 불량률이 배제되어 몰드 수명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음. 또한 기존의 주조 몰드에서의 복잡한 공정을 생략하여 생산 납기를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음.
- 타이어의 제조는 일반적으로 그린케이스(Green case; 타이어의 일차형상)를 몰드에 삽입하고, 일정한 압력과 열을 가하여 제조.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형상이 다르므로 몰드성형 공정은 세밀한 작업이 요구됨. 이러한 공정을 가류공정(Curing Process)라 함
- 가류 공정을 마친 타이어는 벤트(Vent)라 불리는 고무돌기가 생기며 벤트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검사하여 완성함

○ 물품사진

< 주요제품 >

부문	생산방식	재질	용도	특징
 <p>캐스팅몰드 (Casting Mold)</p>	<p>마스터모델에서 코어모델 복제 후 주형틀을 이용한 몰드 주조</p>	<p>알루미늄</p>	<p>승용차용 경트럭용 트럭/버스용 오토바이용</p>	<p>디자인이 복잡한 몰드 제작 용이 주조기술을 이용한 대량생산이면 마무리 가능 짧은 납기기간 내 대량 몰드 제작 가능 세계 수준의 축적된 주조 기술 보유</p>
 <p>인그레이빙몰드 (Engraving Mold)</p>	<p>3D 모델링과 5축가공기를 이용해 단조된 스틸 등을 깎아서 몰드 제작</p>	<p>알루미늄, 스틸</p>	<p>승용차용 경트럭용 트럭/버스용 오토바이용</p>	<p>금속재질에 관계없이 제작 가능 직접 가공 방식으로 제품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 생산 Cycle 일정 저체온 3D, 5축가공기를 사용하여 정밀도 향상</p>
 <p>컨테이너 (Container)</p>		<p>주강, 철판, 덕타일</p>	<p>컨테이너는 몰드와 조립해 가류기에 장착되어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장비</p>	<p>높은 정밀도와 내마모성, 내구성에 의한 유지관리 용이 다양한 설비유무로 대용량 Size 제작 가능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로 요구사항 제작 가능</p>

자료: 세화IMC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8480.79	8480.71
기본세율	8%	Free~3.1%
호의 용어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소호의 용어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기타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사출식이나 압축식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며,
- 제8480.79호는 사출식이나 압축식을 제외한 기타의 성형용 주형이 분류됨
-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 제조과정 중, ‘가류과정(Curing Process)’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는 사출(injection) 또는 압축(compression)을 거치지 않고 그린케이스에 열과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타이어를 제조함
- 이에 따라 사출식이나 압축식의 몰드가 분류되는 제8480.71호가 아닌, 제8480.79호에 분류

○ 미국

- 제8480.71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으로서 ‘사출식이나 압축식’이 분류되며, 가류공정은 그린케이스에 ‘압축’을 가하는 방식이므로 동 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80.71호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 제 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 및 몰딩패턴 이외에 손이나 또는 기계에 의하여 어느 특정재료의 몰딩에 사용되는 주형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0호의 용어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재료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 ...(Ⅲ)고무 또는 플라스틱
 - 일반적으로 이 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기정의 형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형은 또한 재료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고 해설하면서
 - “(G)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형” 그룹에 “(1) 타이어가황용의 "Bladder"형 : 두 개의 조절가능한 금속제의 냉각주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은 증기 또는 전기로 가열시켜서 그 내부에 공기로 부풀린 링상의 대(袋)공기대(空氣袋) 또는 열수(熱水)로 부풀린 대(袋)수대(水袋)를 넣은 것이며, 이 공기대 또는 수대는 타이어를 형면(型面)쪽으로 단단히 프레스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력방식에 의해 타이어의 모양과 무늬를 만들어 주는 주형으로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제 8480.71-0000호에 분류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제8480.71호
물품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및 용도 · 타이어 생산 공정 중 '가류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중간제품인 그린타이어를 몰드에 투입하고 정해진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타이어에 트레드 패턴 등 원하는 무늬가 새겨짐과 동시에 유황 등의 화학약품이 반응하여 탄력있는 고무성질을 얻음. · 신청물품은 타이어의 모양을 잡아 주고 트레드 패턴과 타이어의 상표, 규격 등을 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금형 - 구성 및 재질 · 트레드(알루미늄합금) : 바닥면 디자인 형상 · 사이드2(탄소강) : 측면 디자인 및 상표 등 문자 형상 · 비드링(일반구조용압연강) : 타이어 휠 체결부 형상

1. 품명

- 상품명: 밸브 포지셔너(전공식)

(ELECTRO-PNEUMATIC ROTARY POSITIONER)

- 물품설명

- 밸브 포지셔너란 입력과 출력 사이에 비례관계를 갖는 공기식 조작용 기기를 말함. 포지셔너는 크게 P/P(Pneumatic), E/P(Electro-pneumatic), 스마트 타입으로 나뉘어 짐.
- E/P포지셔너는 P/P 포지셔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0년도에 개발되어진 타입. P/P와는 다르게 포지셔너가 제어실로부터 직접 전기신호를 입력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컨버터가 불필요
- 보통 E/P 포지셔너는 밸브 컨트롤에 필요한 피드백 신호나 기타 제어기가 모두 기계식(기계적 구조물과 스프링)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지셔너 타입임.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81.20	9032.81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소호의 용어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그 밖의 기기 - 액압식이나 공기식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8481호의 용어에 따르면 동 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제8481.20호에는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oleohydraulic or pneumatic transmissions)가 분류되고 해설서에서는 ‘(2) 올레오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전송밸브 : 여러 형태(감압형, 체크(check)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압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유압식 또는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압”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기압 전송용 밸브인 동 물품은 제8481.20호에 분류됨

○ 태국

- 제9032.81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액압식이나 공기식(Hydraulic or pneumatic)의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A) 압력제어기 또는 조정기 : 이것은 기체정류량장치로도 불리우며, 주로 압력감응기·지시된 압력과 조정해야 될 압력과의 비교(예: 조정가능한 스프링에 의하여)하는 조절장치 및 제어회로를 조작시키는 전기접점 또는 작은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는 예를 들면, 모터펌프 또는 압력탱크에 부착된 콤프레서를 제어하기 위하여 또는 뉴매틱식밸브의 위치결정을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압력을 조정하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압력조정기는 제8481호의 감압밸브와 상이한 것이다(때때로 “압력조정기”로도 불리운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제9032.81호

- 동 물품은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및 압력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제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9032.8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

국가	독일
결정세번	9032.81-00
물품설명	Electro-Pneumatic Positioner, "IP8000/8100 series," consisting essentially of a housing (approx 147 x 198 x 100 mm ["IP8000"]; 147 x 231 x 100 mm ["IP8100"], two pressure gauges, a pilot valve, a Zero adjusting, a force sensor, a Hubstelleinheit, a Lever type ("IP8000") or a wave feedback ("IP81000") and electric and pneumatic Anschlüssen. Der controller receives from a parent unit (not part of this BTI) an electrical control signal (4-20 mA) and converts it into a pneumatic signal for the open position (stroke) of a valve at (setpoint), and holds the hub by constantly or periodically measuring yourself constantly in the desired position (actual value). The parent unit receives feedback about the respective open position (closed loop). Goods is classified as "apparatus for controlling, other than thermostats or pressure regulator, as other pneumatic controller".

44 스러스트 베어링 레이스(thrust bearing r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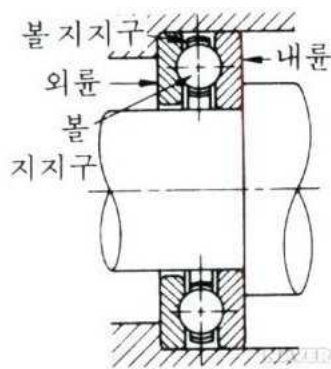
1. 품명

○ 상 품 명: 스러스트 베어링 레이스

○ 물품설명:

- 스러스트 베어링이란 하중(荷重)이 축(thrust, 스러스트) 방향으로 가해지는 베어링. 베어링이 받는 하중은 지름(radial) 방향과 축 방향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름방향은 래디얼 하중, 축 방향은 스러스트 하중이라고 불림
-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이란 축 방향의 하중을 받는 베어링으로, 여기에는 볼이나 굴림대를 이용한 스러스트 볼베어링, 스러스트 굴림대베어링으로 구분.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는 구동축의 축과 평행한 회전 하중을 흡수하기 위해서 사용.
- 베어링레이스(bearing race)란 축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베어링 접촉부에 삽입되어 마모 시 교환이 용이하게 하는 부속. 소재는 고탄소강(SK-5)을 사용하며 만들어져 있음

○ 물품사진(스러스트 볼 베어링과 베어링레이스)¹⁴⁾



14) 네이버 백과사전, 신한정밀산업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태국
HS	8482.99	7318.22
기본세율	8%	10%
호의 용어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 베어링(roller bearing)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소호의 용어	부분품 - 기타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 그 밖의 와셔(washer)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제8482.99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
- 스러스트 베어링 레이스는 스러스트 베어링의 부분품으로서 제8482.99호에 분류

○ 태국

- 스러스트 베어링 레이스는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서 제7318호의 용어에서는 ‘철강으로 만든 ...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와셔와 유사한 물품인 레이스는 동 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482.99호

- 스러스트 베어링 레이스는 철강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외관이 와셔와 유사하나 명백히 스러스트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제작되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므로 제8482.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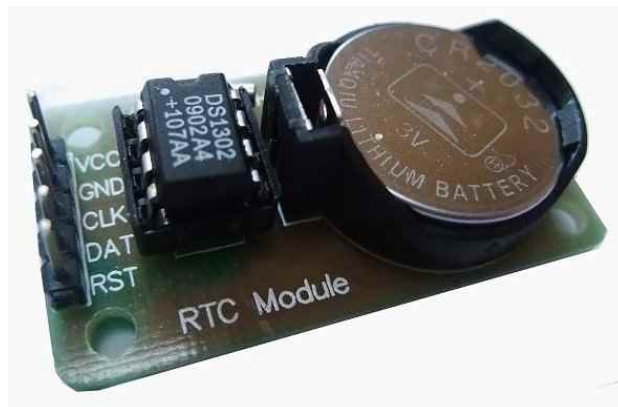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참조번호 DE9496/11-1)

국가	독일
결정세번	8482.99
물품설명	<p>Steel ring - of an annular steel body with a specially for receiving balls certain inner race having an outer diameter of 25 mm, an inside diameter of 18.05 mm and a thickness of 1.5 mm, - for use as a race of a thrust ball bearing.</p> <p>The product is a "part, is clearly destined exclusively for ball bearings, outer ring - steel ring known as" classified.</p>
이미지	

1. 품명

- 상품명: Real time clock IC(실시간 시계)
- 물품설명
 - RTC칩이란 실시간 시계로서 컴퓨터 전용칩(IC)을 말함. 전원이 꺼져도 내장된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항상 일정한 시간을 나타낼 수 있어 정확한 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포함되어 있음
 - 주로 전원이 나가도 시간을 유지할 수 있어 컴퓨터의 마더보드 내 마이크로칩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음. 이 마이크로칩은 보통 다른 칩들과 분리되어 있는데 이 내부의 시스템 설정 값들로 저장되어 있음. 컴퓨터에 전원을 켜면, 컴퓨터의 롬에 저장되어 있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 즉 바이오스(BIOS)가 실시간 클럭과 칩내의 메모리로부터 현재시각을 읽어냄
 - RTC를 구성하는 디지털 카운터 회로, 배터리, 결정 진동자(또는 RAM이 추가)가 하나의 시간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들을 모듈화한 것과 PCB상에서 조립되는 것 두가지 종류가 있음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
HS	8548.90	8542.39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전자집적회로
소호의 용어	기타	전자집적회로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RTC칩은 제85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사용되므로 제8548.90호에 분류

○ 필리핀

-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전자집적회로란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고 설명
- 또한 ‘전자집적회로에는 메모리[예: DRAM · SRAMs · PROMS · EPROMS · EEPROMS(또는 E2PROMS)] · 마이크로 컨트롤러 · 제어 회로 · 논리회로 · 게이트 어레이 · 인터페이스 회로 등이 있다.’고 하여 전자집적회로의 종류를 열거함
- RTC칩은 카운터회로와 같은 능동소자와 RAM을 포함하는 집적회로로서 해설서상의 전자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제8542.39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542호

- RTC칩은 관세율표상의 전자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호의 용어에 따라 제8548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DE15163/11-1)

국가	독일
결정세번	8542.39
물품설명	Real - time clock bewachungs IC - in the form of a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 in a plastic housing with eight Conn must go.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 real - time clock bewachungs IC in the form of a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 폴란드(PLPL-WIT-2010-01167)

국가	폴란드
결정세번	8542.39
물품설명	Real Time Clock (Real-Time Clock / Calendar - RTC), which is a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 made in CMOS technology. Includes 2k x 8 nonvolatile static RAM (SRAM NV). The device can be mounted on the alternative grounds ROM, EPROM, EEPROM, providing real-time clock functions. Register RTC includes age, year, month, day, hour, minute, and second (in 24-hour BCD).The oscillator frequency 32768 kHz. For different applications.

1. 품명

○ 상 품 명: 버큘로리

○ 물품설명:

- 버큘로리. 정화조 차량. 버큘로리의 경우는 액체가 펌프를 관통하지 않고 저장고인 탱크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저장탱크 내부에 있는 공기를 진공용 펌프를 이용하여 탱크 외부로 퍼냄으로서 탱크내부를 대기압보다 낮게 만들어주는 방식. 탱크에 연결된 호스를 흡입대상에 넣고 밸브를 열면 흡입이 시작됨
- 이러한 방법은 병원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수술실에서 혈액이나 체액 등을 흡입하는 장치(기구)로 사용하고, 환자의 기관지등에서 가래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필리핀
HS	8705.90	8704.23
기본세율	8%	-
호의 용어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화물자동차
소호의 용어	기타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 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4) 도로·하수·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살수차·살수청소차 및 정화조용청소차)’고 규정
- 따라서 정화조 청소용으로 제작된 동 차량은 제8705.90호에 분류

○ 필리핀

- 관세율표 제8704호에는 ‘화물자동차’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설명
- 따라서 정화조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일종의 화물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독립고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물품은 제 8704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8705.99호

- 동 차량은 진공(버큘)상태를 이용하여 외부의 물질을 차량으로 흡입하고, 이것을 특정 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것임
- 이러한 기능이 반드시 정화조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제8705.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우리나라(감정22701-706)

- 동 물품은 2개의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장착한 Dust Box는 착탈식이며 Dust Box를 분리한 후 각종 작업장치(예:물탱크와 살수기,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등)를 장착하여 각종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 운전석에는 주행조작 및 작업기구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고는 하나, 화물이나 다른차량을 끌거나 밀기위한 구조를 갖춘것이 아니므로 제8701호의 Tractor 로 볼 수 없으며,

- 또한 운전석에서 주행조작 및 작업기구조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고는 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426호(2)항에서 자동 차용 샤프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기계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제84류에 해당하는 작업트럭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라 제87류의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이건물품의 주행부는 유압장치를 일체구조로 장착한 것이므로 제작당시 화물운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수용도차량이며 도로청소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바 그 특제된 호인 제 8705.90-902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8705.90
물품설명	이건 물품은 Vaccum Sweeper BPK-1은 운전석 전면에는 유압 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Sweeping Brush 가 장착되고, 후면에는 2개의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장착한 Dust Box를 갖춘 것이며 Sweeping Brush와 Vaccum System을 구동하는 원동력인 유압 System은 차체에 장착되어 있으며 운전석에서 주행조작 및 작업기구조작을 함께하는 물품임

1. 품명

○ 상품명: 크로스멤버(자동차 부품)

○ 물품설명

- 자동차 부품으로 차량의 앞뒤 좌우 방향의 구부러짐을 막기 위해 사용됨. 철강재질로 되어 있어 차량의 범퍼와 엔진 사이에 위치하여 엔진이 있는 공간의 비틀림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보강재임.
-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크로스멤버(Cross Member), 전후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사이드멤버(Side Member)라고 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미국
HS	8708.99	8708.80
기본세율	8%	Free~2.5%
호의 용어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소호의 용어	기타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동 부 해설서에서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인정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조립된 자동차용 새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브레이크·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뒤쪽 새시 부분에 위치하여 차량의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 주고 차량의 강성을 지지하고 비틀림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 미국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을 분류
- 미국 관세당국은 동 물품을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80호에 분류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참조번호(DE5862/13-1)

국가	독일
결정세번	8708.99
물품설명	Part of a pendulum support for motor vehicles, so-called core, photo see attachment - almost cylindrical product which has been manufactured specifically for technical drawing - with a length of about 85 mm and a width of about 42 mm, - at the ends all round star-shaped knurled - according to application: - consisting of an aluminum part and a piece of steel - is built in a so-called Stabilizer from motor vehicles, which provid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engine and body (cross members) as well as the vibration attenuation, - recognizable part of the main use in hinged columns of motor vehicles. "Part of motor vehicle (core), other than in subheadings 8708 1010-8708 9993 called"

1. 품명

○ 상 품 명: 절대압력센서(Absolute Pressure Sensor), 자동차 부품

○ 물품설명

- 절대 진공에 대한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¹⁵⁾. 압력을 받으면 물체가 반응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압력을 감지함. 공업계측, 자동제어, 전기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 절대 압력 센서는 부하에서 편향하는 실리콘 마이크로 가공 감지 요소에 기반하며 적용 압력과 공급 전압을 지닌 할달량 계량에 비례하는 신호 제공 결과적으로 요소 신호가 증폭되고 온도가 완전히 프로그램된 디지털 보정 전략을 통해 보상됨.

- 주로 승용차나 경트럭의 매니폴드 절대압력센서로서 매니폴드에서 압력정보를 제공하여 엔진으로 연료 전달을 조절함.

○ 물품사진



15) 절대 진공을 기점(제로)으로 하여 측정하는 압력: 게이지 압력 + 대기압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HS	9025.80	8542.39
기본세율	8%	-/0%
호의 용어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전자집적회로
소호의 용어	그 밖의 기기	전자집적회로 - 기타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호에 분류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 제8542호 해설서에 따르면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
- 절대압력센서는 입력신호를 받아 이를 증폭시켜 디지털 방식에 따라 값을 산출하는 초소형 장치이므로 제8542호에 분류

○ 검토의견: 제9026호

-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

- 또한 제9025호에는 대기압을 측정하는 압력계에 한하여 분류하는데, 동 호 해설서에는 ‘따라서 액체 및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압력계는 제외된다(제9026호).’고 설명
- 이에 따라 대기압이 아닌 기계 내부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절대압력센서는 제902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참조번호 DE2132/12-1)

국가	우리나라
결정세번	9026.20
물품설명	<p>Pressure sensors of the series CSDX calibrated and temperature compensated sensors in miniature housings (dimensions 14 mm x 17 mm x 9 mm) in THT-construction, in eight electrical connection pins, with one or two media connections in dependence on the nature of the pressure measurement, different models with different type of pressure (absolute pressure, gauge pressure or differential pressure) and measuring range, with integrated customized electronic circuit (called "ASIC - application-specific intergrated circuit") for signal conditioning and digitization, for connection to evaluation units via I²C bus, to use as sensing devices for measuring gas pressures in different applications (eg, medical,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trol engineering).</p> <p>The product is classified as "electronic device for measuring the pressure of gases, no equipment of heading 9014, 9015, 9028 or 9032."</p>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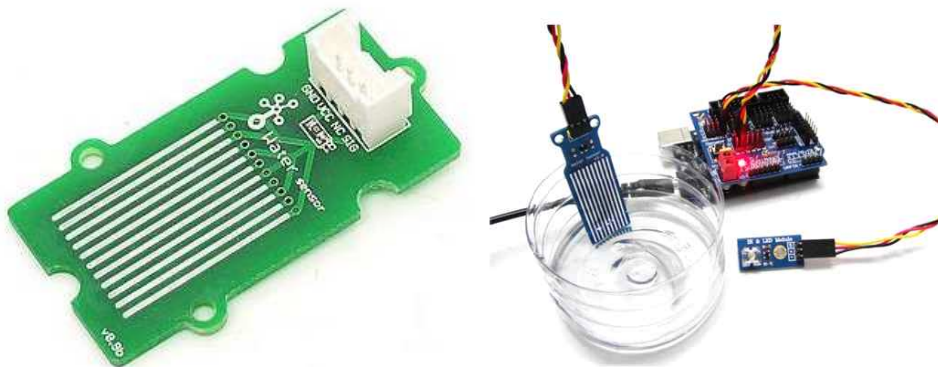
1. 품명

○ 상품명: 워터 센서

○ 물품설명

- 워터센서(Water Sensor)는 물에도 전기가 통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세로로 길게 배치된 전극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류의 흐름을 측정하여 물이 감지되는지의 여부 또는 물의 깊이(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임.
- 물을 감지하는 센서부는 여러개의 전극이 세로로 길게 뻗어 있음. 동 센서를 물에 담그면 LED가 켜지고, 빼면 LED가 꺼지게 됨. 물에 깊에 담글수록 전류의 변화가 커지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욕조·물탱크 등의 누수탐지기로 사용이 가능함
- 또한 이를 응용하여 자동차 내 축적된 물이 일정 수위에 달하는 경우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배출시기를 알리는 것도 가능함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우리나라	인도
HS	9026.10	9032.10
기본세율	8%	7.5%
호의 용어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소호의 용어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3. 품목분류 검토

○ 우리나라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제9026.10호에는 특히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검사용의 것’을 분류함
- 동 물품은 물 속에 집어넣고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측정용 기기이므로 동 호에 분류함

○ 인도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2.10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를 분류함

- 동 물품은 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기이나, 수위에 따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기에 부착되는 경우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 검토의견: 제9026.10호

- 워터센서는 별도의 제어장치가 부착된 것이 아닌, 물의 수위만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 동 물품은 액체의 수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제9026.10호의 용어에 따라 동 호에 분류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영국(GB115057011)

국가	영국
결정세번	제9026.10호
물품설명	GOODS ARE A WATER SENSOR THAT IS DESIGNED TO OPERATE WITH A PURIFYER. IT IS AN ELECTRONIC SENSOR THAT INDICATES BY A RED LIGHT AND BUZZER WHEN THE LEVEL IN THE PURIFYER REACHES THE SENSOR LEVEL. THE BUZZER SOUNDS FOR 10 SECONDS. THE LIGHT STAYS ON UNTIL THE UNIT IS PURGED.

카시트 겸용 유모차

1. 품명

- 상 품 명: 카시트 겸용 유모차
- 물품설명: 일반적으로는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는 유모차로 사용되나, 의자 부분이 분리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자동차 탑승시 카시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 물품사진



2. 협정별 HS 품목분류

국가	폴란드	체코
HS	9401.80	8715.00
기본세율	0%	0%
호의 용어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유모차와 그 부분품
소호의 용어	그 밖의 의자	

3. 품목분류 검토

○ 폴란드(참조번호 PLP-WIT-2011-00636)

- 제9401.80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의자’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예: 라운지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체어·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함)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체코(참조번호 CZ18-0881-2008)

- 체코에서는 유모차 겸용 카시트를 제8715호의 유모차로 분류한다고 설명.
- 또한 제8715호의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이 호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새시에 장착된 차체(크레이들(cradles)로 사용되는 유모차용의 착탈식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물품은 유모차의 새시에 장착되는 착탈이 가능한 크레이들로서 유모차의 부분품이 포함되는 제8715.00호에 분류됨

○ 검토의견: 제8715호

- 제8715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 따라 착탈이 가능한 유모차는 제 8715호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유사물품 분류사례

○ 독일(참조번호 PLPL-WIT-2011-00632)

국가	독일
결정세번	8715.00
물품설명	<p>Gondola stroller, designed for mounting without additional connectors on the chassis of the pushchair children. From the outside, made of plastic, and the interior of the fabric lined polystyrene membrane. Gondola has a protective hood, three-point harness, the backrest with three-position adjustment and removable handle to carry. In addition, the gondola is designed to be placed in the rear side of the car and fix the car seat belts to safely transport a child weighing up to 10 kg.</p>
이미지	